

연구보고 R448 / 2002. 1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최 세 균 연구 위원
임 송 수 부연구위원
어 명 근 연구 위원

연구 담당

최 세 균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6 장 집필
임 송 수	부연구위원	제2장 집필
어 명 근	연구위원	제3장 집필

머 리 말

UR 농업협상 타결까지 농산물 분야는 비관세 장벽에 의한 수입규제와 국내 산업보호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UR 농업협상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관세양허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 분야의 쟁점은 감축방법과 감축폭을 결정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감축폭과 감축공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이다. 이러한 관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DDA 농업협상에 여러 가지 관세감축 공식이 제안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 감축공식으로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제안과 함께 더욱 현실적인 협상안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관세 감축공식인 UR 방식, 스위스 공식, 혼합 공식 등을 모두 포괄하고, 이러한 공식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석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제협상과 농산물 관세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 방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 - 53류 등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종가세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 방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관세율 상한을 25%, 100%, 200%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스위스 공식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의 문제점

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관세 문제는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관세는 공식에 의한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는 관세할당(TRQ)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위스 공식1이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 302%는 20%로 감축된다. 반면 UR 방식은 TRQ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UR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3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태국과 멕시코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선진국들의 TRQ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은 스위스 공식1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 다른 관세 감축 공식은 UR 방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UR 방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 상한 200%의 스위스 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등)에게 특히 불리하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관세화에 의한 시장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WTO/DDA 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수출국들은 관세체계를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 감축 공식별 효과는 국별, 품목별로 다르다. 수출국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가장 불리한 국가이다. 따라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의 장단점과 국가별 효과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WTO/DDA 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이행계획서 작성, 이에 대한 생산자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실무적 준비도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 내용 및 범위	3
4. 주요 선행연구	5

제2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1. 한국의 관세제도	8
2. 일본	14
3. 미국	17
4. 유럽연합(EU)	20
5. 중국	22
6. 멕시코	24
7. 호주	26
8. 캐나다	28
9. 태국	29

제3장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1. 실행세율 구조	32
2. 양허세율 구조	39
3.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	47

제4장 관세구조의 특징

1. 관세격차	55
2. 고율관세	61
3. 누진관세	63

제5장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 분석

1. WTO 농업협상 동향	70
2. 관세 감축공식	81
3. 분석자료	85
4. 평균관세율의 변화	87
5. 관세구조의 변화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개요	121
2. 농산물 관세구조의 복잡성	122
3. 관세격차, 고율관세, 누진관세 문제	123
4. 관세 감축공식별 감축률	125
5.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체계 개선 효과	127
6. 결론	128

부록1. 관세 감축공식별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 변화	130
---	-----

부록2.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율 변화(한국)	134
---------------------------------------	-----

Abstract	178
-----------------------	-----

표 차 례

제3장

표 3- 1. 실행관세율 부과 방식별 현황	33
표 3- 2. 실행관세율의 분포	34
표 3- 3. 국가별 실행관세율 비교	36
표 3- 4. 각 국의 유별 평균 실행관세율	38
표 3- 5. 양허관세율 부과 방식별 현황	40
표 3- 6. 국별 양허관세 비교	42
표 3- 7. 양허관세율의 분포	44
표 3- 8. 각 국의 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46
표 3- 9. 각 국의 품목군별 품목분류 현황	49
표 3-10. 국별 HS 분류의 세분화 정도	51

제4장

표 4- 1. 국별 양허관세율 격차	56
표 4- 2. 국가별 · 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격차	57
표 4- 3. 주요 품목별 관세격차 현황	60
표 4- 4. 국별 고율관세 분포	62
표 4- 5. 품목류별 누진관세 현황	65
표 4- 6. 국가별 주요 품목별 누진관세 현황	67

제5장

표 5- 1. 관세 감축 방법과 폭에 대한 제안서	77
-----------------------------------	----

표 5- 2. 누진관세 관련 제안서	80
표 5- 3. 관세 부과 방법 관련 제안서	80
표 5- 4. 주요 관세 감축공식	85
표 5- 5. 관세 감축공식별 평균 양허관세율의 변화	89
표 5- 6. 관세 감축공식별 육류(2류)와 육류조제품(16류)의 누진관세 비교	105
표 5- 7. 관세 감축공식별 과일(8류)과 과일조제품(20류)의 누진관세 비교	106
표 5- 8. 관세 감축공식별 채소(7류)와 채소조제품(20류)의 누진관세 비교	108
표 5- 9. 관세 감축공식별 곡물(10류)과 곡물조제품(19류)의 누진관세 비교	109
표 5-10. 감축공식별 평균 고율관세의 변화	111
표 5-11. 최고관세의 변화	113
표 5-12. 감축공식에 따른 평균 양허관세 표준편차의 변화	114
표 5-13. 감축공식에 의한 평균 양허관세와 최고세율 차이의 변화	116
표 5-14. 국별 TRQ 현황	117
표 5-15. TRQ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 변화	118

그 립 차 례

제5장

그림 5- 1.	관세 감축공식별 한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91
그림 5- 2.	관세 감축공식별 태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93
그림 5- 3.	관세 감축공식별 멕시코의 평균관세율 변화	94
그림 5- 4.	관세 감축공식별 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95
그림 5- 5.	관세 감축공식별 칠레의 평균관세율 변화	96
그림 5- 6.	관세 감축공식별 미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97
그림 5- 7.	관세 감축공식별 캐나다의 평균관세율 변화	98
그림 5- 8.	관세 감축공식별 EU의 평균관세율 변화	99
그림 5- 9.	관세 감축공식별 호주의 평균관세율 변화	100
그림 5-10.	관세 감축공식별 일본의 평균관세율 변화	10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로 각국의 농업부문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가 감축되어 시장왜곡과 무역왜곡 현상이 축소되고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 있어서는 관세 감축과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관세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입 금지, 수입허가, 수입 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가격기능(또는 시장기능) 조절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율 개정과 관세율인하 예시제 등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인하하고 산업간 균등관세율 체제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관세율 개편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가장 어려웠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개편이었다. 식량안보, 농가소득, 농업의 경제외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농업보호론과 국내 생산이 불리한 산업은 관세 인하에 의한 농산물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농업개방론이 대립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조정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 주요국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보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부문은 공업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관세화(Tariffication)에 의한 고율의 관세상당치와 종량세 도입 등으로 한층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간에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다. 요컨대 농업 부문 관세체계의 복잡성과 경제왜곡적 성격은 UR 협상을 통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WTO/DDA 농업협상은 이러한 농업 부문 관세체계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협상 분야의 주요 쟁점은 관세 감축공식과 감축폭에 있다. 이러한 논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UR 협상에서 도입된 관세상당치와 그로 인한 고율관세와 관세격차 문제의 악화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누진관세 체계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 부문 관세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이유로 관세를 대폭 감축하고자 특정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UR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감축 방식으로는 농업 부문 관세체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국들은 수입국의 관세인하를 통해 농산물 수출시장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각국의 농업보호 정책에 따라 관세 구조는 한층 복잡해졌다. 이제 국제적 논의의 초점은 관세 감축, 관세체계의 단순화, 보조금 감축 등에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가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감축이 이루어

질 경우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비교·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WTO/DDA 농업협상에서 시나리오별 관세 감축공식이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인 이해를 갖는 주요국의 관세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세감축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WTO/DDA 농업협상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의 관세구조 변화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WTO/DDA 농업협상, FTA 체결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WTO/DDA 농업협상, FTA 협상 등 농업통상 정책 수립 및 관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자, 학계 등 우리나라 농업과 농산물 관세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이다.

3. 연구 내용 및 범위

이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첫째, 분석 대상국의 관세정책을 농산물 중심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로는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세율의 분포, 평균 관세율, 관세율 단계, 관세의 세분화 정도(HS 분류 정도), 관세 부과 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행관세는 교역량의 가중치가 반영된 관세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협상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농산물 관세의 격차, 누진성, 고율관세 현황을 국가별, 품목군별로 분석하였다. 네 번째로는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관세 감축공식별 평균 관세율, 관세격차, 누진관세, 고율관세의 변화를 분석하고 특정 국가에 유리한 관세 감축공식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국가의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DDA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등 5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EU, 호주가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53류 등이다. 다루고자 하는 관세의 종류는 현황 설명 부분에서는 실행관세와 양허관세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이기 때문에 WTO 관세협상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관세의 누진성, 고율 관세, 관세격차 부분에서는 양허관세만 포함하였다. WTO/DDA 농업협상에는 양허관세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특징은 비종가세(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최고 또는 최

저 관세 등)를 종가세로 전환하여 계산을 수행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복잡한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관세 감축에 대한 계산은 물론 관세율의 높낮이 등을 구분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수입가격을 품목별로 파악하여야 하고 품목 가격이 HS 코드 별로 구분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작업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10개국의 농산물 관세 체계를 분석하고 관세 감축 방식별로 관세율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서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여 모든 품목을 포괄한 것은 다른 연구에서 시도되지 많이 않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4. 주요 선행연구

연구에 도움을 준 선행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세균 외(1998)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체계 및 관세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제도와 관세율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으나 본격적인 국가 간 비교연구는 아니다. 농산물 관세구조의 누진성 여부를 중심으로 품목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최세균(2001)의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 감축효과”는 농산물 관세구조를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편의 논문 형태로 포함된 연구 내용이 제한적이다.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결과를 우리나라와 주요 협상 대상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부는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대부분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하였다.

최낙균 외(1993) 『UR 이후 저관세율 체계하에서의 관세정책 방향』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12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 누진관세 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국한된 분석으로 국제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UR 타결을 상정한 분석으로 현재 진행 중인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감축공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정호 외(1993)의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은 실효보호율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낙균(1993)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 송유철 외(1999)의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 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은 WTO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감축방식을 소개하고 그러한 감축방식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목별 관세 감축 효과를 측정하였다. 관세협상의 쟁점인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국한된 연구로 국제적인 비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임정빈(2000)의 “차기 WTO 농산물 관세 인하협상과 정책과제”는 송유철 외(1999)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중심의 주요 품목별 연구로 볼 수 있다.

제 2 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각 국은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세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이한 관세 구조를 나타낸다. 관세의 형태 측면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용되고 있으며 각 국마다 다양한 특혜세율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산업부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진관세나 역관세가 채택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의약품, 건설장비, 철강, 가구, 농기계 등투입재에 대해서는 무관세(zero-for-zero)를 적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WTO 체제 아래에서 많은 나라들은 양허관세율(bind rates)을 낮추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양허관세율이 실제로 적용하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보다 높지만, WTO 체제에서 양허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는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에 농산물은 쿼터와 변동 부과금(variable levies) 등의 국경조치가 관세로 전환되는 이른바 관세화 과정을 통해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제도 아래 놓이게 됐다. TRQ는 정해진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쿼터 내 또는 할당 내 관세율: in-quota rates)을 적용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쿼터 초과 또는 할당 초과 관세율: out-of-quota rates)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쿼터 초과 관세율과 많은 쿼터 내 관세율이 종량세의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서는 분석 대상국가로 선정한 10개국 가운데 관세제도가 매우 단순한 칠레를 제외한 9개국의 관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의 관세제도는 6%의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단순한 형태이며, WTO에 양허된 일부 품목의 관세율도 최고 세율이 31.5%에 불과하다. 중심세율 6%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전체의 90%에 가깝다. 관세 부과 형태는 종가세로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제도 분석은 생략하였다.

1. 한국의 관세제도

1.1. 관세정책의 기초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1980년대 이후에 차등관세율제도에서 균등관세율제도로 이행하였다는 점과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높은 관세율을 통한 산업보호를 축소하고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를 줄여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 관세율 인하여시제를 통해 균등관세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중심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평균관세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누진적 체계를 가지는 차등관세제도에 따른 특정산업 보호효과를 없애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자생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킨다

는 취지로 균등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관세율의 급격한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에 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세율을 중심세율 위주로 책정하여 중심세율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한편, 중심세율 자체를 연차적으로 2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관세율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비경쟁 원자재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과보호되었던 투입재와 생산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재에 대한 높은 보호세율도 인하하여 내수 위주의 산업보호를 완화하였다.

1.2.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며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 및 제43조 8의 제3항에서는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할 관세의 종류와 순서를 명시하고 있다. 관세의 적용 순서를 종합해 보면 먼저 1순위에는 관세법 제10조의 덤핑방지관세, 제11조의 보복관세, 제12조의 긴급관세, 제12조의 3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그리고 제13조에 규정된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들로 구성된다.

2순위에 속하는 관세는 제14조의 편익관세와 제43조의 8에 규정된 국제협력관세가 있다. 특히 국제협력관세 가운데 WTO 양허관세 규정에 의한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포함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

허관세”와 “일반양허관세”,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가입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特惠 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도 2순위에 속한다. 국제협력관세는 3순위와 5순위 그리고 6순위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입회원국만을 상대로 적용된다.

3순위에는 제12조의 2에 따른 조정관세와 제15조의 물가평형관세, 그리고 제15조의 2에 의한 계절관세와 제16조에 규정된 할당관세가 포함된다. 4순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서 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별표 3의 다 “녹차의 일반양허관세”가 여기에 포함된다.

5순위는 제7조에 의한 잠정관세로서 농림축산물 가운데 밀과 메슬린, 사료용 및 팝콘용 옥수수, 대두, 유채, 그리고 콩깻묵 등이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순위는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1.3. 농산물 관세 현황

1.3.1. 기본관세

제1차(1984~88)와 2차(1989~93) 관세율 인하예시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수입품 전체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983년 23.7%에서 1988년에는 18.1%로 하락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8%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1983년 31.4%에서 1988년 25.2%로 인하되었다. 또한 중심세율 위주의 균등관세율체계를 도입하여 산업간 차등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 중심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원자재에는 1~3%, 1차 가공품에는 5%의 낮은 관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두 차례 관세 인하 결과 농가소득작물과 그 대체품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만성적 할당관세 및 잠정세율 품목 등 278개 농축산물 품목은 1988년의 관세수준이 유지되었다. 농업투자재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그리고 사치성 식품 등 1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그러나 국내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대두유, 후추, 설탕 등 가공식품의 관세는 1988년 20%에서 1993년 8%로 인하하고, 초콜릿도 30%에서 8%로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관세가 높은 원료농산물과 중심세율을 적용받는 가공식품간에 역관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 8%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들이다. 특히 축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곡물과 박류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자류는 대부분 0%, 공업용 원료인 양모, 면, 원피, 당류, 코코아두 등은 3%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도 과수요목, 구근류, 종마 등 농업용 자재와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육류(냉장 돈육 제외), 채소(고추, 마늘, 양파 제외) 및 채두류와 그 종자(녹두, 팥 등), 버섯, 열대과실, 은행 등 견과류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3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 등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다. 그 밖에 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냉장돈육, 과실류 및 그 가공품(주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국내 생산이 많거나 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및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균등관세율체계와 관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8%의 중심세율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중간재 성격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낮았기 때문이다.

과자류와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대부분의 품목에 8%의 관세가 책정되었고 참기름과 들기름, 유채유, 낙화생유 등과 같이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당류와 팜유, 코코아 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일부 중간재에는 5% 이하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유가공품, 육가공품, 조제채소 및 과일주스 등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1.3.2. 양허관세

양허관세는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의 일종으로 GATT 양허관세, ESCAP 양허관세,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등이 있다. 협정관세란 일국이 타국과의 조약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여 당해 조약의 유효 기간에 협정된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적용순서에서 협정세율은 국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다양한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율의 관세율 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관세에는 종가종량선택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본관세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종

가중량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이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¹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6%~946.6%이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일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일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

¹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볼 수 있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사료와 가공용 곡물은 낮은 관세율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일주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2. 일본

2.1. 개요

일본은 관세법과 관세 정률법을 근간으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이 적용하는 관세율 종류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①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관세 정률법이 정한 세율로서 관세행정에서 기본이 되며, 장기간 적용된다.

② 잠정세율

잠정세율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정한 세율로 단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③ 협정세율

협정세율은 WTO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말한다. 단 협정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특혜세율

특혜세율은 개도국이나 개도국 지역이 원산지인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혜세율의 수준은 보통 선진국 물품에 징수하는 세율보다 낮다. 특혜세율은 잠정관세조치법(TTML) 제8조 2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 순서이다. 관세율표는 1988년부터 일본,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HS 조약’ 또는 ‘상품의 명칭 및 분류를 통일하는 국제조약’에 기초한다. 이 조약의 부속서인 ‘HS 품목표’는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관세 평가제도 하의 과세가격은 도매가격에 운반비와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이 된다.

2.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특혜관세 제도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이 속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득 증대, 공업화 촉진,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보통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다.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목록(positive list)’ 방식에 따라 73개 품목(HS 4단위 기준)을 선정해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실행세율보다 10~100% 인하된 수준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세율 공여는 면책조항(escape clause)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특정시기에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해 일본의 국내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에는 특혜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관세율을 설정해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관세청 2000). 첫째, 종가세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의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가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 격차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품목들이다. 일본의 실행 세율표에 따르면 종가세 적용대상 품목의 비중은 88%이다. 둘째,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과 수입가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종량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셋째,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으로 선택세와 복합세로 나뉜다. 선택세는 같은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해 이 가운데 보통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차액관세는 수입품목의 가격과 정해진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을 세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섯째, 슬라이드(slide) 관세는 국제시황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큰 품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등 과실류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일본은 낙농제품, 쌀과 기타 곡물, 채소 및 서류, 생사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비슷한 지방 함유율의 제품이라도 급식용, 사료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쿼터가 적용된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0~35% 정도의 종가세 형태로 결정되며, 여기에다가 kg당 400~1,200엔 정도의 종량세를 더해 쿼터 초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쌀의 제외한 곡물과 채소의 경우 0~40% 정도의 쿼터 내 관세율을 적용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곡물의 경우 kg당 50~120엔, 채소의 경우 350엔이 부과된다. 생사, 땅콩, 서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7.5~40%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kg 당 600~7,000엔이다.

쌀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되면서 수입물량 제한이 사라졌다. 적용 관세율은 톤당 1999년에 351,170엔(2,922 달러), 2000년에 341,000엔(2,837달러)으로 정해졌다. OECD와 WTO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ad valorem equivalents: AVEs)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낙농제품의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각각 250%와 476%이며, 곡류와 채소의 경우 각각 248%와 490%로 나타났다.

3. 미국

3.1. 개요

미국 관세제도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Tariff Act)’ 제402조와 1979년 ‘무역 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제2장에 근거한다. 관세

체제는 1989년에 공식 채택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에 따라 분류되고 여기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분류 가운데 앞의 6단위 숫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나머지 세항 분류는 이전에 사용하던 관세율표(TUSA)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표는 부문(section)과 장(chapter)으로 나뉜다. 부문은 동물, 식물, 기초재료, 화학물질, 기계, 전자제품, 기타로 물품을 구분하고, 장은 부문에서 분류한 제품을 종류와 제조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세율을 제시한다.

관세 평가제도 아래 과세가격(관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과세가격은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출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기초하며, 이는 GATT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평가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운임과 보험료가 관세 부과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관세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수입품목은 종가세 대상이다.² 종가세율의 범위는 보통 2~7% 수준이며 평균 관세율은 4%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가공단계가 낮은 품목의 경우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특혜관세는 모든 WTO 회원국과 대부분의 나라에 공여된다. 무역 대상국이 MFN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따라 국민의 이주권 인정, 미국과 양자 통상협정 체결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개도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호혜적이지 않은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는 중

² <http://usinfo.state.gov/journals/ites/0697/ijec/ej7f&f.htm#remedy>

미와 카리브 연안의 24개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 체결한 무역협정(NAFTA, US-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협정)의 대상국에 대해서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제조한 원료를 사용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에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HTS 9802로서 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에서 더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6년 기준으로 총 수입품의 8.5%는 이 규정에 의해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3.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5%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평균 쿼터 내 관세율은 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모든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인 4%보다는 높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로 적용된다. UR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과 최종 양허세율의 격차가 15%로 설정됐으나 이 감소 폭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설탕제품 그룹의 경우에 관세율이 설탕 함유량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세율의 종가세 부분만 감축되게 된다.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29%이지만 견과와 땅콩 및 땅콩버터의 관세율은 각각 150%와 135%에 이른다. 산출된 세계가격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설탕뿐이다.

4. 유럽연합(EU)

4.1. 개요

유럽연합의 관세제도는 1958년에 6개 회원국이 시작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모태로 발전해 왔다. 역내 회원국 사이의 물품이동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제3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 CCT)를 적용한다.³ CCT는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관세율은 수입품의 특성이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통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나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의 원료 및 반가공 수입품에 대해서는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세 부과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체제는 국제관세기구(WCO)가 관장하는 HS(Harmonized System)에 기초해 운용된다. 관세의 종류는 표준관세와 양허관세가 있다.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혜관세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카리브해안 국가들, 태평양군도 국가들(ACP 국가)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특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한편 양허관세는 WTO 협정에 의해 적용된다.

4.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유럽연합은 WTO 틀에서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협정 등

³ http://europa.eu.int/comm/dg10/publications/brochures/move/douane/customs/txt_en.html

의 수단으로 개별국 또는 국가 그룹과 특혜협정을 맺고 있다.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EEA에 포함되지 않은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역내 경제권의 확대를 대비해 유럽연합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앙 및 동구권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상호 관세양허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특혜관세도 있다. Lomé 협정의 당사국인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태평양 연안국들(ACP)에서 수입되는 모든 산업재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과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공여한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특혜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아래 유럽연합은 GSP 대상국의 제조품과 가공 농산물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유럽연합은 농산물에 대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를 설정해 적용한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0%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종량세 가운데 최저 관세율 대상 품목은 곡물 잔류물(residue)로 톤당 30 ECU이고 최대 관세율 적용 품목은 치즈로 톤당 1,000 ECU이다. 일부 품목(HS 100590, 100700)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이행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아 관계기관 자의로 쿼터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종가세로 환산된) 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쿼터 내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냉동 돼지 허릿살고기와 햄(HS 02032957)의 경우 일부국에서 수입되

는 34,000톤에는 톤당 250 ECU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톤당 434 ECU가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81개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평균 관세율(종가세로 환산된)은 45% 정도로 모든 관세대상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 수준인 7.2%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 적용 품목의 관세가 높은 품목은 육류(HS 02, 80%), 잔류물(HS 23, 67%) 등이고 낙농제품과 지방 및 기름(HS 15)도 평균 수준 이상을 나타낸다. 산출한 세계 평균가격 수준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보리, 설탕, 쇠고기 등이다.

5. 중국

5.1. 개요

관세청(CGA)이 관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17%의 부가가치세도 징수한다. 관세의 종류는 현재 일반관세와 최소관세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 관행에 따라 국가 그룹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ASEAN 개도국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관세평가는 2002년에 수출입관세법을 개정해 이전의 최소가격 방식에서 WTO 협정이 제시하는 거래가격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소가격 방식은 신고된 수입가격을 관세최소가격 데이터베이스 상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관세 평가방식은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관세 평가방식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용된다.

5.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율을 감축하고 있다.⁴ 가입 첫 해인 2002년에 관세품목의 73%에 해당하는 5,300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관세율 평균이 12%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2002년에 15.8%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할 때에 40~60%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약속했다(Carter and Rozelle 2002).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곡물, 면화, 식용유, 양모,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 TRQ로 양허했다. TRQ 품목의 쿼터 내 관세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5.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중국의 농산물 양허관세는 평균 38%로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양허세율은 40%이며, 최고 세율은 135%이다. 농산물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품목이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은 37개로 전체의 4%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곡물, 곡물 가공품, 식용유, 주류, 담배 등이다. 중국은 농산물과 관련하여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서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하여 관세할당(TRQ) 물량을 설정하였다. 관세할당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⁴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01/07/eng20020107_88176.shtml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정하고, 국영기업이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별 TRQ 물량은 다음과 같다. ① 밀: 730만톤(2000년)에서 960만톤으로 확대(2005년), ② 쌀: 266만톤에서 532만톤으로 확대, ③ 옥수수: 450만톤에서 720만톤으로 확대, ④ 대두유: 170만톤에서 730만톤으로 확대

TRQ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점차 시장기능이 강화된다. ① 밀은 국영무역 비율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0% 수준 유지, ② 옥수수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75%에서 2004년 60%로 축소, ③ 쌀은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 수준 유지, ④ 대두유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50%에서 2004년 10%로 축소

6. 멕시코

6.1. 개요

멕시코는 모든 나라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 5월 현재 MFN 관세율에 포함된 세번수는 모두 11,387개이다. 단순평균 실행 MFN 관세율은 16.5%이다. 설탕이 포함된 일부 제품을 뺀 모든 품목에는 종가세 관세율이 적용된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은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적용되는데, 종량세의 수준은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톤당 395.86 달러이다.

종량세 대상 품목수는 설탕, 설탕 함유율이 90% 이상인 코코아, 시럽 등 10개이다. 그리고 혼합세 대상은 응축 우유, 과일, 과일주스, 조리된 식품 등 45개 품목이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 계산기

준은 CIF 가격에서 보험조건을 제외한 C&F 가격이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보다 낮을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멕시코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소비재와 원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비재와 식품류의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다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국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신발류,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이상 또는 고관세의 형태를 나타낸다.

UR 이후 단순 평균 양허관세율은 36%이며 농산물이 43%, 산업재가 35% 정도이다. 평균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 수준보다 크게 낮아 전체의 경우 17%이고, 농산물의 관세율은 25%이다.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있어 대상국과 관세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코스타리카('94), 볼리비아('94), NAFTA('94),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95), 칠레, 우루과이 등이며 협정 체결국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 이외에도 멕시코는 통관절차(customs processing)의 방편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0.8%의 부과금을 매긴다. NAFTA 회원국과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2003년부터 적용)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부과금이 면제된다.

6.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TRQ 제도 아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총 221개 품목에 설정된 반면

에 쿼터 내 관세율은 50개 품목에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22%는 종량세 형태인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41%로 쿼터 내 관세율의 49%보다도 낮은데, 이는 종가세율만 평균치 산출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이다.

46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된다. 이 방식은 밀, 보리, 설탕,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많은 주요 식품에 적용되는데 보통 관세율 수준이 높으며 최소 관세율이 100% 이상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돼지기름의 경우 최소 관세율이 254%로 가장 높게 설정돼 있다. 쿼터 내 관세율은 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분유의 경우 쿼터 내 물량에 대해 관세율은 0%이다. 쿼터 내 물량은 100% 충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에 배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를 캐나다가 차지한다.

7. 호주

7.1. 개요

호주의 관세율 체계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일반 관세는 1999년 현재 5% 수준이다. 특혜관세는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에 적용하는 것과 개도국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로 구성된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분류 방식이다. 관세 평가는 GATT 제7장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FOB 가격이므로 CIF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⁵

⁵ 우리나라의 경우 CIF 가격에 기초한다.

7.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관세는 호주의 중요한 무역정책 수단이지만,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낮으며 관세율도 낮다(WTO 2002). 실행 MFN 관세율은 현재 4.3%이고 2005년까지 계속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4.7%인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1.2%로 다른 나라와 달리 농산물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다. 약 86%의 관세율이 0~5%이다. 양허 MFN 관세율의 평균은 10.5%로 실행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상한으로 유연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99% 이상의 관세율이 종가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관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세는 모두 10개의 세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등이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누진관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TRQ는 5개 치즈 품목과 가공되지 않은 담배에 적용되고 있다.

7.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호주는 TRQ 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농산물에 대해 가장 낮은 평균 TRQ 관세율을 설정한 나라이다. TRQ가 적용되는 세번수는 9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치즈와 치즈 관련 품목이고 그 나머지는 담배와 켈런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27%이고 쿼터 내 관세율은 7%이다. 치즈에 대한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인 반면 담배의 경우에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쿼터 내 관세는 모두 종량세이다.

8. 캐나다

8.1. 개요

캐나다 관세제도의 주요 근거 법령은 관세법과 관세율법이다. 관세법(Customs Act)은 통관과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출입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규정의 집행방식 등을 규정한다. 관세율법(Customs Tariff)은 관세 부과와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이다. 관세율의 기본 구조는 일반특혜관세(GPT)와 최혜국관세(MFN), 특별관세 등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저율의 일반 특혜관세의 수혜 대상이 되며 이 밖의 품목은 최혜국관세가 적용된다.⁶ 일반 특혜관세는 최혜국 관세율의 1/2 수준이며,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다. 특별관세는 영연방국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관세부과 상품분류는 HS 분류 방식에 기초하며,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 형태의 관세가 주로 부과된다.

8.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캐나다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구조를 가지며 관세율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종가세 관세율의 단순 평균은 7.5%이고 표준편차는 26.6%이다. 그러나 섬유, 신발,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

⁶ 일반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GPT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수혜국에서 직접 캐나다로 선적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덧붙여야 한다.

와 지방, 동물 관련 제품 등의 관세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과 식품, 음료와 담배의 1/4~1/3 정도가 종량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누진관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의 경우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관세율은 각각 1.1%, 9.3%, 15.4%이다. 전체 품목에서 15% 이상의 고관세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이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8.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TRQ 제도 아래 쿼터 내 관세율은 대부분 종가세로 0~9%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도 주로 종가세이나, 최소 관세율이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세번수 가운데 37%가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를 띠는데, 특히 시리얼과 맥아 등 조리된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200~300%로 높게 설정된 품목은 가금육(HS 01, HS 16)과 낙농제품(HS 04, HS 18, HS 19, HS 21) 등이다. 종가세 기준으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우유와 크림으로 293%이며, 가장 낮은 품목은 쇠고기로 27%이다. 이에 따라 탈지 및 전지분유와 버터 등 낙농제품은 세계가격보다 2.5배 정도 되는 관세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반면에 밀, 보리, 쇠고기 등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세계가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9. 태국

9.1. 개요

태국의 관세는 크게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특혜관세는 GATT 협정세율, GSTP, 태국-라오스 사이의 협정세율, ASEAN 국가와 협정세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부과 형태로는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 분류는 HS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관세 평가 방식은 실거래가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 CIF 가격에 기초한다. 그러나 부당한 가격조작과 세수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거 일정 기간에 수입된 동종 동질 품목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9.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태국은 1990년 이후 본격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3,908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율구조를 39개에서 6단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세율은 0%, 1%, 5%, 10%, 20%, 30% 등 6단계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아직까지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는 1,498개 정도이다. 양허세율이 15% 이상인 세번수는 4,512개에 달하여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9.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태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율은 35% 정도이다.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생사 226%, 분유 216%, 식물성 기름과 케이크 133~143%, 양파 142%, 종자 125%, 생사 94%, 커피와 차 90%, 콩 80%, 담배 72% 등이다. TRQ는 총 농산물의 7%에 해당하는 55개 품목에 대해 설정돼 있으며,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93% 정도이다.

제 3 장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수입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양허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관세는 관세주권에 의하여 설정된 관세로 관세 부과 순위는 가장 낮다. 양허관세는 국제협력관세의 일종으로 WTO에 양허된 관세가 대표적이다. 잠정관세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관세이다. 그리고 탄력관세는 급격한 수요 및 공급의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국내 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로,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관세 부과의 우선순위는 산업피해 방지를 위한 관세가 가장 우선한다. 예를 들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SG), 특별긴급구제제도(Special Safeguard, SSG)등의 발동에 의한 관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국제협력관세(WTO 양허관세 등), 조정(또는 할당) 관세, 일반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의 순으로 부과된다. 이 장에서는 관세 부과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제로 적용된 관세율인 실행관세율과 현재 WTO/DDA 농업협상의 관세협상 대상인 양허관세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The World

Bank), 미국 농업부(USDA) 등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AMAD (Agricultural Market Access Database)와 국별 관세율표 등이다.

1. 실행세율 구조

1.1. 관세 부과 형태

관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으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수입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량세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위 중량(또는 물량)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한다. 선택세는 해당 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각각 설정하고, 부과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 관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다. 복합세는 대상 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복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무역을 더 많이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복잡할수록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부과 형태가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다. 태국의 실행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가운데 복합세를 제외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멕시코는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칠레와 한국의 경우는 모두 종가세로 되어 있다. 태국은 투명성이 높은 종가세와 선택세의 비중이 각각 44% 정도로 높다<표 3-1>. 태국의 종량세 비중은 11.3%이다. 멕시코의 종가세 비중은 95.%로 높은 편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투명성이 낮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세 부과 형태를 나타낸다. 캐나다는 네 가지 관세 부과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다.

표 3-1. 실행관세율 부과 방식별 현황

단위: 개, %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합계***
한국	1,544(100.0)**	0 (0.0)	0 (0.0)	0(0.0)	1,544(100.0)
태국	451 (44.1)	116(11.3)	456(44.6)	0(0.0)	1,023(100.0)
멕시코	1,035 (95.2)	10 (0.9)	0 (0.0)	42(3.9)	1,087(100.0)
칠레	766(100.0)	0 (0.0)	0 (0.0)	0(0.0)	766(100.0)
미국	1,172 (64.0)	555(30.3)	0 (0.0)	103(5.6)	1,830(100.0)
캐나다	1,011 (73.5)	160(11.6)	163(11.8)	42(3.1)	1,376(100.0)
호주	693 (97.2)	18 (2.5)	2 (0.3)	0(0.0)	713(100.0)
일본	1,418 (84.0)	184(10.9)	45 (2.7)	33(2.0)	1,688*(100.0)

* 일본의 실행관세는 8개의 차액관세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 ()안의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수산가공품이 포함된 관계로 실제 농업협상 대상 품목 수보다 약간 많은 것이 보통임.

미국은 선택세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복합세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위의 네 가지 방식에 더하여 차액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종가세 비중은 각각 73.5%와 97.2%이다. 미국의 경우 종가세 비중은 64%, 종량세 비중은 30.3%이다.

1.2. 실행세율의 분포

국가별 농산물 실행관세율의 분포는 <표 3-2>와 같다. 한국은 5~10% 사이의 세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추진한 8% 중심세율로의 단일화에 의한 결과이다. 50% 이상의 실행세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일본의 두 배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의 농산물 실행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칠레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칠레의 경우 모든 품목들의 실행세율이 5~10% 미만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칠레가 6%의 동일한 최혜국세율(2002년 2월 이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5% 미만에 속하는 실행세율 품목 비중이 8.9%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작은 반면 비교적 높은 세율인 30~50%에 속하는 품목 비중이 38%에 달한다. 태국의 실행세율은 그만큼 높게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는 10~30% 사이에 분포하는 품목의 비율이 73.3%로 가장 많다.

표 3-2. 실행관세율의 분포

단위: 개, %

	0~5% 미만	5~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합계
한국	212 (13.7)	526 (34.1)	300 (19.4)	286 (18.5)	220 (14.2)	1,544 (100.0)
태국	91 (8.9)	61 (6.0)	214 (20.9)	389 (38.0)	268 (26.2)	1,023 (100.0)
멕시코	120 (11.0)	2 (0.2)	797 (73.3)	78 (7.2)	90 (8.3)	1,087 (100.0)
칠레	0 (0)	766 (100.0)	0 (0)	0 (0)	0 (0)	766 (100.0)
미국	1,064 (58.1)	287 (15.7)	400 (21.9)	43 (2.3)	36 (2.0)	1,830 (100.0)
캐나다	768 (55.8)	287 (20.9)	197 (14.3)	10 (0.7)	114 (8.3)	1,376 (100.0)
호주	535 (75.0)	167 (23.4)	6 (0.8)	5 (0.7)	0 (0.0)	713 (100.0)
일본	497 (29.4)	243 (14.4)	697 (41.3)	144 (8.5)	107 (6.3)	1,688 (100.0)

멕시코의 실행세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본은 41.3%의 품목들이 실행세율 10~3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의 실행세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0~5% 세율 범위에 속하는 품목 비중이 각각 58.1%, 5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0~5% 범위에 속하는 품목들이 75%로 분석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행세율이 10% 이상이 되는 품목들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행관세율은 개도국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행세율의 평균 및 최고세율 등을 살펴보면 국가별 실행관세율이 가지는 분포의 특성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은 <표 3-2>에 나타나듯이 전체 농산물의 85.5%에 달하는 많은 품목들이 0~50% 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실행세율은 966.3%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았다. 평균 실행세율도 56.0%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3>.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기본세율이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관세가 적용되는 많은 품목들의 관세율은 낮으나 쿼터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일부 농산품의 관세율은 관세상당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태국의 최고 실행세율은 206%이나 30%와 6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실행세율의 평균은 31.5%이다. 멕시코의 최고 실행세율은 태국보다 3배가 높은 633%이지만,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실행세율은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멕시코의 평균 실행세율은 태국에 비해 낮다. 미국의 평균 실행세율은 8.9%로 호주보다는 높지만 캐나다와 일본의 23.0%, 24.1%보다는 아주 낮다. 또한 미국 최고 실행세율도 461.9%로 캐나다와 일본보다 낮다. 호주는 평균세율이 분석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1.7%이다. 호주의 최고세율 또한 가장 낮은 42.9%이다.

표 3-3. 국가별 실행관세율 비교

단위: 개, %

	품목수	평균	최빈값	최고세율
한국	1,544	56.0	8	966.3
태국	1,023	31.5	30(60)*	206.2
멕시코	1,087	27.4	13	633.0
칠레	766	6.0	6	6
미국	1,830	8.9	0	461.9
캐나다	1,363	23.0	0	569.5
호주	713	1.7	0	42.9
일본	1,688	24.1	0	790.4

* 태국의 경우 30%, 60%(각각 261품목)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냄.

일본의 최고 실행세율은 한국 다음으로 높은 790.4%이고, 평균 실행세율은 24.1%이다. 일본의 실행세율은 분석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3. 품목군별 실행세율 분포

실행세율의 분포를 품목군 또는 품목류별로 분석한 것이 <표 3-4>이다. 먼저 실행세율의 품목류별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00% 이상의 높은 세율을 나타내는 품목군은 7류(채소류), 10류(곡물류), 11류(곡분·전분), 12류(유지작물, 인삼 등)이다. 이 가운데 곡물과 전분의 관세율이 각각 234.6%, 339.4%로 국내 다른 농산물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류를 높은 수준의 관세를 통해 보호해 온 결과이다. 자급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에 농정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미국은 24류(담배류)의 평균세율이 60.1%로서 자국 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그 밖에 낙농제품(4류), 당류(17류), 면류(파스타, 베이커리 포함, 19류)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멕시코는 17류(당류)의 평균세율이 가장 높아 111.3%에 달했다. 육류(2류)와 낙농품(4류)의 평균 관세율도 각각 82.1%와 42.9%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태국은 화훼류(6류), 채소류(7류), 과실류(8류)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았다. 캐나다의 낙농품(4류) 평균 실행세율은 120.5%로 자국 내의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는 낙농품 이외에도 육류(2류), 산 동물(1류), 육가공품(16류)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낙농품의 관세율이 가장 높았으며, 채소류, 곡분 및 전분, 유지작물, 가공식품류의 관세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국가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곡물산업에 특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여 보호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낙농품, 육류 등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축산업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관세율은 높게 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통해 담배와 설탕에 대한 보호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농정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태국은 과일, 채소, 화훼류 산업보호에 치중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수입이 많은 채소, 유지작물, 가공식품의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관세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관세정책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누진관세체계와 직접 관련된다.

품목류별 특징을 보면 4류(낙농품)의 평균 실행세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의 120.5%를 비롯하여, 일본 63.2%, 한국 74.5%, 멕시코 42.9%, 태국 28.1% 등의 순이다. 낙농품의 관세율은

표 3-4. 각국의 유별 평균 실행관세율

단위: %

	태국	멕시코	칠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1류	11.5	14.0	6.0	1.3	33.1	0.0	4.7	16.3
2류	60.0	82.1	6.0	4.4	50.6	0.0	21.0	27.0
4류	28.1	42.9	6.0	18.2	120.5	4.6	63.2	74.5
5류	29.7	12.4	6.0	0.7	0.0	0.3	1.3	9.1
6류	60.0	13.9	6.0	2.2	5.2	0.0	0.5	11.5
7류	57.6	19.2	6.0	6.2	4.0	1.3	31.6	128.4
8류	52.1	24.7	6.0	4.3	1.9	0.9	8.7	83.3
9류	32.4	26.0	6.0	0.8	1.2	0.0	3.5	67.5
10류	16.2	36.7	6.0	1.8	12.3	0.0	19.5	234.6
11류	42.7	20.9	6.0	2.9	29.7	0.9	41.0	339.4
12류	35.1	6.6	6.0	5.4	1.3	0.6	47.3	102.8
13류	15.7	13.5	6.0	0.8	3.0	0.8	3.0	96.7
14류	26.2	13.0	6.0	0.9	0.0	0.0	2.7	4.7
15류	18.4	21.1	6.0	4.5	10.6	1.8	6.4	17.3
16류	28.8	22.7	6.0	3.9	38.5	1.7	13.2	24.9
17류	25.2	111.3	6.0	14.4	6.3	5.3	33.9	20.4
18류	24.3	41.8	6.0	11.3	37.1	2.3	36.1	11.6
19류	26.3	24.2	6.0	13.5	19.9	4.4	38.2	11.5
20류	30.0	26.9	6.0	9.1	6.7	4.9	16.2	36.1
21류	34.0	33.1	6.0	12.4	33.4	1.4	34.6	35.2
22류	49.9	34.9	6.0	4.4	12.7	5.8	21.4	30.0
23류	9.6	14.1	6.0	2.5	11.1	0.0	1.3	13.6
24류	44.0	51.3	6.0	60.1	8.3	12.7	6.6	31.2
29류	10.0	11.5	6.0	1.3	2.8	5.0	17.0	8.0
33류	10.5	14.6	6.0	5.1	0.7	0.9	1.9	36.6
35류	8.0	15.1	6.0	2.0	49.2	0.5	10.1	87.9
38류	10.0	18.0	6.0	1.9	0.0	2.5	4.0	8.0
41류	0.0	7.0	6.0	4.2	0.0	0.0	0.0	3.0
43류	1.0	13.0	6.0	3.0	0.0	0.0	0.0	3.0
50류	7.5	13.0	6.0	0.3	0.0	0.0	84.9	20.0
51류	1.0	8.3	6.0	0.7	0.0	0.0	0.0	2.0
52류	5.0	11.8	6.0	1.6	0.8	0.0	0.0	2.0
53류	5.0	6.3	6.0	9.1	0.0	0.0	0.0	2.0
평균	31.5	27.4	6.0	8.9	23.0	1.7	24.1	56.0

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자국 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다. 1류(산 동물)의 경우, 캐나다가 33.1%로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여 대체로 평균세율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산 동물이 축산업에 있어서 투입재적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산 동물의 관세를 낮게 유지하고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누진관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2. 양허세율 구조

2.1. 양허관세 부과 형태

양허관세율표에 나타난 품목 수는 대부분의 경우 실행관세율표에 나타난 품목 수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HS 8단위 이상으로 품목을 묶어서 양허관세율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관세율표를 제공한 기관(FAO, USDA, APEC, World Bank, EU농업위원회 등)별로 품목분류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도 품목수의 불일치를 가져온 이유이다. 특히 양허관세는 수산가공품(HS 코드 1604, 1605)을 제외하고 농산물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실행관세의 품목 수와 양허관세의 품목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현재 양허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와 이 연구에서 사용된 품목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국이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1994년) 이후 HS 분류표를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양허관세도 실행관세와 같이 국가별로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행관세에서도 나타났듯이 양허관세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부과방식은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은 양허관세 부과 형태로 종가세(전체 품목 수의 95.2%)와 선택세(전체의 4.8%)를 두고 있다. 실행관세는 종가세만으로 부과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한국이 UR 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를 양허하면서 종가세와 종량세 가운데 유리한 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선택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태국은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종류의 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량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등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모두 종가세를 적용한다.

캐나다는 네 가지 형태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과 EU는 각각 선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형태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과 EU의 비종가세 부과 품목의 비율은 각각 57.2%와 58.8%로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종량세 부과 품목이 EU에 비해 높은 반면 EU는 복합세

표 3-5. 양허관세율 부과 방식별 현황

단위: 개, %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합계
한국	1,244 (95.2)	0 (0.0)	63 (4.8)	0 (0.0)	1,307(100.0)
태국	734 (99.6)	4 (0.5)	0 (0.0)	0 (0.0)	737(100.0)
멕시코	950(100.0)	0 (0.0)	0 (0.0)	0 (0.0)	950(100.0)
중국	863(100.0)	0 (0.0)	0 (0.0)	0 (0.0)	863(100.0)
칠레	766(100.0)	0 (0.0)	0 (0.0)	0 (0.0)	766(100.0)
미국	983 (57.2)	617(35.9)	0 (0.0)	120 (7.0)	1,720(100.0)
캐나다	868 (66.6)	225(17.3)	170(13.0)	40 (3.1)	1,303(100.0)
EU*	1,036 (58.8)	476(27.0)	0 (0.0)	250(14.2)	1,762(100.0)
호주	780 (98.2)	14 (1.8)	0 (0.0)	0 (0.0)	794(100.0)
일본	1,041 (79.8)	162(12.4)	44 (3.4)	57 (4.4)	1,304(100.0)

* EU의 계절관세(11개), Minimum(17개), Maximum(17개) 등은 복합세에 포함.

부과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EU는 계절관세, 상·하한 관세 등 복잡한 형태의 관세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량세 부과 품목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일본은 네 가지 관세 부과 형태를 모두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EU에 비해 종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79.8%).

2.2. 양허관세 분포

각국의 관세율을 비교함에 있어서 평균 관세율의 의미는 크다. 평균 관세율은 그 나라의 관세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양허관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의 평균 양허세율은 63.8%로 평균 양허관세율이 가장 낮은 호주에 비해서는 60% 포인트나 높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다음으로 높은 양허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이다. 멕시코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2.8%이다. 중국과 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각각 37.9%, 35.4%로 나타났다. 반면 칠레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8.9%로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일본의 양허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평균 양허세율은 41.3%에 달한다. 캐나다와 EU의 평균 양허세율도 20%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호주의 평균세율이 4.0%로 가장 낮다. 미국의 평균 양허세율은 11.1%이다.

가장 높은 양허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쌀은 종량세 형태로 양허되었으며, 이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1,416% 수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종가세는 수입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격으로 변화된 종가세는 평가하는 시점과 수입품의 품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쌀 다음

으로 높은 관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의 매니옥으로 887.4%이다. 한국은 매니옥 이외에도 인삼, 전분 등에 대해서 800% 이상의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EU도 460%가 넘는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으며, 미국은 담배에 대하여 3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와 칠레의 최고 양허관세는 30%이다. 양허세율 중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세율(표 3-6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0% 세율이 가장 많다. 한국은 27%의 세율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6%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관계로 6%의 양허관세를 나타내는 품목 수가 가장 많았다. 태국, 멕시코, 중국 등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양허관세의 최빈값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30~40%에 달했다.

표 3-6. 국별 양허관세 비교

	품목수(개)	평균(%)	최빈값(%)	최고세율(%)
한국	1,307	63.8	27	887.4
태국	737	35.4	30	226.0
멕시코	950	42.8	36	254.0
중국	863	37.9	40	135.0
칠레	766	8.9	6	31.5
미국	1,720	11.1	0	350.0
캐나다	1,303	21.3	0	465.8
EU	1,762	22.1	0	462.7
호주	794	4.0	1	31.3
일본	1,304	41.3	0	1,416.6

주: 국가별로 실행세율의 품목 수가 양허세율의 품목 수보다 많은 이유는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높은 HS 분류를 기준으로 양허된 점과 실행세율에 1604, 1605류(수산조제품)이 포함된 점 등임.

2.3. 관세율 단계별 분포

관세율의 단계는 매우 낮은 세율부터 수입을 차단할 정도로 높은 세율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기본세율은 매우 낮은 세율로 5% 이하를 들 수 있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는 40~50%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양허관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R 협상을 통해 관세화로 전환된 많은 품목들이 수백%에 이르는 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허관세율 단계를 편의상 10% 미만을 매우 낮은 관세로 구분하였으며, 관세율이 세 자릿수 이상 즉, 100% 이상 되는 것을 매우 높은 단계로 구분하였다. 매우 낮은 관세와 매우 높은 관세 사이에 속하는 관세율은 다시 세 단계로 구분하여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양허관세는 세율 단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품목이 분포한 관세율 단계는 20~50%의 관세로 전체 품목 가운데 1/3 이상에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많은 품목이 분포하고 있는 세율 단계는 10~20%로 전체 품목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10% 미만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16.7%에 불과하다. 매우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물의 비중은 칠레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전체의 9.1%로 일본과 함께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칠레는 90%에 달하는 농산물에 10% 미만의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장 낮은 양허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태국, 멕시코, 중국 등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70% 이상의 농산물에 대하여 20~50%의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100% 이상의 고율관세나 10% 미만의 저율관세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표 3-7. 양허관세율의 분포

단위: 개, %

	0~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합계
한국	221 (16.9)	349 (26.7)	445 (34.0)	173 (13.2)	119 (9.1)	1,307 (100.0)
태국	50 (6.8)	16 (2.2)	584 (79.2)	72 (9.8)	15 (2.0)	737 (100.0)
멕시코	61 (6.4)	7 (0.7)	811 (85.4)	17 (1.8)	54 (5.7)	950 (100.0)
중국	49 (5.7)	118 (13.7)	623 (72.2)	36 (4.2)	37 (4.3)	863 (100.0)
칠레	680 (88.8)	0 (0)	86 (11.2)	0 (0)	0 (0)	766 (100.0)
미국	1,213 (70.5)	300 (17.4)	146 (8.5)	35 (2.0)	26 (1.5)	1,720 (100.0)
캐나다	1,049 (80.5)	114 (8.7)	30 (2.3)	17 (1.3)	93 (7.1)	1,303 (100.0)
EU	822 (46.7)	424 (24.1)	323 (18.3)	134 (7.6)	59 (3.3)	1,762 (100.0)
호주	689 (86.8)	87 (11.0)	18 (2.3)	0 (0.0)	0 (0.0)	794 (100.0)
일본	649 (49.8)	245 (18.8)	242 (18.6)	55 (4.2)	113 (8.7)	1,304 (100.0)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호주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많다. 호주는 86.8%에 달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10% 미만의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50% 이상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0%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이 70.5%이다. 100% 이상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26개로 전체의 1.5%이다. 캐나다도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많으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중이 미국이나 EU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의 경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93개로 전체의

7.1%에 달한다. EU와 일본의 양허관세율 단계별 품목분포는 서로 유사하다. 10%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은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고율관세 품목은 EU가 59개 일본이 113개이다.

2.4. 품목군별 분포

앞에서 논의한 실행관세의 경우와 같이 양허관세도 품목군별로 나누어 평균 양허관세율을 구하고 그 분포를 국가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은 곡물류에 대하여 높은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류(곡분·전분)의 평균 양허세율이 314.8%로 가장 높고, 10류(곡물)의 평균세율도 218.0%로 높은 수준이다.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군은 7류(채소류), 12류(유지작물, 인삼), 13류(식물성 액즙) 등이다. 35류의 동물성 단백질과 변성전분의 양허관세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밖에 낙농제품(4류), 과일과 견과류(8류), 차류(9류) 등의 양허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평균 양허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군은 곡물, 전분, 낙농품, 견(비단) 등 네 개다. 곡물의 평균 관세율이 166.3%로 가장 높다. 낙농품의 평균 양허세율은 153.5%로 일본 내에서도 다른 품목들에 비해 높았으며, 분석 대상국가들의 낙농품에 대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 및 비단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 밖에 양허관세율 평균이 100% 이상은 아니지만, 50%으로 비교적 높은 품목들은 16류(수산가공품)부터 21류(조제식품)에 속하는 가공식품이다. 실행관세에서 나타났듯이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누진관세 체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실행관세율과 마찬가지로 24류(담배류)의 평균세율이 52.2%로 높게 나타나고, 4류(낙농품)를 비롯하여 17류(당류) 등이 미국의 평균 양허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U에서 가장 높

표 3-8. 각국의 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단위: %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1류	13.8	29.0	19.9	6.0	1.1	26.6	15.5	0.4	13.1	19.7
2류	34.7	82.1	37.5	6.0	4.7	47.2	34.1	0.1	24.2	23.0
4류	32.8	56.4	40.9	23.4	25.6	114.2	74.2	5.2	153.5	67.9
5류	29.7	27.9	30.3	6.0	0.6	1.5	0.2	1.9	0.3	14.9
6류	33.4	28.4	27.2	6.0	2.2	4.2	5.2	0.8	0.7	21.9
7류	46.9	40.3	34.8	6.0	5.9	3.5	13.5	4.0	38.5	125.4
8류	39.2	37.8	37.5	6.0	4.3	1.8	13.6	2.4	9.1	85.4
9류	47.6	36.0	37.3	6.0	0.9	1.2	2.4	0.1	3.5	76.9
10류	38.3	54.7	74.2	7.6	2.1	10.1	43.5	0.8	166.3	218.0
11류	30.7	46.2	50.7	6.8	2.8	26.0	28.2	2.8	146.5	314.8
12류	35.3	24.3	25.3	13.4	6.4	1.4	2.5	1.6	40.8	121.2
13류	23.9	27.2	24.6	6.0	0.8	0.0	2.2	2.2	3.4	110.6
14류	27.7	30.4	33.7	6.0	0.9	0.0	0.0	0.7	1.9	8.4
15류	38.2	46.3	42.8	17.8	4.7	8.8	12.4	4.1	5.3	25.5
16류	35.2	45.0	40.0	6.0	2.8	49.5	23.7	10.2	49.3	54.6
17류	44.1	123.0	49.2	12.0	20.5	7.4	31.0	7.9	69.6	31.0
18류	31.1	64.1	19.5	6.0	12.8	34.5	17.3	7.9	15.8	21.5
19류	29.9	39.4	39.3	6.0	16.4	19.1	19.5	6.2	85.5	33.7
20류	32.3	39.0	40.0	6.0	8.8	6.1	26.1	8.3	16.6	43.6
21류	35.2	57.5	47.6	6.0	13.1	34.4	11.6	4.3	48.2	64.7
22류	56.9	41.5	98.3	6.0	4.8	11.4	14.4	9.5	27.2	32.9
23류	15.3	37.5	18.1	15.7	6.3	12.0	14.7	0.6	3.9	19.1
24류	64.0	51.8	91.8	6.0	52.2	5.9	28.6	12.8	6.8	59.1
29류	27.0	37.0	22.5	6.0	4.8	8.0	27.1	17.0	17.0	22.5
33류	30.0	29.1	40.0	6.0	1.4	1.8	3.2	5.9	1.8	13.2
35류	30.0	26.5	26.6	6.0	3.7	48.6	9.7	6.0	11.5	201.2
38류	28.5	33.5	25.8	6.0	4.0	4.3	14.4	9.0	11.8	15.5
41류	25.0	11.2	15.3	6.0	0.0	0.0	0.0	0.0	0.0	5.2
43류	25.7	20.0	39.6	6.0	0.0	0.0	0.0	1.0	1.5	14.5
50류	63.3	20.0	40.0	6.0	0.6	0.0	0.0	0.5	106.9	25.7
51류	21.0	28.8	34.6	6.0	2.3	0.0	0.0	1.0	0.0	2.0
52류	4.5	40.2	41.2	6.0	5.6	0.0	0.0	1.2	0.0	2.0
53류	27.0	30.5	18.0	6.0	0.7	0.0	0.0	1.0	0.0	2.0
평균	35.4	42.8	37.9	8.9	11.1	21.3	22.1	4.0	41.3	63.8

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군은 낙농품으로 평균 74.2%에 달한다. 이것은 EU의 양허관세율 평균 2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 밖에 EU가 보호하는 중요한 품목으로는 육류, 곡물 및 전분, 담배, 가공식품 등이다. 캐나다에서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목군은 낙농품, 수산가공품, 육류, 조제식품,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전분 등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낙농품의 관세율은 114.2%로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육류와 수산가공품의 관세도 50%에 가까워 평균관세율 21.3%의 2.5배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품목군별로 관세율이 매우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관세율 3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22류(음료·알콜), 24류(담배류) 정도에 불과하다. 10류(곡물)의 평균 세율은 74.2%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품목들은 평균 관세율이 40% 전후에 분포하고 있다. 멕시코는 당류와 코코아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류의 평균 관세율은 123%에 달한다. 그 밖에 육류와 낙농품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이다. 태국은 담배와 비단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다른 품목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평균관세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3.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HS 코드는 10단위까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은 6단위까지이다. 따라서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품목의 분류가 매우 복잡한 국가가 있고 단순화된 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품목분류가 1,300여 개고, 미국과 EU는 1,700여 개이다. 태국, 멕시코, 중국, 호주, 칠레 등의 농산물 품목분류 수는 1,000개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품목분류 수의 차이는 HS 6단위 이하에서 얼마나 품목을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품목분류는 관세 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목적과도 관련된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 관세행정적 측면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장점이 많다. 예를 들면, 포도주(HS 2204번)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U는 실질적으로 9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양허된 품목분류는 20여 개에 불과하나 실행세율 품목분류는 통계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세분화 한 것임).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수입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稅番)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물론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왜곡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 또는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입함(예, 찐팔)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 못지 않게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관세율 적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30%의 동일한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채소류와 식물성유의 양허관세에 있어서 비교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품목군별 HS 분류를 보면, 채소류(7류)가 108개로 가장 많다. 채소류의 품목분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분화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식물

표 3-9. 각국의 품목군별 품목분류 현황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1류	24	32	28	19	23	27	33	15	22	45
2류	53	59	57	53	93	100	219	50	84	68
4류	34	48	34	44	251	85	128	27	76	42
5류	18	20	37	19	18	19	21	15	16	50
6류	14	29	16	12	28	36	28	13	13	66
7류	59	63	72	64	155	139	108	77	80	108
8류	52	62	61	65	116	87	123	53	87	68
9류	33	33	39	32	47	50	54	37	70	36
10류	17	22	16	16	21	25	20	16	26	26
11류	34	37	34	34	38	66	66	34	52	41
12류	54	83	78	52	58	53	74	61	52	85
13류	13	36	21	13	15	12	18	13	17	24
14류	11	13	12	11	14	11	12	11	15	23
15류	70	76	53	52	61	68	125	55	72	107
16류	11	15	14	13	28	55	39	19	33	21
17류	21	24	17	17	57	40	36	23	43	31
18류	11	11	11	12	78	17	15	11	18	19
19류	19	20	18	17	68	82	39	20	84	42
20류	47	49	71	49	170	89	267	58	195	92
21류	17	27	17	22	86	36	40	23	77	62
22류	26	43	23	27	70	78	74	50	47	51
23류	23	35	28	29	35	35	63	23	35	41
24류	9	10	11	9	56	15	13	21	11	25
29류	1	1	2	3	2	1	6	1	1	1
33류	14	27	19	16	20	16	40	16	19	20
35류	4	4	10	13	16	14	24	4	5	11
38류	2	2	8	7	10	2	15	2	2	2
41류	12	13	14	12	12	11	16	12	12	40
43류	9	12	10	9	3	9	13	9	13	13
50류	4	4	6	4	4	4	4	4	5	16
51류	10	22	15	10	39	10	16	10	10	13
52류	5	10	5	5	22	5	6	5	5	9
53류	6	8	6	6	6	6	7	6	7	9
합계	737	950	863	766	1,720	1,303	1,762	794	1,304	1,307

성유(15류) 107개,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92개 등이다. 우리나라는 낙농품의 HS 코드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일본은 20류가 195개로 구분되어 가장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HS 분류는 축산물, 채소, 과실, 곡물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세분화된 HS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축산물과 채소·과실 조제품이다. 육류의 경우 EU는 219개 코드로 되어 있어 미국(93개)이나 우리나라(68개)보다 2~3배 더 세분화되어 있다. 낙농품은 미국이 EU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은 낙농품에 있어서 251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128개보다 두 배, 우리나라의 42개보다는 여섯 배나 더 세분화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도 많다. 이러한 품목들은 곡물류를 비롯하여 초목류(6류), 기타 공업용 원료로 이용되는 농산물(주로 29류 이하에 속하는 농산물) 등이다.

품목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실품목 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품목은 앞에서 분석한 품목군별 분류 가운데 특별히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을 위주로 하였다. 따라서 육류, 유제품, 과실, 채소, 유지작물, 코코아 제품, 주류 등을 위주로 하였다. 분석 대상 25개 품목의 HS 코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546개 코드이다. 다음은 EU로 417개 코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분화가 잘 된 나라는 일본(267개) 캐나다(239개), 태국(161개), 한국(158개) 등의 순서이다. 한국은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는 미국이 가장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표 3-10. 국별 HS 분류의 세분화 정도

	태국	멕시코	칠레	중국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쇠고기 (0201, 0202)	6	6	6	6	42	12	14	6	13	6
돼지고기(0203)	6	6	6	8	14	6	22	6	24	6
가금육(0207)	13	24	13	21	19	38	42	13	22	33
밀크,크림(0402)	13	11	25	5	30	14	28	5	38	10
버터밀크(0403)	3	2	2	2	25	6	30	2	25	3
치즈,커드(0406)	5	12	5	5	156	34	50	7	10	6
절화(0603)	3	3	2	2	16	11	7	2	5	10
감자(0701)	2	2	2	2	7	2	4	2	2	2
토마토(0702)	1	2	1	1	11	4	1	1	1	1
양파,마늘 (0703)	4	5	4	5	7	13	5	3	6	5
채두류(0708)	3	3	3	3	10	9	3	3	3	3
감귤류(0805)	10	5	6	7	10	5	13	5	9	6
포도(0806)	2	2	2	2	8	5	8	2	3	2
사과, 배 (0808)	2	3	3	5	4	6	7	2	2	3
커피(0901)	5	6	5	6	9	5	6	5	6	6
차류(0902)	4	4	4	10	7	6	4	4	8	4
밀, 메슬린 (1001)	2	2	2	4	25	4	4	2	8	6
보리(1003)	1	3	3	2	3	4	2	1	4	4
옥수수(1005)	2	4	2	2	5	2	6	2	9	4
쌀(1006)	48	4	4	5	13	4	34	4	8	6
전분,이눌린 (1108)	7	7	6	6	10	9	7	6	19	7
대두(1201)	2	3	1	5	3	1	2	1	1	2
낙화생(1202)	4	3	2	3	12	2	3	2	6	2
초콜릿 함유 식품(1806)	8	5	5	5	77	11	21	5	25	13
포도주(2204)	5	8	7	4	23	26	94	18	10	8
합 계	161	135	121	126	546	239	417	109	267	158

주: 1) 국별 실행세율 기준임. 단 중국과 EU는 양허세율이 기준임.

2) 멕시코의 초콜릿·코코아 함유식품의 경우, 2000년 실행관세 해당 품목
이 없기 때문에 양허관세로 분류된 품목 수를 기록함.

경우 쇠고기 세번은 42개로 우리나라의 6개에 비해 7배나 많다. 우리나라의 가금육에 대한 HS 코드는 33개로 EU 다음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치즈와 커드의 경우 미국은 15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50개에 비해 3배나 많다. 우리나라는 이 품목에 대하여 불과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밀크, 크림, 버터 등 다른 유제품의 경우도 치즈와 유사하다. 밀은 미국이 25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았다. 다른 나라들은 밀을 2~8 품목으로 분류하는데에 그치고 있다. 쌀(HS 코드 1006)의 경우, 태국이 48개 품목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다. 쌀은 EU도 34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은 6개 품목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특히 축산물에 대한 HS 코드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류, 버터 밀크, 치즈와 커드류 등의 품목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포도주, 코코아 조제품, 초콜릿 등 조제식품에 있어서도 품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포도주를 9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도주 관련 HS 코드는 8개이다. 미국은 쇠고기 42개, 치즈와 커드 156개, 밀과 메슬린 25개, 초콜릿 함유 식품 77개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U는 가금육(42개), 치즈와 커드(50개), 감귤류(13개), 쌀(34개)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분화된 품목분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밀크와 크림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38개로 가장 많고, 중국은 차류의 품목 수가 10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심한 누진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

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농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단순한 관세체계는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과세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세단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번 분류(HS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번 내에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을 가공도와 혼합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관세구조의 특징

우리나라는 중심 관세율을 8%로 하는 산업간 균등관세율 체제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식량안보, 지역 균형발전, 도농 간 소득격차, 농업의 경제외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 이러한 균등 관세율 정책의 예외적 분야로 인정되어 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보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부문은 공산품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Tariffication)에 의한 고율의 관세상당치의 도입 등으로 한층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관세상당치의 도입은 각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는 1,000% 이상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품목 간 관세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간에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농업 부문 관세체계의 복잡성과 경제 왜곡적 성격은 UR 협상을 통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WTO/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농산물 관세체계와 관련하여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율관세 문제는 UR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측면이 있다. 관세상당치를 적용한 관세는 선진국과 수출국에 있어서도 수백%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상당치의 도입은 관세격차도 심화시켰다. 누진관세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율을 높게 하는 것으로 시장보호 효과가 크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의 현황을 양허관세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관세격차

관세격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품목 또는 품목군 사이에 관세율의 차이로 나타난다. 동일한 품목군 내에서도 품목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농산물일수록 그 분류가 세분화되고, 세부 품목간의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 관세율 차이는 최저·최고세율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목에 대한 적용 세율에 있어서도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 간 관세격차 문제가 WTO/DDA 농업협상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1.1. 관세율 평균의 격차

국별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율의 격차는 <표 4-1>과 같다.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60% 포인트에 달한다. 개발도상

표 4-1. 국별 양허관세율 격차

단위: %

	평균(A)	최고세율(B)	B - A
한국	63.8	887.4	823.6
태국	35.4	226.0	190.6
멕시코	42.8	254.0	211.2
중국	37.9	135.0	97.1
칠레	8.9	31.5	22.6
미국	11.1	350.0	338.9
캐나다	21.3	465.8	444.5
EU	22.1	462.7	440.6
호주	4.0	31.3	27.3
일본	41.3	1,416.6	1375.3

주: 위의 10개국 모두 최저 관세율은 0%임.

국과 선진국 사이에도 관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칠레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38%로 선진국 평균 관세율 20%에 비해 상당히 높다. 최고 세율의 격차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칠레와 호주의 최고 세율은 31%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각각 1,416%와 887%로 국가 간 최고 세율의 격차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평균 관세율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으나 최고 관세율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다.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는 일본이 1375.3% 포인트로 가장 심하다.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국가는 칠레로 최고세율과 평균관세율

차이가 22.6% 포인트이다. 한국은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가 823.6% 포인트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1.2. 품목군별 관세격차

품목군별 관세격차는 한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농산물로 분류된 공업용 섬유류의 관세율이 평균 2%에 불과하나 곡분과 전분 등 곡물조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315%로 두 품목군 사이의 관세격차는 300% 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공업용 섬유류의 관세율이 0%로 가장 낮다. 그러나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낙농품으로 153%에 달한다. 따라서 일본의 품목군간 관세격차는 154% 포인트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품목군간 관세격차가 낮은 국가는 호주와 칠레로 17%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유별 평균이 낮은 품목류들은 주로 공업

표 4-2. 국가별 · 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격차

단위: %			
	최저세율	최고세율	관세격차
한국	2(51,52,53류)	314.8(11류)	312.8
태국	4.5(52류)	64 (24류)	59.5
멕시코	11.2(41류)	123 (17류)	111.8
중국	15.3(41류)	91.8(24류)	76.5
칠레	6*	23.4(4류)	17.4
미국	0(41,43류)	52.2(24류)	52.2
캐나다	0(13,14,41,43,50,51,52,53류)	114.2(4류)	114.2
EU	0(14,41,43,50,51,52,53류)	74.2(4류)	74.2
호주	0(41류)	17 (29류)	17.0
일본	0(41,51,52,53류)	153.5(4류)	153.5

* 칠레의 경우, 6%의 최저세율에 해당되는 유(類)는 <표 3-9>를 참조.

용 원료 농산물(41~53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고 세율을 나타내는 품목군은 낙농품(4류)과 담배(24류)인 경우가 많다.

1.3.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

새로운 상품의 출현은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쇠고기라도 품질을 차별화한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축산물의 경우가 축에 먹이는 사료에서부터 사육방식을 달리하고 가공, 유통 단계를 차별화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고 있다.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상품분류를 HS 코드에 삽입하고 관세율을 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HS 코드를 보면 한 가지 농산물이 얼마나 세분화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쇠고기는 냉장과 냉동으로 구분되고 절단된 형태에 따라서 다시 HS 코드가 바뀐다. 물론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이렇듯이 하나의 품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된 HS 코드가 있고 관세율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쇠고기(HS 코드 0202)로 분류되는 쇠고기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EU는 같은 쇠고기라도 HS 코드 번호에 따라 최저 43%에서 최고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 같은 국가,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농산물에 관세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품목 분류에 의해 관세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농산물로는 전분과 이눌린이다. 전분과 이눌린은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가 749.4%나 난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세부 품목간 관세격차는 302%나 된다. 그러나 한국의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는 일부 품목(표4-3)에 나타난 것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6~7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격차가 크지 않다.

일본의 경우 쌀로 분류되었으나 HS 코드가 다른 각종 쌀에 대한 최저관세는 589.9%이고, 최고관세는 1416.6%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땅콩에 대한 관세도 0%에서 577%까지 HS 코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 밖에 품목군 내에서 큰 관세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낙농품, 전분과 이눌린 등이다. 일본도 품목군 내에서 큰 관세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를 크게 유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EU이다. EU는 육류, 낙농품, 곡물류, 가공식품, 주류 등 대부분의 품목들이 품목군 내에서 큰 관세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버터밀크 품목군 내에서 관세율 3.2%의 품목이 있는가 하면 관세율 352.5%의 품목이 있다.

미국은 포도주에 대한 관세격차가 327.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낙농품의 관세격차가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크다. 낙화생, 초콜릿, 쇠고기, 감귤류 등의 관세격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미국과 유사한 품목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밀과 가금육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품목군내 관세격차를 보이는 품목도 많고 격차도 크다. 호주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거의 없다.

중국은 커피, 옥수수, 쌀,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는 크지 않다. 커피의 관세격차가 82%로 가장 큰 품목이다. 태국의 경우에는 밀크와 크림, 양파·마늘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멕시코는 감자,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와 낙농품에 있어서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가 심하다. 칠레의 경우에 밀크와 크림, 밀·메슬린에 대해서만 관세격차가 존재한다.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가 가장 크게 존재하는 나라는 EU이며, 관세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호주와 칠레이다.

품목군 내에 존재하는 관세격차를 중요한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쇠고기의 경우 국별 관세율은 호주의 0%에서 EU의

표 4-3. 주요 품목별 관세격차 현황

단위: %

	한국		태국		멕시코		칠레		중국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쇠고기	40	40	30	30	45	45	6	6	32.5	40	0.5	26.4	0	26.5	43	150	0	0	50	50
돼지고기	22.5	25	30	40	45	45	6	6	40	40	6	0.6	0	0	0	49	0	0	0	89.1
가금육	18	27	30	40	37.5	234	6	6	30	40	0	27.9	0	249	0	641	0	0	3	11.7
밀크와 크림	36	176	5	216	37.5	125.1	6	31.5	27	76	0.4	94.2	0.9	25.7	1.7	220.3	0	1	21.3	411.3
요구르트, 버터밀크	36	89	18	30	37.5	37.5	6	6	40	40	0.05	25.9	12	237.5	32	352.5	1	1	21.3	432.3
치즈, 커드	36	36	30	30	37.5	125.1	31.5	31.5	40	40	0	85.7	0.3	245.6	7.7	276.8	0	31.3	22.4	40
절화	36	36	30	54	36	36	6	6	40	40	32	6.8	0	16	8.5	12	0	0	0	0
감자	304	304	125	125	9	245	6	6	40	40	20	24	1.1	1.6	4.5	13.5	5	5	3	4.3
토마토	45		40		36		6		25		26	4.3	0	5.9	47.8	53.4	1		3	
양파, 마늘	27	360	40	142	36	36	6	6	40	40	0.4	20	0	8.1	9.6	10.4	1	1	3	8.5
채두류	27	27	40	40	36	36	6	6	40	40	0	6.2	0	3.0	8	13.6	1	1	3	3
감귤류	30	144	30	40	36	36	6	6	40	52	0.8	27.2	0	0	1.5	45.9	1	1	0	32
포도	21	45	30	30	27	45	6	6	36	40	0	2.7	0	6.4	2.4	25.2	10	10	1.2	1.7
사과, 배	45	45	30	30	45	45	6	6	20	40	0	0.3	0	8.5	7.2	51.5	1	1	4.8	1.7
커피	29.5	54	90	90	36	72	6	6	18	100	0	0.3	0	0.7	0	11.5	0	1	0	12
차류	60.7	513.6	90	90	25	25	6	6	40	40	0	6.4	0	0	0	3.2	0	1	0	1.7
밀, 메슬린	1.8	9	27	27	67	67	6	31.4	114	114	2.8	4.4	0.5	76.5	12.8	101.9	0	0	241.2	289.4
보리	299.7	513	27	9	115.2	6	6	91.2	0.7	1.2	0	94.7	8.27		0				254.1	
옥수수	328	600	73	73	37	194	6	6	40	114	0	1.3	0.1	0.8	0	70.1	1	1	0	50
쌀	-	-	52	52	9	45	6	6	40	114	1.0	11.2	0	0.9	7.7	127.8	1	1	589.9	1416.6
전분, 이눌린	50.9	800.3	30	30	36	45	6	6	36	36	0	2.6	1.3	40.5	4.4	51.4	1	8	47.4	517.3
대두	487	80	80	9	45	31.5		114		0		0		0	0		1		0	
낙화생	230.5	230.5	30	30	9	45	31.5	31.5	40	40	8.4	163.8	0	0	0	0	5	5	0	57.3
초콜릿 함유식품	19.7	25.2	20	40	45	156	6	6	15	15	0	110.4	0	25.2	15.4	68.9	17	17	10	29.8
포도주	30	30	54	60	36	45	6	6	60	135	0.7	3.8	0.9	73.1	0.6	271.6	6	15	13.1	32.3

주: 1) 국별 양허세율 기준.

2) HS 코드별 품목분류는 <표 8> 국별 HS분류의 세분화 정도와 동일함.

3) 위 표에서 최소, 최저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세율로 표시된 것은 양허된 품목이 1개임을 나타냄.

150%까지 매우 다양하다. 쇠고기에 대한 국가별 관세격차는 150% 포인트이다. 한국, 태국, 멕시코, 칠레, 일본 등 대부분의 쇠고기 수입국가들은 쇠고기로 분류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U, 미국, 캐나다 등 쇠고기 수출국들은 쇠고기의 HS 코드별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EU는 쇠고기에 대하여 43%에서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군 내에서의 다양한 관세격차는 낙농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치즈·커드의 경우에 한국, 태국, 칠레, 중국 등은 관세격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이 최저 0%에서 최고 85.7%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EU가 7.7%에서 276.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구르트와 버터밀크의 경우에도 호주의 관세율은 1%이나 EU의 관세율은 352.5%이다. EU는 버터밀크로 분류된 같은 품목군 내에서 관세율을 3.2%에서 352.5%까지 다양하게 부과한다. 관세격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품목은 과실류와 화훼류 등이다.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부위별, 상태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농산물 또는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현저한 농산물은 낙농품, 곡물, 가공식품 등이다.

2. 고율관세

고율관세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UR 농업협상으로 관세상 당치에 해당하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평균 관세율보다 크게 높은(예; 3배 또는 4배 등) 관세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수입을 차단할 정도로 높은 관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UR 협

표 4-4. 국별 고율관세 분포

	품목수	관세율(%)	주요 고율관세 품목류
한국	119	100.5~887.4	밀크·크림류, 감자, 양파·마늘류, 채소류, 두류, 전분류(p), 차류, 후추, 보리, 옥수수, 곡물의 분쇄물, 인삼류, 텍스트린
태국	15	125~226	감자, 대두유, 팜유, 야자유, 생사(p)
멕시코	54	109~254	가금육의 식용설육, 돼지비계, 밀크·크림류, 치즈, 감자, 보리, 맥아, 돈지류(p), 유지류(p), 자당류, 기타조제식료품류
중국	37	100~135	커피, 밀과 메슬린, 쌀, 기타가공곡물, 대두유, 유채유, 포도주·즙(p), 증류주(p), 담배류(p)
칠레	0	-	-
미국	26	109~350	밀크·크림류, 곡분, 당류, 조제건과류, 담배류(p)
캐나다	93	133.5~466	가금류, 식용설육, 밀크·크림류, 유장, 버터류, 치즈, 곡분(p), 맥아, 조제설육, 맥아엑스, 기타조제식료품류, 알부민
EU	59	101.3~462.7	쇠고기, 면양, 식용설육, 밀크·크림류, 유장(p), 버터류, 쌀, 올리브유, 버섯류, 과일·채소즙스류, 포도주·즙
호주	0	-	-
일본	113	101~1,416.1	밀크·크림류, 유장, 두류, 쌀(p), 곡분, 기타가공곡물, 전분과 이눌린, 조제설육, 자당류, 맥아엑스, 기타조제식료품

주: 1) 분석대상은 양허관세율임.

2) p는 최고세율을 나타냄.

상에 의해 관세상당치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가 설정된 이후에는 국가별, 품목별로 수입금지적 관세에 해당하는 고율관세 품목이 많이 생겼다. 여기서는 분석대상국 10개국의 평균 관세율을 고려하여 100%가 넘는 관세를 ‘고율관세’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평균 관세율이 50%가 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100%를 고율관세

로 보는 것은 평균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되는 관세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1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119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다<표 4-4>. 119개 고율관세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00.5%에서 887.4%까지 격차가 크다. 주요 고율관세 품목은 낙농품, 곡물류, 두류, 채소류, 인삼 등이다. 한국 다음으로 고율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13개 품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주로 곡물류와 낙농품, 당류, 조제식료품 등의 농산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곡물과 축산물의 수출국이지만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고율관세 품목이 많다. 캐나다의 고율관세 품목은 93개로 호주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캐나다의 고율관세 품목은 축산물과 곡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고율관세 품목은 26개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미국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 당류, 담배 등이다. EU의 고율관세 품목 수는 59개이며, 주로 축산물과 채소에 부과된다.

3. 누진관세

누진관세란 원료의 관세를 낮게 하고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상품을 해외에서 싸게 구입하여 생산비를 낮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완제품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제품 시장의 발전은 원료의 수요를 증가시켜 원료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누진관세 체계는 완제품 산업의 실효보호율⁷을 높여 산업보호 효

⁷ 실효보호율이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관세율까지 고려한 보호

과를 크게 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관세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누진관세 체제를 유지하여 가공도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완제품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을 값싼 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역관세는 완제품 산업이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는 원료비 상승으로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다. 더욱이 수입되는 완제품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는 완제품 시장의 경쟁을 격화시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3.1. 품목군별 누진성

관세의 누진성을 국가별로 판단하기 위해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 차이를 계산한 것이 <표 4-5>이다. 한국은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과일류와 과일조제품, 곡물류와 곡물조제품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지만, 육류와 육류조제품 사이에는 누진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원료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농산물 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역관세는 태국,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세의 역누진성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다음이 멕시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누진관세 체제를 가지고 있다.

관세의 누진성은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캐나다

율의 개념으로 원료의 관세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원료의 관세율이 낮으면 수입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여 생산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산업의 경쟁력은 커지게 된다. 반면 명목보호율은 양허관세율이나 실행관세율 등의 형태로 표시된 관세율 자체를 의미한다.

와 호주는 분석대상 품목 전체에서 관세의 누진성이 발견되었다. 일본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에 대한 국경보호 조치가 높은 나라로 곡물 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육류와 육류조제품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한다. EU는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과일과 과일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가 존재한다.

주로 육류와 육가공품, 과실류와 과실 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은 반면에, 곡물류와 곡물 조제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곡물과 곡물 조제품에 대해 모두 역관세가 나타나며, 많은 국가들의 곡물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 경향이 뚜렷하다. 개발도상국들은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사이에 역관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들은 누진관세를 나타낸다. 곡물 가공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 누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4-5. 품목류별 누진관세 현황

	단위: %			
	16류 - 2류	20류 - 7류	20류 - 8류	19류 - 10류
한국	31.6	-81.8	-41.8	-184.3
태국	0.5	-14.6	-6.9	-8.4
멕시코	-37.1	-1.3	1.2	-15.3
칠레	0.0	0.0	0.0	-1.6
중국	2.5	5.2	2.5	-34.9
미국	-1.9	2.9	4.5	14.3
캐나다	2.3	2.6	4.3	9.0
EU	-10.4	12.6	12.5	-24.0
호주	10.1	4.3	5.9	5.4
일본	25.1	-21.9	7.5	-80.8

주: 2류(육류), 16류(육류 조제품), 7류(채소류), 8류(과실류), 20류(채소 및 과실류의 조제품), 10류(곡물류), 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3.2. 주요 품목별 누진성

한국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와 이를 가공 처리한 조제품의 경우에는 누진관세가 존재한다<표 4-6>. 그러나 곡물, 채소, 과일과 그 조제품 사이에는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과 옥수수 가공품 사이에는 역관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토마토와 토마토 조제품 그리고 포도와 포도주 사이에도 역관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과와 사과주스는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어 역관세나 누진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태국의 경우 역관세가 많이 발견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토마토와 이들의 가공품 사이에 모두 역관세가 존재한다. 중국은 옥수수 가공품의 경우에만 역관세가 나타나고 나머지 품목들은 누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칠레는 분석 품목들에 대해서 역관세나 누진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인 미국, 캐나다, 일본은 쇠고기의 경우에만 역관세가 나타나고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누진관세가 존재한다. 호주는 6개 품목 모두 누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는 누진관세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돼지고기와 그 조제품, 포도와 포도주 사이에만 누진관세가 나타나고 있다.

포도와 포도주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누진관세가 나타난다. 돼지고기와 그 조제품 사이의 경우에는 태국만이 역관세가 존재한다. 품목류별 누진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곡물인 옥수수와 가공품사이에는 개도국들은 주로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EU를 제외하고 모두 누진관세가 존재한다. 세부품목에 대한 분석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비하여 누진관세가 존재하는 품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6. 국가별 주요 품목별 누진관세 현황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토마토	포도	사과
한국	32	16.7	-386.4	-4.5	-3	0
태국	-20	-3.3	-43	-10	27	10
멕시코	0	0	-1	1	4.5	-8
중국	5	0	-37	15	69.3	0
칠레	0	0	0	0	0	0
미국	-6.4	2.1	8.3	8.4	5.8	0
캐나다	-6.3	6.3	7.8	9.2	9.8	1.7
EU	-28	3.3	-1.7	-36.2	18.9	-7.8
호주	11	10.4	6	10	3.7	7
일본	-20.9	92.1	54.5	9.7	12.3	9.5

주: 각 품목의 세번분류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조제·저장 식용설육(160250) - 쇠고기(0201,0202).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고기의 조제·저장 식용설육(16024) - 돼지고기(0203).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1005) - 콘플레이크(1904).

토마토의 경우, 토마토(0702) - 조제·저장한 토마토(2002).

포도의 경우, 포도주(2204) - 포도(0806).

사과의 경우, 사과주스(200970) - 사과(080810).

제 5 장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 분석

선진국들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결과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이행도 2004년이면 끝난다.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결과 이행이 완료되는 것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DDA 협상'은 2005년 1월을 협상타결 시한으로 정했으며, 농업 분야 협상은 2003년 3월까지 협상의 세부 원칙이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일정과 관련된 협상안은 2003년 2월에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국내보조보다는 국경보호, 특히 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수입허가나 쿼터 등 비관세 장벽이 관세로 전환된 UR 협상 이후, 관세의 시장보호 기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를 감축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수출국들은 관세를 큰 폭으로 낮춰 그들의 시장을 확보하고자 협상중이다. 이 때문에 DDA 농업협상은 관세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산물 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방식과 세

율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자는 의미에서 이번 DDA 협상에서 여러 가지 관세 감축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다. 반면 선진국들의 관세제도는 투명성이 낮다. EU 같은 경우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 계절관세, 최저 또는 최고 제한관세 등 매우 복잡한 관세 부과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관세체계는 관세율이 높은 것 못지않게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3.8%로 높은 편이다. 멕시코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3%이며, 중국, 태국, 칠레도 30%를 넘는다. 반면 호주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4%와 11%로 낮고, EU와 캐나다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차이를 좁히고 시장개방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미국은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공식회의(2002년 9월)를 앞두고 관세 감축 방식으로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제안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그 원리로 볼 때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관세는 크게 감축되는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 관세율 상한을 제한하는 계수를 25%로 할 경우 관세율이 높은 회원국의 관세는 급격히 감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관세율 차이가 줄어들고 시장개방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과 더 현실적인 협상안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관세 감축공식인 UR 방식, 스위스 공식, 혼합 공식, 일본 공식, EU 공식, 캐나다 공식 등 여섯 가지가 각국의 관세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요 10개국(한국,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등 개발도상국과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WTO 농업협상 동향

1.1. 협상 준비 단계: AIE 작업(1995~1999)

WTO 출범이후 1995년 3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통상 연간 네 차례씩 21회의 농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농업위원회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식회의에서는 주로 회원국들의 UR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들이 WTO 사무국에 통보한 UR 이행 결과에 대해 토의하는 등 감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비공식회의는 1997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비공식회의는 싱가포르 각료회의(1996년 12월) 결정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상을 준비하는 성격의 회의로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 Information Exchange: AIE)’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 회의는 시애틀 각료회의 직전인 1999년 9월까지 개최되었다. AIE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이 74개의 검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쟁점이 가시화되고 케언즈 그룹, NTC(Non-Trade Concerns) 그룹, 개도국 그룹 등 이해를 같이 하는 회원국 그룹들의 비공식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UR 협정문에는 추가적인 자유화나 협정문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협상 일정이 명문화되어 있다(자동협상 의제 또는 기설정 의제; Built-in Agenda). 농업 관련 자동협상제의 하나인 새로운 농업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농업협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농업협정문 20조는 “...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을 통한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UR 협상 결과의 이행 완료 1년 전에 협상을 재개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차기 협상일

정을 명시하였다(이를 자동협상 의제라고 부르는 이유임).

따라서 WTO 농업협상은 1999년 연말에 열린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실시 합의에 실패한 것과는 관계없이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선진국들의 UR 협상 결과 이행이 종료되는 2000년 말(이행기간 6년, 1995-2000년)을 기준으로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뉴라운드란 농산물은 물론 지적재산권, 공산품,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등 회원국들의 관심 사항이 모두 포함된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지난번에 타결된 UR 협상은 이러한 포괄적인 협상의 하나로 GATT의 제8차 다자간 협상이었다.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 시점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2000년 초에 시작될 농업 분야 협상의 조기 종결을 위해 1997년부터 준비작업(Work Program)을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일본, EU, 스위스 등은 이러한 준비작업이 실질적인 협상개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타협안으로 협상은 2000년부터 시작되되 1997년부터 농업위원회에서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AIE)” 작업을 실시하여 차기협상에서 거론될 쟁점들을 토론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11월까지 11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한 AIE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차기협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1.2. 1단계 협상: 제안서 제출(2000. 1.~2001. 3.)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 3월 회의부터 농업협상은 시작되었다. 제1차 특별회의는 불투명한 전체 협상전망을 감안하여 제안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 협상계획만 확정하였으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2000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로 합의하였다. 2001년 2월에는 특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안서 제출시한은 2001년 3월 회의까지 연장되었다.

1단계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제안한 제안서는 47개로 마감되었으며, 이와 함께 22개의 사무국 배경문서가 제출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2단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NTC 그룹의 핵심일원으로 NTC 관련 제안서를 작성하여 27개국 공동명의로 제안 형식으로 제출하여 NTC 문제를 공식 쟁점화 시켰다.

제1단계 협상 과정에서 케언즈 그룹 측은 출발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기술적(Technical Issue)인 개혁안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협상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 반면, NTC 그룹 측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개념을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 이론적 논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협상의 본질논쟁을 반복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결국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되자 케언즈 그룹과 NTC 그룹은 각각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지기반 확대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3. 2단계 협상: 의제별 협상(2001. 5.~2002. 3.)

2단계 협상은 2001년 5월 농업위원회부터 시작하여 2002년 3월 농업위원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었는데, 협상은 2001년 5월, 7월, 9월, 12월, 2002년 2월, 3월 등 모두 여섯 차례가 열렸다. 2단계 협상의 의제는 초기 협상 의제로 10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10대 의제는 관세할당(TRQ) 물량 관리, 관세,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등이다.

2001년 5월 회의에서는 TRQ 관리, 관세, 감축대상 AMS 등 3개 분야가 협상 대상이었다. 2단계 협상 기간 중에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각국의 고위급 및 실무급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회의 개최 빈도도 연 4회에서 특별 회의를 추가하여 연 6회로 늘리고 회의 기간도 2~3일에서 4~5일로 연장하여 협상이 본격화된 상태이다.

2001년 3월부터 진행된 제2단계 협상에서는 19개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논의가 시도되었으나 전통적인 의제(관세, TRQ, 수출보조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NTC 그룹의 주장으로 포함된 NTC 관련 의제(식량안보, 식품안전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1.4. 3단계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협상

3단계 협상은 2001년 11월에 개최된 도하 각료회의 이후 새로운 협상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인 2002년 3월 이후의 협상을 말한다. 3단계 협상은 주로 협상의 세부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장개방의 폭과 기간 등이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의 협상이다. 3단계 협상은 2002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3단계 협상에서는 먼저 수출보조 분야가 논의되었으며(2002년 6월), 다음으로 시장접근 분야(2002년 7월)와 국내보조 분야(2002년 9월)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 이어서 2002년 11월에는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협상이 열렸다. 이러한 협상을 기초로 2002년 12월에는 의장초안이 작성, 배포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뉴라운드) 출범을 승인하였으며, 뉴라운드의 명칭은 “도하 개발의제”로 결정되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에 또 다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뉴라운드에서는 농업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각 분야의 협상 결과를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협상이 결렬되어도 뉴라운드는 타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지적재산권, 투자, 무역원활화, WTO 규범, 환경, 전자상거래,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우대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일정 기간 논의를 거친 이후에 협상으로 이어질 분야도 있다.

뉴라운드의 출범은 농업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WTO에서 이미 진행 중인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문들로 볼 수 있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부문(예, 반덤핑, 공산품 등)도 같이 협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은 농업협상의 목표와 시한을 못박아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활력과 가속도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각료선언문에 “실질적 감축, 실질적 개선”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은 수출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료선언문의 내용이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입국과 수출국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각료선언문에 합의를 이룬 것은 뉴라운드의 출범과 실질적 협상의 시작 등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뉴라운드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200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급속히 침체되어 가는 세계 경제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UR 협상 타결 이후에도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증가하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된 이후 WTO 체제에 대해 증가하는 회의론을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 환경파괴, 수출국 문화에의 종속, 시장 불안정 가속화 등

부정적 측면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각료선언에서는 협상기간을 3년으로 못박아 각 분야의 협상은 2005년 1월까지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다자간 협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상시한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 분야는 이러한 전체적인 협상일정보다 앞당겨진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2003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에 국가별 이행계획서(C/S)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농산물 협상이 이미 2000년부터 WTO 농업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점과 가장 의견 차이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전체 협상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료선언문 가운데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점진적(Progressive)”이란 단어는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이 주장한 “실질적(Substantial)”이란 단어가 반영되어 수출국의 입지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 이번 협상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등 농산물 수입국 주장이 반영되어 개방의 폭과 속도 등에 있어서 수입국들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각료선언문에 포함된 농업협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UR 협상에서 구축된 세 가지 핵심 협상 분야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는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국내보조 분야는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그리고 수출보조 분야는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Reductions with a View to Phasing Out)”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며 비교역적 관심 사항에 유념하고 이를 협상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였다. 뉴라운드에는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또는 ‘도하개발 프로젝트’로 불리게 되었다.

2000년부터 진행되어 온 농업협상은 DDA 출범에 따라 DDA 협상의 한 분야로 편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농업협상은 각료선언문에 명시된 협상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며, 2002년 3월 이후에는 주로 협상의 3대지주로 불리는 국내보조, 수출보조, 시장접근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시장개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쟁점은 관세 감축폭과 방식, 시장접근물량 확대 및 관리방법 개선, 특별긴급관세의 폐지 여부 등이다.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제안서를 통해 우선 농산물 관세 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세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한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영무역 등을 통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가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시키므로 이에 대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의 평균 관세 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는 점, 보호무역적인 누진관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세를 큰 폭으로 더 감축하고 누진관세 체계를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UR의 관세 감축 방식이 너무 많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협상에서는 신축성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반덤핑 조치, 긴급수입제한 조치, 상계관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수량규제(BOP 조항) 등 특수한 규제조치들이 존재하므로 UR에서 새로 도입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폐지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관세 부과방식도 종가세로 통일하여 현재 도입되고 있는 종량세, 종가·종량 복합세, 종가 또는 종량 선택세 등 복잡한 부과방식을 단순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① 수출경쟁 분야 협상(2002. 6. 17~20), ② 시장접근 분야 협상(2002. 7. 29~30, 9. 2~4), ③ 국내보

조 분야 협상(2002. 9. 5~6, 9. 23~25, 9. 27), ④ 종합검토 회의(2002. 11. 18~20, 11. 22), ⑤ 초안 검토(2003. 1. 22~24, 초안은 2002년 12월 18일까지 배포될 예정), ⑥ 1차 초안 논의(2003. 2. 24~28), ⑦ 세부원칙 확정(2003. 3. 25~31) 등이다.

1.5. 관세 감축 관련 제안서

관세 감축과 관련하여 여러 회원국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이 협상 세부원칙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국이 제안한 주요 관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율관세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상당치를 계산함에 있어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내외 가격차를 과대 계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엘살바도르 외 5개국, 우루과이). 회원국별로 나타나는 큰 폭의 관세격차와 관련하여서는 관세의 대폭 인하 및 관세 감축의 신축성 철폐를 통해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엘살바도르 외 5개국). 수입제한 효과가 크고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누진관세를 철폐 하자는 주장은 엘살바도르 외 5개국을 비롯하여 미국 등이 주장한 바 있다. 최고 상한관세를 설정하고(캐나다, 엘살바도르 외 5개국), 관세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도 요구하고 있다(WTO 사무국 문서 AIE/S5, 미국).

표 5-1. 관세 감축 방법과 폭에 대한 제안서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한 국	○ 각국의 사정과 비교역적 관심 사항을 고려, 점진적으로 소폭 감축 ○ 신축적·점진적 접근	W/98
미 국	○ 국가 간 관세수준 격차 해소 ○ 쿼터 내(In-quota) 관세 포함, 상당 수준 감축 또는 철폐	W/15

표 5-1. 계속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캐나다	○ 단일관세 품목은 공식에 따라 상당 수준 감축하여 관세수준 격차를 축소(조화) - 최종이행연도 양허관세의 상한 설정(상한 초과시 이중관세로 전환하여 일정물량은 무관세 수입 허용) - UR의 감축률과 이번 협상 감축률의 합계에 하한 설정 ○ 이중관세 품목은 쿼터 내 관세 철폐, TRQ에 의한 자유화 정도를 고려하여 고율 관세 수준 결정	W/12
쿠바 등 11개 개도국	○ 선진국의 고율관세 제거, 관세조화공식 마련(가공 열대농산물 완전 자유화와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 감축 겨냥) ○ 단순평균방식 감축 반대	W/14
케언즈 그룹	○ 다른 분야 제품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하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무차별적인 접근 허용 ○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하는 공식을 이용, 대폭 감축 ○ 관세상한 설정 ○ 가능한 경우, 관세·기타 부과금 제거를 위한 추가 조치 도입 ○ 보상(Downpayment) 실시 - 선진국은 이행 초년도에 UR 협상의 개혁과정이 계속 되었을 경우 요구되는 수준의 상당수준 관세 감축	W/54
ASEAN	○ 관세격차 해소, 선진국의 관세를 더 많이 감축 ○ 추가적 관세인하, 고율 관세와 누진관세 철폐 등을 통한 열대농산물의 최대한 자유화	W/55
일 본	○ 관세수준 결정 시 각국의 생산, 소비, 국제수급 등을 감안, 품목별 신축성 확보 - 관세화 품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도 감안하면서 국내외가격차와 농정개혁 진척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쿼터 초과(Out-quota) 세율 설정	W/91
카리브해 공동체	○ 개도국 산품에 대한 선진국 관세 상당 수준 감축 - 관세가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공식 도입	W/100
노르웨이	○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관세 감축	W/101
인 도	○ 개도국은 적정 수준의 관세 유지, UR때 낮게 양허된 관세는 한도양허(Ceiling Binding) ○ 고율 관세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개발(관세상한 설정 포함) - 선진국은 2001. 1. 1 관세의 50% 감축(2001말까지)	W/102

표 5-1. 계속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모로코	○ 선진국은 상당 수준 급속하게 관세 추가 감축 ○ 고율관세 철폐	W/105
이집트	○ 관세와 진입부과금을 상당 수준 감축 ○ 종량세, 참조가격, 최저진입가격, 가변부과금, 혼합 세율 등 철폐 ○ 고율관세, 관세격차 철폐	W/107
터 키	○ 선진국의 고율관세 철폐 ○ UR방식	W/106
EU, 폴란드	○ UR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 전체 평균과 최소감축률 적용	W/90, W/103
스위스	○ Request-Offer(R/O)방식 관세 감축(감축률 평균을 정하기 위한 관세 감축공식으로 보완 가능 - 품목별, 사안별 접근	W/94
나이지리아	○ 선진국 고율관세의 상한 설정, 쿼터 내 관세 감축	W/130
콩 고	○ 선진국의 관세 및 고율관세 상당수준 감축, 양허관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경보호조치 철폐	W/135
멕시코	○ 관세 감축의 원칙은 국내보조, 수출보조로 인하여 국제무역에서 초래되는 시장왜곡의 정도에 따라 결정 - 관세 및 TRQ에 대한 협상은 R/O방식 - 수출보조의 철폐 또는 상당 수준 감축,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의 상당 수준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세 감축 modality는 UR방식과 유사할 것임.	W/138
요르단	○ 이행기간 말에는 각국의 양허세율이 수렴되도록 보장 ○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 구체적 관세율 목표 설정(예: 가중 평균방식)	W/140
아프리카 그룹	○ 개도국 수출품이 직면하는 고율관세는 상당 수준 감축	W/142
나미비아	○ 고율관세는 정해진 기간 감축 및 점진적 철폐	W/143

표 5-2. 누진관세 관련 제안서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캐나다, 케언스그룹, 아세안, 카리브해 공동체, 터키, 이집트	○ 제거	W/12, W/54, W/55, W/100, W/106, W/107
미 국	○ 상당수준 감축 또는 철폐	W/15
쿠바 등 11개 개도국	○ 제거(관세조화공식 마련)	W/14
일 본	○ 가공농산물은 농업과 함께 발전해 온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세 설정	W/91
스와질랜드	○ 축소	W/95
인 도	○ 공식 개발	W/102
아프리카그룹	○ 선진국의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을 상당 수준 감축	W/142
나미비아	○ 정해진 기간 감축 및 점진적 철폐	W/143

표 5-3. 관세 부과 방법 관련 제안서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한 국	○ 신축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관세 부과방법 유지	W/98
미 국	○ 혼합세·복합세는 종가세로 전환	W/15
쿠바 등 11개 개도국	○ 가격변동대 제도, 계절관세 제도 등 가변적 관세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철폐하고 개도국에는 허용 ○ 선진국 관세체계의 투명성 제고 및 단순화(모든 관세의 종가세 전환)	W/14
케언즈 그룹	○ 관세체계를 단순화·투명화 - 종량세로 표시된 최저진입가격(specific minimum entry price) 철폐 - 종가세로 관세 감축약속	W/154
카리브해 공동체	○ 계절관세 및 종량세의 종가세 전환 ○ 가변적 관세, 복합관세 등 철폐 또는 단순화 - 개도국에게는 전환에 필요한 기간 인정	W/100
터 키	○ 선진국의 종량세, 혼합세는 종가세로 전환, 모든 가변관세와 복합세 철폐, 관세구조 단순화	W/106
이집트	○ 종량세, 참조가격, 최저진입가격, 가변부과금, 혼합세율 등 무역왜곡적 요소 철폐	W/107
콩 고	○ 관세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	W/135

2. 관세 감축공식

2.1. UR 방식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모든 협상대상 품목의 평균 감축률과 품목별 최소 감축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신축성을 가지고 관세를 감축해 나가는 것이다. 선진국의 감축률은 6년간 품목별 최저 15%, 평균 36%이며 개발도상국 감축률은 10년간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이다. 이 방식은 WTO 회원국들에게 품목별로 관세 감축의 신축성을 부여해서 회원국들이 조기에 협상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UR 농업협정에 근거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의 관세 감축률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는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요 품목, 혹은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가 간 혹은 품목간에 관세율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t_1 = t_0(1 - UR\ cut), \text{ subject to minimum}$$

여기서, t_1 = 관세 감축 이후의 관세율, t_0 = 관세 감축 이전의 기준세율, minimum = 선진국 15%, 개발도상국 10%를 의미함.

2.2. 미국 공식

미국은 관세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60%를 인하할 수 있게 한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규정에 근거해서 일률적인 60%의 관세 인하를 원칙으로 하고, 관세가 낮은 일부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미국방식에 의하면 관세율이 6.7%를 초과하는 품목은 60%의 감축 효과를 나타내고, 6.7% 이하인 품목의 경우에는 감축률이 50%~60%로 나타난다. 이 공식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가지는 품목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60%만큼 감축하자는 것이다.

$$t_0 > 6.7\% \text{ 인 경우, } t_1 = t_0(1 - 0.6)$$

$$t_0 \leq 6.7\% \text{ 인 경우, } t_1 = t_0(1 - 0.5) - 1.5 \times \frac{t_o^2}{100}$$

여기서, t_0 = 관세감축 이전의 기준세율, t_1 = 관세감축 후의 세율임.

2.3. 캐나다 공식

관세율이 5% 미만인 품목들의 관세는 0%로 하고, 관세율이 5% 이상이고 40% 이하인 품목의 관세는 50%를 감축하며, 40%보다 높은 관세 품목들은 감축 이후의 관세가 20%로 일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캐나다 공식에 따르면, 40%가 넘는 고율 관세 품목과 40% 주위에 분포한 품목의 관세는 20%으로 낮아지게 된다.

$$t_0 < 5\% \text{ 인 경우, } t_1 = 0$$

$5 \leq t_0 \leq 40\%$ 인 경우, $t_1 = t_0(1 - 0.5)$

$t_0 > 40\%$ 인 경우, $t_1 = 20\%$

2.4. 일본 공식

관세율이 5%보다 높을 때에는 70%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고, 5%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감축하지 않는 공식이다. 관세 감축률 70%를 적용한 이후에 다시 3.5%를 더하여 관세율이 5%가 넘는 품목들이 감축이후에 5% 이하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관세율이 5%보다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축되지 않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관세 감축공식을 단순화하고, 예외 품목을 가급적 적게 두며, 관세율 격차를 축소하는 조정인하요소를 보호하는 것에 기초한 방식이다. 따라서 일본방식에 의하면, 기준 관세율이 100%일 경우에 감축이후 관세는 33.5%가 된다.

$t_0 > 5\%$ 인 경우, $t_1 = t_0(1 - 0.7) + 3.5\%$

$t_0 \leq 5\%$ 인 경우, $t_1 = t_0$

2.5. 스위스 공식

높은 관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는 공식이다. 이 공식은 도쿄라운드(1973~79)에서 스위스가 제안한 공식인데, 낮은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의 대폭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b 는 주어진 값으로써 관세율 상한을 나타내고, b 가 작을수록 감축률이 커진다. 도쿄 라운드 당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스위스 공식에서 b 값은 14(미

국, 스위스 등이 주장) 또는 16(EC, 호주 등이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관세율 상한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세 자리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세율 상한을 이보다 높게 책정하여 비교하였다.

$$t_1 = \frac{b \times t_0}{b + t_0}$$

b : 관세율 상한.

2.6. 혼합 공식(Cocktail Cut)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국가 간 혹은 품목간 관세율 격차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혼합 감축공식은 UR 방식과 같은 일률적인 선형감축과 스위스 공식에 의한 감축공식을 병용한 것이다. 스위스 공식에 의해 관세율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높은 관세율은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이하의 관세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의 관세 감축이 적용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특정 관세수준 이하에서도 일률적 선형감축이 적용되도록 하고 고율관세는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 방식을 적용하는 절충안이다.

$$t_0 \leq \frac{a \times b}{1 - a} \text{인 경우, } t_1 = t_0(1 - a)$$

$$t_0 \geq \frac{a \times b}{1 - a} \text{인 경우, } t_1 = \frac{b \times t_0}{b + t_0}$$

여기서, a : 일괄적인 관세율 감축을 나타내는 계수

b : 관세상한을 나타내는 계수

표 5-4. 주요 관세 감축공식

관세 감축 공식	수 식
1. UR 방식	$t_1 = t_0(1 - UR\ cut)$, subject to min. (UR cut 36%, 24%)
2. 미국 공식	If $t_0 > 6.7\%$ $t_1 = t_0(1 - 0.6)$, Else $t_1 = t_0(1 - 0.5) - 1.5 \times \frac{t_o^2}{100}$
3. 캐나다 공식	If $t_0 < 5\%$, $t_1 = 0$, If $t_0 > 40\%$, $t_1 = 20\%$, Else $t_1 = t_0(1 - 0.5)$
4. 일본 공식	If $t_0 > 5\%$, $t_1 = t_0(1 - 0.7) + 3.5\%$, Else $t_1 = t_0$
5. 스위스 공식	$t_1 = \frac{b \times t_0}{b + t_0}$, b = 관세율 상한(예, 25% or 100% or 200% 등)
6. 혼합 공식	If $t_0 \leq \frac{a \times b}{1 - a}$, $t_1 = t_0(1 - a)$, Else $t_0 \geq \frac{a \times b}{1 - a}$, $t_1 = \frac{b \times t_0}{b + t_0}$

3.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석에 필요한 각국의 관세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산물 관련 관세율 자료는 국가별로 HS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00여 개에 달한다. 일부 수산가공품과 세번이 통합된 것을 제외하여도 분석 대상

품목은 1,300여 개이다. 또한 국가별로 비종가세 형태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세율을 계산이 가능한 종가세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관세율 자료를 원자료로 이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별 양허관세는 AMAD(Agricultural Market Access Database, www.amad.org)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 일부 자료는 WTO의 국별 양허관세율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품목은 농업협상 대상인 국제표준 분류(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16류 가운데 수산가공품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류~53류로 하였다.

종량세, 복합세, 계절관세, EU의 최소 및 최고 관세 등 비종가세율은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선택세의 경우는 종가세를 기준관세로 간주하였다. 종가세로의 변환은 종량세의 경우 해당 품목의 단위당 종량세를 해당 품목의 수입단가로 나누어 사용하였다(AMAD 자료를 기초로 수입단가를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기타 자료를 원용하였음). 계절관세, 최고 및 최저 관세 등으로 나타난 비종가세는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정확성과 시차에 따라 변환된 종가세는 변동될 수 있다. 세분화된 관세율 코드(예, HS 8 단위 또는 10단위)와 실품목(HS 4단위 또는 6단위)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 대상 품목 수는 각국의 HS 코드 세분화 정도와 국제기구가 제공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가별 분석 대상 품목 수는 태국 737개, 멕시코 950개, 중국 863개, 칠레 766개, 한국 1,307개이다. 개발도상국들의 품목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비종가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태국뿐이었다. 우리나라는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를 가지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종가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종가세로의 변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HS 분류는 개발도상국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분석 대상 품목 수는 미국 1,723개, EU 1,764개, 캐나다 1,307개, 일본 1,304개, 호주 799개 등이다. 선진국으로 분류한 이들 5개국은 모두 비종가세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비종가관세는 2000년과 1999년 수입단가 및 AMAD에서 제공하는 국제가격(1999년, HS 6단위 기준)을 이용하여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캐나다의 비종가세는 해당 품목의 1999년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일부 1999년의 수입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은 1995~1997년의 해당 수입단가를 이용하였다. EU의 비종가세는 2000년 수입단가 및 AMAD 제공 국제가격(1999년, HS 6단위)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호주의 비종가관세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1999년 수입단가를 이용하여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일본의 비종가관세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일본의 수입단가 및 국제가격(1999년 기준, HS 6단위)을 이용하여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4. 평균관세율의 변화

4.1. 국가별 관세 감축공식 선택 가능성 분석

이상의 자료와 분석방법을 가지고 관세율 감축이 가져올 농산물의 관세율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UR방식의 경우 품목별로 최소 감축률만 지키면서 평균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 품목별 관세 감축률은 최소 감축률과 평균 감축률을 지키는 조건하에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 감축률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

서 여기서는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의 경우 미국의 제안을 스위스 공식1로 표시하였으며, 관세율 상한 100%와 200%를 각각 스위스 공식2와 스위스 공식3으로 표시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공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혼합 공식은 관세율 상한 100%, 일률적인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의 경우 36%, 개발도상국은 24%를 가정하였다. 국가별로 모든 농산물 세번(HS 코드)에 각각의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 감축률을 구하고 그 결과를 평균하였다. 따라서 구해진 평균 관세율에 단순히 관세 감축공식을 적용하여 평균 관세율의 변화를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UR방식의 관세감축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덟 가지 관세 감축공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5>.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 감축률 측면에서 스위스 공식3이 UR 공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 3개국을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EU는 UR 관세 감축폭과 비슷한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스위스 공식3은 자국의 관세 감축률 최소화 측면에서 보면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공식으로 볼 수 있다.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축공식으로는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식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60% 정도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냈다. 미국 공식은 6.7% 이상 되는 관세율이 일률적으로 60%만큼 감축되도록 고안된 것이며, 6.7% 이하의 관세율도 50%~59% 사이의 감축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식은 50%~84%의 감축률을 나타내 미국 공식보다 급격한 관세 감축률을 나타냈다. 특히 캐나다 공식은 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을

표 5-5. 관세 감축공식별 평균 양허관세율의 변화

단위: %

	평균 양허관세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63.8	48.5 (24.0)	25.5 (60.0)	12.4 (80.6)	12.5 (80.4)	24.8 (61.1)	32.1 (49.7)	22.5 (64.7)	24.1 (62.3)
태국	35.4	26.9 (24.0)	14.2 (60.0)	15.3 (56.9)	13.7 (61.4)	24.7 (30.4)	28.8 (18.6)	14.1 (60.3)	24.3 (31.4)
멕시코	42.8	32.6 (24.0)	17.1 (60.0)	16.7 (61.0)	14.5 (66.1)	27.4 (36.0)	32.9 (23.3)	16.3 (61.9)	27.2 (36.6)
칠레	8.9	6.7 (24.0)	3.6 (59.4)	4.4 (50.0)	5.9 (33.9)	7.7 (13.0)	8.2 (7.2)	6.2 (30.7)	6.7 (24.0)
중국	37.9	28.8 (24.0)	15.1 (60.0)	16.4 (56.6)	13.9 (63.3)	25.8 (31.8)	30.5 (19.5)	14.7 (61.1)	25.5 (32.7)
미국	11.1	7.1 (36.0)	4.5 (59.6)	3.6 (67.6)	4.8 (57.0)	7.4 (33.3)	8.5 (23.2)	5.4 (51.4)	6.0 (45.9)
캐나다	21.3	13.6 (36.0)	8.5 (59.8)	3.4 (84.2)	4.6 (78.5)	9.0 (57.9)	11.9 (44.1)	8.2 (61.5)	8.0 (62.6)
EU	22.1	14.2 (36.0)	8.9 (59.9)	7.2 (67.3)	7.9 (64.3)	13.8 (37.5)	16.5 (25.4)	9.2 (58.3)	11.9 (46.0)
호주	4.0	2.6 (36.0)	1.7 (58.9)	1.8 (56.0)	2.9 (28.9)	3.6 (10.0)	3.8 (5.4)	2.8 (30.6)	2.6 (36.0)
일본	41.3	26.4 (36.0)	16.5 (59.9)	6.8 (83.5)	7.9 (80.9)	15.4 (62.7)	20.2 (51.0)	14.9 (63.8)	13.6 (67.0)

주: ()안은 감축률을 나타냄. 검게 표시된 부분은 UR 방식보다 유리하거나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84%까지 확대시켜 캐나다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은 관세가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유사한 관세 감축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관세가 낮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혼합 공식이 스위스 공식보다 높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냈다. 혼합 공식이 낮은 관세율에 대해서도 선형감축을

가져와 스위스 공식보다 감축률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혼합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률은 스위스 공식2의 감축률에 비해 26% 포인트나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칠레, 미국, EU, 캐나다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공식은 대부분의 국가에게 UR 방식보다 높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인 국가가 있다면 스위스 공식2의 경우 호주, 미국, 칠레에게는 UR 방식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며, 혼합 공식은 칠레와 호주에게 UR 방식과 동일한 감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 공식도 호주를 제외한 다른 분석대상 국가에게 UR 방식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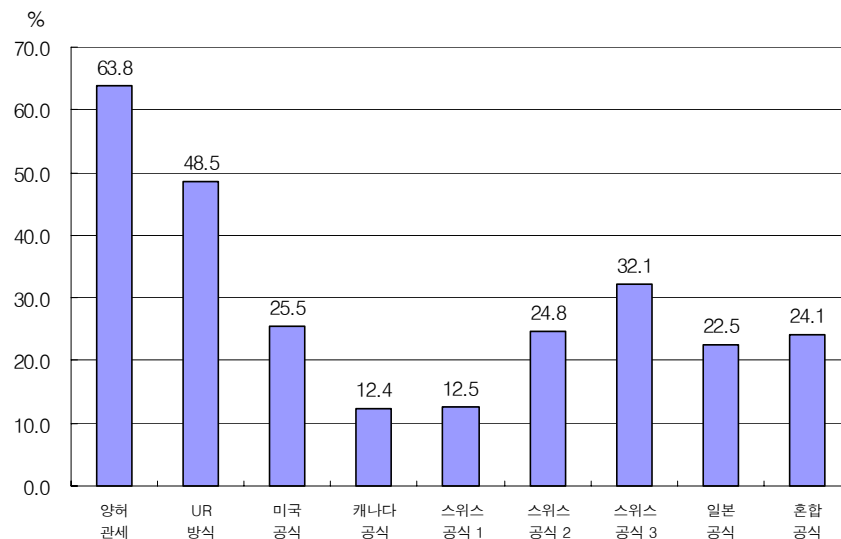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매우 높아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공식은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 일본 공식, 관세율 상한 100%의 혼합 공식 등이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UR 방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스위스 공식3과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스위스 공식2의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관세 감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DDA 협상에서 관세 감축공식을 UR 방식 이외의 것으로 선택한다면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되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4.2. 감축공식별 영향

4.2.1. 한국

우리나라는 DDA 협상에서 관세 감축공식과 관련하여 UR 방식과 같은 신축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관세 감축공식과 감축폭에 있어서 UR 정도의 수준이면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관세 감축폭을 36%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R 방식과 다른 형태로 관세 감축공식이 결정된다고 하면 위에서 설명한 일곱 가지의 감축공식은 모두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관세율 상한을 미국이 제안한 25%의 8배 수준인 200%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관세 감축폭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1. 관세 감축공식별 한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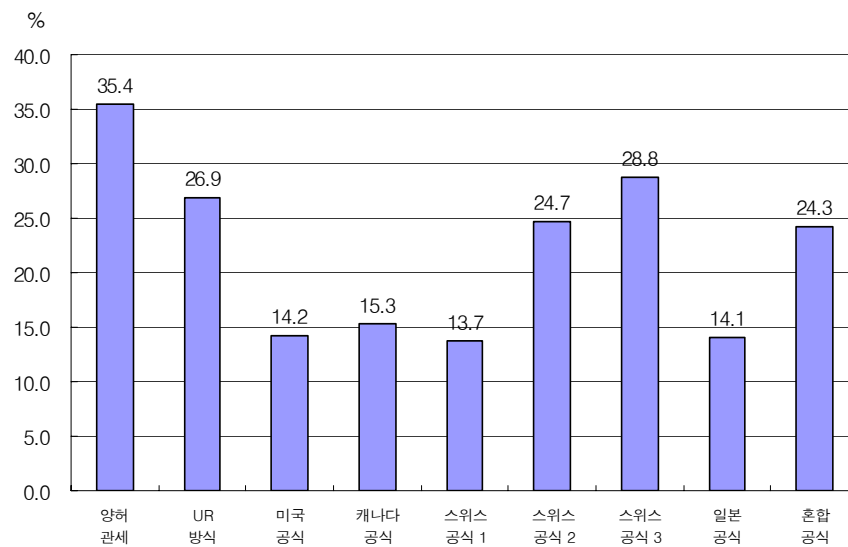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 감축공식은 캐나다 공식과 관세율 상한을 25%로 한 스위스 공식¹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80% 이상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그림 5-1>. 미국 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률은 60%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감축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과 혼합 공식, 그리고 일본 공식은 모두 60%의 비슷한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감축공식을 사용하든 일본을 제외한 모든 분석 대상국가들보다 높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 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관세 감축공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평균 관세율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인 UR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63.8%에서 48.5%로 낮아지며, 가장 불리한 방식인 캐나다 공식을 적용하면 12.4%로 낮아진다. 평균 관세율은 관세율 상한을 100%로 가정한 스위스 공식²와 혼합공식을 적용할 경우 24% 수준으로 감축된다.

4.2.2. 태국

태국은 케언스 그룹 국가의 하나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다. 스위스 공식³을 이용할 경우 태국의 관세 감축률은 18.6%로 UR 방식에 비해 오히려 낮다<그림 5-2>. 스위스 공식²와 혼합 공식을 이용한다고 해도 태국의 관세 감축률은 30%에 불과하다. DDA 협상에서 UR 당시보다 관세 감축폭을 넓히고 감축 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태국은 스위스 공식이나 혼합 공식을 이용할 경우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관세 감축공식은 60%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 태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태국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공식은 스위스 공식³이고, 가장 불리한 방식은 스위스 공식¹이다. 스위스 공식¹의 관세 감축률은 6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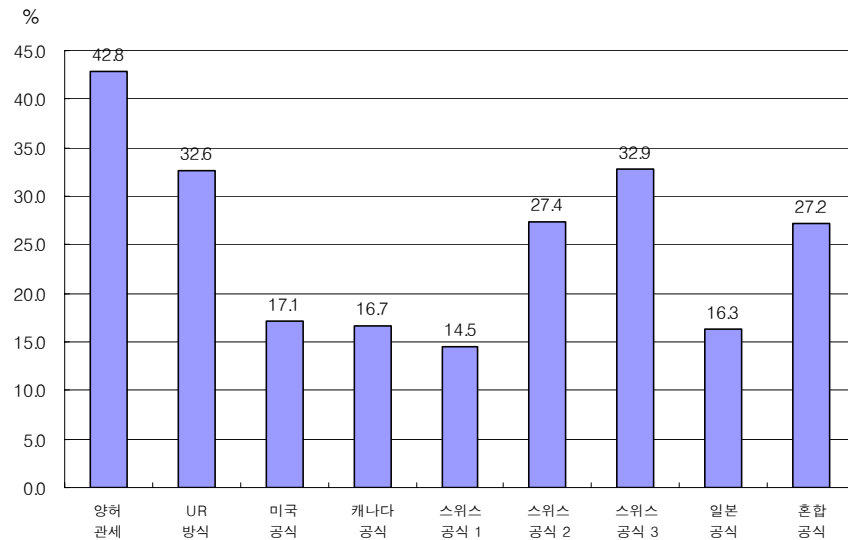
그림 5-2. 관세 감축공식별 태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4.2.3. 멕시코

멕시코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공식은 스위스 공식3이다. 스위스 공식3의 관세 감축률은 23.3%로 UR 방식보다 유리하다<그림 5-3>. 관세율 상한을 100% 이하로 낮출 경우 전반적으로 UR 방식보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불리하다. 그러나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과 혼합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36% 정도로 UR 방식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일본 공식,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1 등은 모두 60% 이상의 감축률을 나타내 UR 방식보다 멕시코에게 불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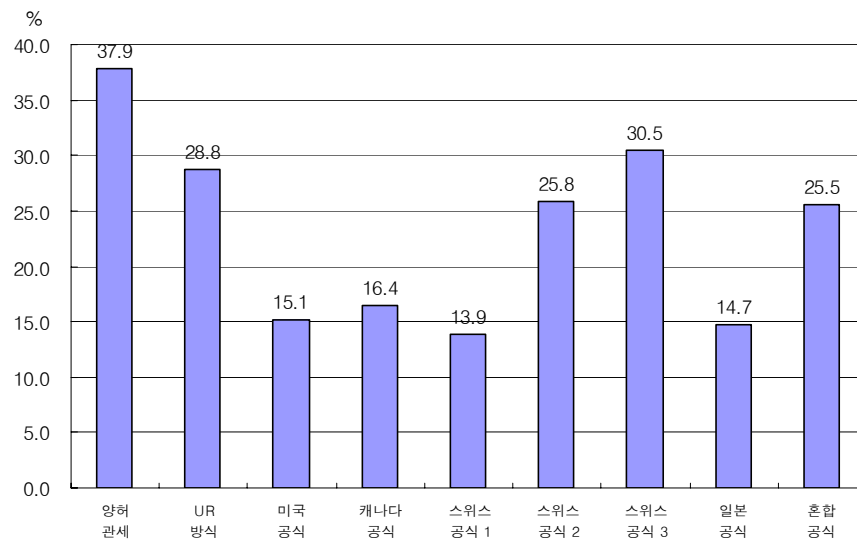
그림 5-3. 관세 감축공식별 멕시코의 평균관세율 변화



4.2.4. 중국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 방식은 스위스 공식3이다. 관세율 상한을 200%까지 허용할 경우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률은 19.5%로 UR 방식의 개발도상국 관세 감축률 24%에 미치지 못한다<그림 5-4>. 관세율 상한을 100%로 제한할 경우인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의 경우 중국의 관세 감축률은 32%으로 DDA 협상에서 UR 방식의 관세 감축공식을 선택하고 감축률을 인상할 경우 UR 방식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과 미국 공식, 일본 공식, 캐나다 공식은 모두 관세 감축률을 60% 정도로 확대하여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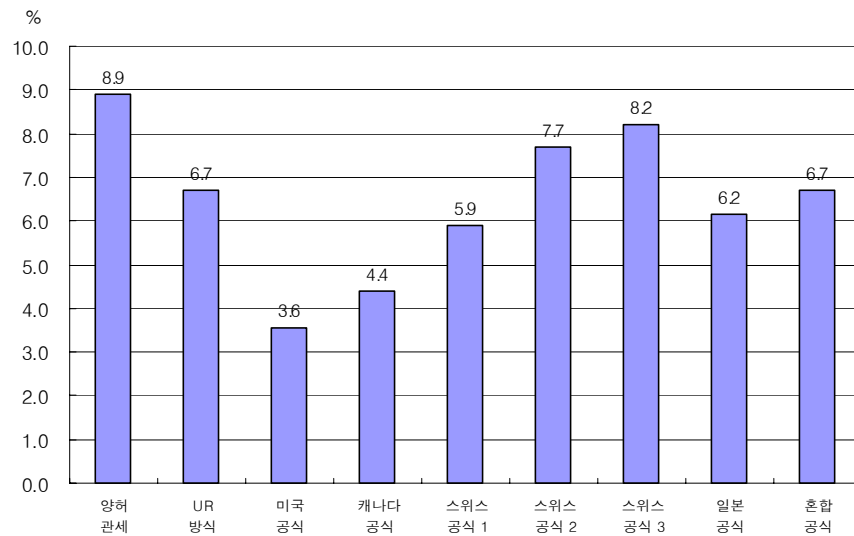
그림 5-4. 관세 감축공식별 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4.2.5. 칠레

칠레의 평균 관세율은 8.9%로 낮은 편이다. 이것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경우는 스위스 공식2와 3이다<그림 5-5>. 혼합 공식은 UR 방식과 동일한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 칠레가 선택할 수 있는 관세 감축공식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스위스 공식3으로 관세 감축률은 7.2%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이라면 혼합 공식이 스위스 공식보다 불리하다.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각각 59.4%와 50%로 높은 편이다. 스위스 공식1과 일본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30%이다. 따라서 칠레는 공식에 의한 감축을 선택할 경우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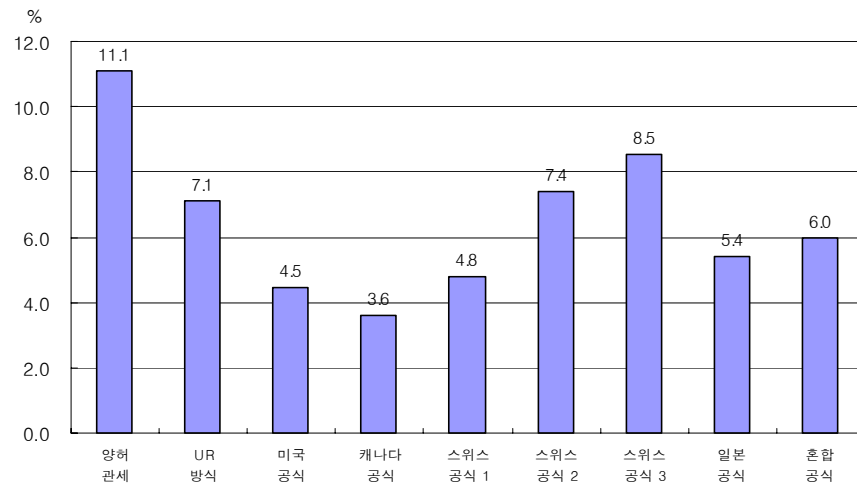
그림 5-5. 관세 감축공식별 칠레의 평균관세율 변화



4.2.6. 미국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미국의 경우에도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이행할 경우,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UR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합 공식은 스위스 공식에 비해 관세 감축률이 높아져 45.9%의 감축률을 나타낸다<그림 5-6>. 관세율 상한을 100%로 동일하게 유지하여도 혼합 공식은 스위스 공식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감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본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51.4%로 스위스 공식1, 캐나다 공식, 미국 공식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축률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시장개방 폭 축소만을 고려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관세 감축공식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한 스위스 공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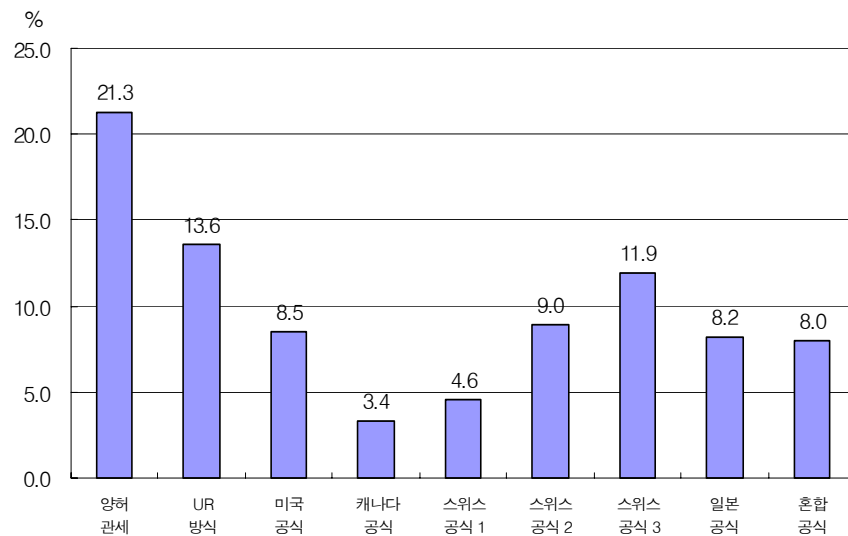
그림 5-6. 관세 감축공식별 미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4.2.7. 캐나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불리하다. 캐나다는 케언스 그룹 국가의 하나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자국의 관세율도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한 스위스 공식3에 있어서도 평균 44%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그림 5-7>. 이러한 관세 감축률은 평균 관세율이 비슷한 EU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그만큼 고율관세 품목이 많다는 것이며, 공식에 의한 감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캐나다의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93개 품목으로 전체의 7.1%이며, 이것은 EU의 3.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캐나다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 감축 공식은 캐나다 공식으로 관세 감축률은 84%에 이른다. 스위스 공식3을 제외한 다른 공식들도 관세 감축률이 모두 60%를 넘어 캐나다가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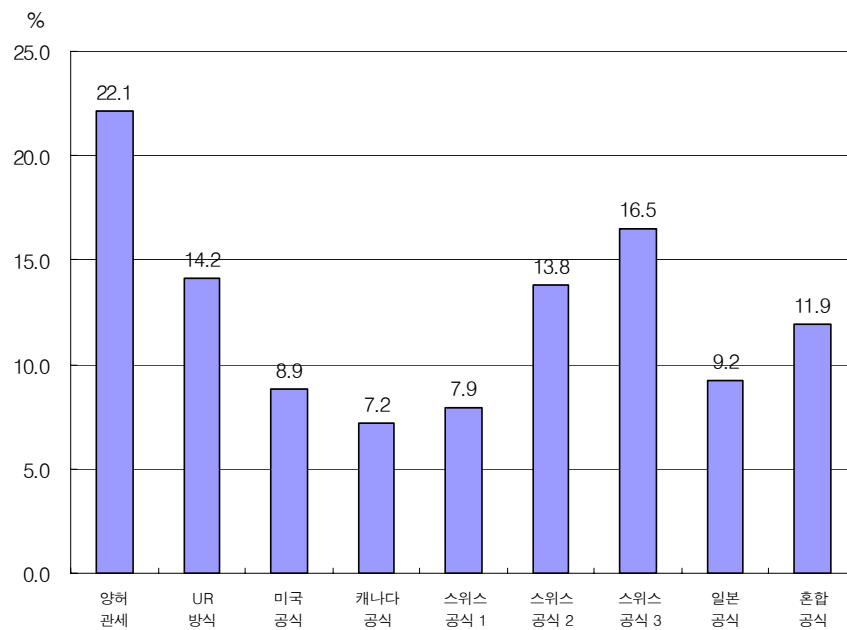
그림 5-7. 관세 감축공식별 캐나다의 평균관세율 변화



4.2.8. 유럽연합

EU에게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하는 스위스 공식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은 UR 방식보다도 낮은 25.4%의 평균 감축률 부담밖에 없다<그림 5-8>.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할 경우에도 감축률은 37.5%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일한 관세율 상한을 가진다고 해도 혼합 공식보다는 스위스 공식이 EU에게 유리하다. 관세율 상한 100%의 혼합공식은 46%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U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 감축 방식은 캐나다 공식으로 관세 감축률은 67.3%이다.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 일본 공식, 미국 공식 등은 60% 정도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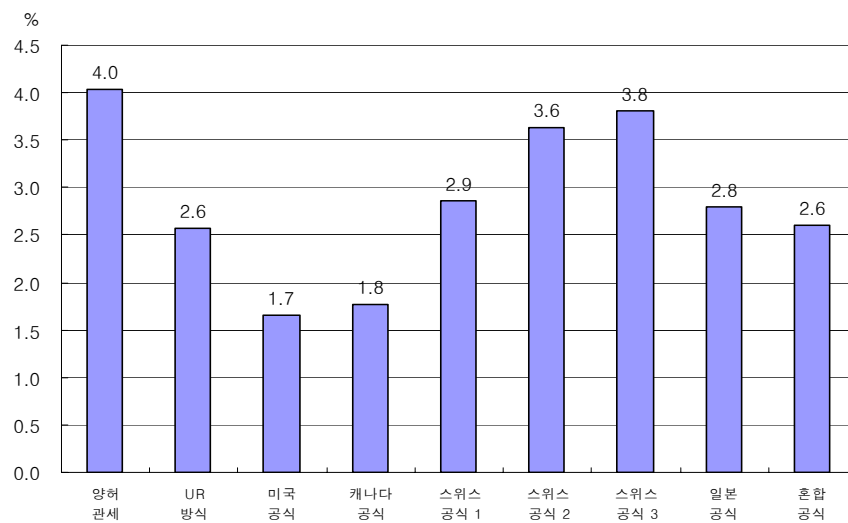
그림 5-8. 관세 감축공식별 EU의 평균관세율 변화



4.2.9. 호주

호주의 평균 관세율은 4%로 분석 대상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공식으로 관세를 감축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다. 10% 이하의 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이 전체의 87%에 달한다. 캐나다 공식과 미국 공식을 제외한 다른 공식은 UR 방식의 감축률 36%보다 낮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그림 5-9>. 미국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58.9%, 캐나다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56%이다. 그러나 호주의 평균관세율이 4%로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폭의 감축률도 호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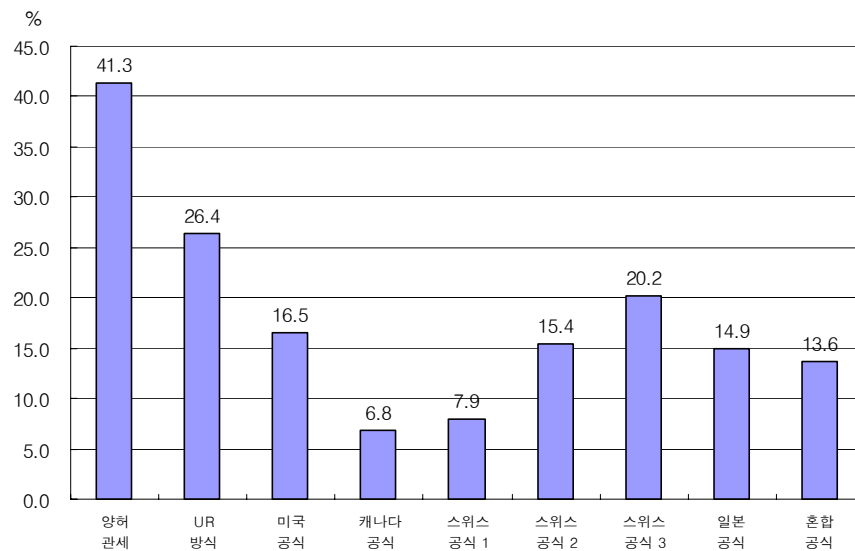
그림 5-9. 관세 감축공식별 호주의 평균관세율 변화



4.2.10.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DDA 협상에서 관세 감축공식과 관련하여서는 UR 방식과 같은 신축적인 공식을 선호하고 있다. UR 방식과 다른 형태로 관세 감축공식이 결정된다고 하면 위에서 설명한 일곱 가지의 공식에 의한 감축공식은 모두 일본에게 불리하다.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한다고 해도 일본의 관세 감축폭은 51%에 달한다<그림 5-10>. 일본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 감축공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캐나다 공식과 관세율 상한을 25%로 한 스위스 공식1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80% 이상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며 우리나라보다 감축률이 높다. 미국 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률은 60%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감축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과 혼합공식은 각각 62.7%와 67%의 감축률을 가져다 준다.

그림 5-10. 관세 감축공식별 일본의 평균관세율 변화



일본도 혼합 공식이 스위스 공식보다 불리하나 큰 차이는 없다. 일본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률은 63.8%이다. 따라서 일본이 DDA 협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 감축공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4.3. 시사점

일반적으로 관세정책은 외국의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이나 양자간 무역협상에서도 관세협상은 점점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WTO/DDA 농산물협상 가운데 관세협상 분야에서는 관세 감축의 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감축폭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축폭과 감축률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UR 협상에서 인정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함으로써 비롯된 고율관세 문제, 회원국 간 및 품목 간 관세격차 문제, 보호무역적 측면이 강한 누진관세 체계의 문제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공식의 경우 이용하는 계수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매우 불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이며, 비슷한 나라는 EU, 캐나다, 태국, 중국, 멕시코, 칠레 등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 상한을 100% 정도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나라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 관세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품목(전체의 X%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상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감축공식의 선택은 자국의 감축률 최소화라는 요소 이외에도 수입국의 시장개방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된 연구결과로 각국의 관세 감축공식 선호도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현재 진행 중인 WTO/DDA 농업협상 동향을 종합할 때 급진적인 관세 감축공식을 주장할 국가들이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농산물 수입시장을 겨냥하여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관세구조의 변화

WTO/DDA 농업협상 가운데 관세협상 분야에서 관세 감축의 방법과 폭이 쟁점이 되고 있다. 관세 분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감축폭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관세 감축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감축폭과 감축공식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와 UR에서 채택된 관세 감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이다.

공식에 의해서 관세를 감축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된다는 것이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예, FAO 2000). 여기서는 관세격차, 고율관세, 누진관세의 문제점이 각기 다른 공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에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1. 누진관세의 변화

농산물을 곡물, 축산물, 채소, 과일로 나누고 그 조제품(가공품)과의 관세율 차이로 관세의 누진성을 분석하였다. 관세 감축방식은 누진관세 체계를 완화하는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육류와 그 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분석 대상국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등 6개국이었다. 그러나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을 제외한 다른 3개국(태국, 중국, 캐나다)의 누진성은 미미하였다. 반면 미국, EU, 멕시코는 역관세를 나타냈으며, 칠레는 원료와 가공품 사이에 관세율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누진관세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실행할 경우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이 누진성이 심한 경우에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성을 크게 완화시켰다. 육류와 육가공품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한국이 31.6% 포인트, 일본이 25.1% 포인트에서 4.8% 포인트와 2.3%포인트로 축소되었다(스위스 공식1의 경우, 표 5-6). UR 방식과 다른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관세의 완화 효과가 컸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스위스 공식과 혼합공식은 관세의 누진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따라서 육류와 육가공품 사이에 존재하는 누진관세의 경우 공식에 의한 감축이 반드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실류와 과실 조제품 사이의 누진관세는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8개국에서 나타났다. 과실류와 그 조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관세의 누진성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의 경우 두 품목 사이의 관세율 차이가 12.5% 포인트로 가장 높았으며,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관세율 차이는 4%까지 낮아진다(스위스 공식1과 일본 공식의 경우, 표 5-7). 관세의 역누진성(역관세)도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크게 개선된다. UR 방식보다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더 큰 누진관세 완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과실류와 과실 조제품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41.8% 포인트로 심한 역관세를 나타내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1%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동일하게 할 경우인 스위스 공식2와 혼합공식을 비교하면 혼합 공식의 누진관세 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6. 관세 감축공식별 육류(2류)와 육류조제품(16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평균 세율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1	스위스 공식2	스위스 공식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2류	23.0	17.5	9.2	11.5	11.7	18.5	20.5	10.4	17.3
	16류	54.6	41.5	21.9	17.9	16.5	34.1	41.9	19.9	33.9
	관세차	31.6	24.0	12.7	6.4	4.8	15.6	21.4	9.5	16.6
태국	2류	34.7	26.4	13.9	16.6	14.4	25.6	29.4	13.9	25.4
	16류	35.2	26.7	14.1	17.1	14.5	25.8	29.8	14.1	25.6
	관세차	0.5	0.3	0.2	0.5	0.1	0.2	0.4	0.2	0.2
멕시코	2류	82.1	62.4	32.8	17.8	16.5	36.7	48.6	28.1	36.4
	16류	45.0	34.2	18.0	20.0	16.1	31.0	36.7	17.0	31.0
	관세차	-37.1	-28.2	-14.8	2.2	-0.4	-5.7	-11.9	-11.1	-5.4
칠레	2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16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관세차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2류	37.5	28.5	15.0	18.8	15.0	27.2	31.5	14.8	27.2
	16류	40.0	30.4	16.0	20.0	15.4	28.6	33.3	15.5	28.6
	관세차	2.5	1.9	1.0	1.2	0.4	1.4	1.8	0.7	1.4
미국	2류	4.7	3.0	2.0	1.9	3.1	4.1	4.4	3.0	3.0
	16류	2.8	1.8	1.2	0.7	2.4	2.7	2.7	2.6	1.8
	관세차	-1.9	-1.2	-0.8	-1.2	-0.7	-1.4	-1.7	-0.4	-1.2
캐나다	2류	47.2	30.2	18.9	5.9	7.0	17.3	24.8	16.1	16.6
	16류	49.5	31.7	19.8	6.7	8.3	18.9	26.4	17.4	17.6
	관세차	2.3	1.5	0.9	0.8	1.3	1.6	1.6	1.3	1.0
EU	2류	34.1	21.8	13.6	11.1	11.0	20.7	25.2	13.2	18.6
	16류	23.7	15.1	9.5	9.4	10.2	16.7	19.2	10.4	13.8
	관세차	-10.4	-6.7	-4.1	-1.7	-0.8	-4.0	-6.0	-2.8	-4.8
호주	2류	0.1	0.0	0.0	0.0	0.1	0.1	0.1	0.1	0.0
	16류	10.2	6.5	4.1	5.1	7.1	9.2	9.7	6.4	6.5
	관세차	10.1	6.5	4.1	5.1	7.0	9.1	9.6	6.3	6.5
일본	2류	24.2	15.5	9.7	6.6	7.4	13.9	17.2	9.6	12.7
	16류	49.3	31.6	19.7	8.9	9.7	19.0	25.0	17.8	16.8
	관세차	25.1	16.1	10.0	2.3	2.3	5.1	7.8	8.2	4.1

표 5-7. 관세 감축공식별 과실(8류)과 과실조제품(20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평균 세율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1	스위스 공식2	스위스 공식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8류	85.4	64.9	34.1	18.5	16.5	35.5	46.2	29.1	35.3
	20류	43.6	33.1	17.4	18.2	15.6	29.8	35.4	16.6	29.7
	관세차	-41.8	-31.8	-16.7	-0.3	-0.9	-5.7	-10.8	-12.5	-5.6
태국	8류	39.2	29.8	15.7	19.3	15.2	28.1	32.7	15.3	28.0
	20류	32.3	24.6	12.9	16.2	14.0	24.4	27.8	13.2	24.2
	관세차	-6.9	-5.2	-2.8	-3.1	-1.2	-3.7	-4.9	-2.1	-3.8
멕시코	7류	37.8	28.7	15.1	18.1	15.0	27.3	31.7	14.8	27.2
	20류	39.0	29.7	15.6	18.7	15.2	28.0	32.6	15.2	27.9
	관세차	1.2	1.0	0.5	0.6	0.2	0.7	0.9	0.4	0.7
칠레	7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20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관세차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8류	37.5	28.5	15.0	18.5	14.8	27.1	31.4	14.8	26.9
	20류	40.0	30.4	16.0	20.0	15.4	28.6	33.3	15.5	28.6
	관세차	2.5	1.9	1.0	1.5	0.6	1.5	1.9	0.7	1.7
미국	8류	4.3	2.7	1.8	1.7	2.9	3.8	4.0	2.8	2.7
	20류	8.8	5.7	3.6	3.1	4.8	6.8	7.5	5.0	5.2
	관세차	4.5	3.0	1.8	1.4	1.9	3.0	3.5	2.2	2.5
캐나다	8류	1.8	1.2	0.8	0.6	1.4	1.7	1.7	1.5	1.2
	20류	6.1	3.9	2.4	2.9	4.4	5.5	5.8	4.1	3.9
	관세차	4.3	2.7	1.6	2.3	3.0	3.8	4.1	2.6	2.7
EU	8류	13.6	8.7	5.4	5.9	7.0	10.5	11.7	6.9	8.4
	20류	26.1	16.7	10.4	10.7	11.3	18.5	21.2	11.3	15.3
	관세차	12.5	8.0	5.0	4.8	4.3	8.0	9.5	4.4	6.9
호주	8류	2.4	1.5	1.0	0.9	1.9	2.2	2.3	2.0	1.6
	20류	8.3	5.3	3.4	4.1	6.0	7.6	7.9	5.9	5.3
	관세차	5.9	3.8	2.4	3.2	4.1	5.4	5.6	3.9	3.7
일본	8류	9.1	5.8	3.7	4.3	6.0	8.0	8.5	5.7	5.8
	20류	16.6	10.6	6.7	8.3	9.5	13.9	15.1	8.5	10.6
	관세차	7.5	4.8	3.0	4.0	3.5	5.9	6.6	2.8	4.8

예를 들어 EU의 두 품목간 관세율 차이를 비교하면 스위스 공식2는 8% 포인트, 혼합공식은 6.9% 포인트이다.

채소류와 채소 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EU,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등 5개국이며, 역관세를 나타내는 국가는 한국, 일본, 태국, 멕시코 등 4개국이다. 칠레는 두 품목간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두 품목 사이에 존재하는 누진관세는 UR 방식보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에 의해서 더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일본 공식과 스위스 공식2와 3이 UR 방식보다 누진관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작았다<표 5-8>. 한국, 일본, 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두 품목간의 역관세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으로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두 품목간의 관세율 차이(-81.8% 포인트)는 UR 공식에 의해서 62.2% 포인트로 축소되나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0.7%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

곡물류와 곡물 조제품 사이에는 역관세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다. 분석 대상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하여 7개국이 역관세를 보였다. 누진관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호주, 미국, 캐나다 등 3개국뿐이다. 곡물류의 경우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관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9>. 미국의 곡물류와 그 조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관세율 차이는 14.3% 포인트이며, 그 차이는 UR 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에 의해 9.1% 포인트로 축소되나 스위스 공식2와 3은 그 차이를 10.4% 포인트와 11.9% 포인트로 축소시키는 데에 그쳤다. 한국, 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관세는 UR 방식보다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더 많이 개선되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다.

표 5-8. 관세 감축공식별 채소(7류)와 채소조제품(20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평균 세율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 국	7류	125.4	95.3	50.2	16.6	16.3	37.3	52.1	41.1	37.0
	20류	43.6	33.1	17.4	18.2	15.6	29.8	35.4	16.6	29.7
	관세차	-81.8	-62.2	-32.8	1.6	-0.7	-7.5	-16.7	-24.5	-7.3
태 국	7류	46.9	35.6	18.7	19.8	15.8	30.7	36.8	17.6	30.7
	20류	32.3	24.6	12.9	16.2	14.0	24.4	27.8	13.2	24.2
	관세차	-14.6	-11.0	-5.8	-3.6	-1.8	-6.3	-9.0	-4.4	-6.5
멕시코	7류	40.3	30.6	16.1	17.8	14.8	27.4	32.2	15.6	27.3
	20류	39.0	29.7	15.6	18.7	15.2	28.0	32.6	15.2	27.9
	관세차	-1.3	-0.9	-0.5	0.9	0.4	0.6	0.4	-0.4	0.6
칠레	7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20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관세차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 국	7류	34.8	26.4	13.9	17.4	14.1	25.3	29.3	13.9	25.0
	20류	40.0	30.4	16.0	20.0	15.4	28.6	33.3	15.5	28.6
	관세차	5.2	4.0	2.1	2.6	1.3	3.3	4.0	1.6	3.6
미 국	7류	5.9	3.8	2.4	2.4	4.1	5.3	5.6	4.0	3.8
	20류	8.8	5.7	3.6	3.1	4.8	6.8	7.5	5.0	5.2
	관세차	2.9	1.9	1.2	0.7	0.7	1.5	1.9	1.0	1.4
캐 나 다	7류	3.5	2.2	1.4	1.5	2.6	3.2	3.3	2.5	2.2
	20류	6.1	3.9	2.4	2.9	4.4	5.5	5.8	4.1	3.9
	관세차	2.6	1.7	1.0	1.4	1.8	2.3	2.5	1.6	1.7
E U	7류	13.5	8.6	5.4	5.0	6.6	9.9	11.2	6.9	7.8
	20류	26.1	16.7	10.4	10.7	11.3	18.5	21.2	11.3	15.3
	관세차	12.6	8.1	5.0	5.7	4.7	8.6	10.0	4.4	7.5
호 주	7류	4.0	2.5	1.7	1.5	2.9	3.6	3.8	2.9	2.7
	20류	8.3	5.3	3.4	4.1	6.0	7.6	7.9	5.9	5.3
	관세차	4.3	2.8	1.7	2.6	3.1	4.0	4.1	3.0	2.6
일 본	7류	38.5	24.7	15.5	3.3	5.4	10.1	14.2	14.1	8.7
	20류	16.6	10.6	6.7	8.3	9.5	13.9	15.1	8.5	10.6
	관세차	-21.9	-14.1	-8.8	5.0	4.1	3.8	0.9	-5.6	1.9

표 5-9. 관세 감축공식별 곡물(10류)과 곡물조제품(19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평균 세율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 국	10류	218.0	165.7	87.2	12.2	14.7	43.0	69.0	68.6	42.4
	19류	33.7	25.6	13.5	14.4	13.3	24.0	28.0	13.6	23.4
	관세차	-184.3	-140.1	-73.7	2.2	-1.4	-19.0	-41.0	-55.0	-19.0
태 국	10류	38.3	29.1	15.3	15.8	14.6	26.8	31.4	15.0	26.3
	19류	29.9	22.7	12.0	14.9	13.2	22.6	25.7	12.5	22.1
	관세차	-8.4	-6.4	-3.3	-0.9	-1.4	-4.2	-5.7	-2.5	-4.2
멕시코	10류	54.7	41.6	21.9	18.2	15.8	32.3	40.0	19.9	32.2
	19류	39.4	30.0	15.8	17.9	15.0	27.6	32.3	15.3	27.5
	관세차	-15.3	-11.6	-6.1	-0.3	-0.8	-4.7	-7.7	-4.6	-4.7
칠 레	10류	7.6	5.8	3.0	3.8	5.8	7.1	7.3	5.8	5.8
	19류	6.0	4.6	2.5	3.0	4.8	5.7	5.8	5.3	4.6
	관세차	-1.6	-0.8	-0.5	-0.8	-1.0	-1.4	-1.5	-0.5	-0.8
중 국	10류	74.2	56.4	29.7	20.0	17.8	40.2	51.7	25.7	40.2
	19	39.3	29.9	15.7	19.6	15.3	28.2	32.8	15.3	28.1
	관세차	-34.9	-26.5	-14.0	-0.4	-2.5	-12.0	-18.9	-10.4	-12.1
미 국	10류	2.1	1.4	0.9	0.5	1.7	2.0	2.1	1.8	1.4
	19류	16.4	10.5	6.6	6.9	7.8	12.4	14.0	7.8	10.1
	관세차	14.3	9.1	5.7	6.4	6.1	10.4	11.9	6.0	8.7
캐 나 다	10류	10.1	6.4	4.1	2.9	3.0	6.1	7.5	3.9	5.7
	219류	19.1	12.2	7.7	3.7	6.0	9.7	11.9	8.6	7.9
	관세차	9.0	5.8	3.6	0.8	3.0	3.6	4.4	4.7	2.2
E U	10류	43.5	27.8	17.4	12.0	11.9	25.0	31.4	15.9	23.7
	19류	19.5	12.5	7.8	9.7	10.3	15.8	17.4	9.4	12.5
	관세차	-24.0	-15.3	-9.6	-2.3	-1.6	-9.2	-14.0	-6.5	-11.2
호 주	10류	0.8	0.5	0.4	0.0	0.7	0.7	0.7	0.8	0.5
	19류	6.2	4.0	2.5	3.0	4.8	5.8	6.0	5.0	4.0
	관세차	5.4	3.5	2.1	3.0	4.1	5.1	5.3	4.2	3.5
일 본	10류	166.3	106.4	66.5	6.8	8.3	24.8	40.7	51.7	24.3
	19류	85.5	54.7	34.2	12.3	13.3	28.0	37.9	29.1	25.4
	관세차	-80.8	-51.7	-32.3	5.5	5.0	3.2	-2.8	-22.6	0.9

누진관세나 역관세나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5.2. 고율관세의 변화

기본관세가 세 자릿수를 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양허관세는 수백%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율관세를 100%가 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국가 10개국 가운데 호주와 칠레는 고율관세 품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으로 433.3%이다. 다음으로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342.2%이며, 캐나다와 미국도 2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지적인 고율관세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공식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감축 방안이 논의된 점을 고려하여 공식별 고율관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감축방식별 관세 감축률은 캐나다 공식과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1이 가장 높았다<표 5-10>. 캐나다 공식과 스위스 공식1은 적게 감축되는 국가의 감축률이 83%이고 많이 감축되는 국가의 감축률은 95%로 두 가지 방식이 비슷한 감축률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감축률을 나타내는 공식은 스위스 공식3으로 낮게는 38%에서 높게는 70%까지의 감축률을 보인다. 일본 공식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68% 내외의 감축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 상한 100%의 스위스 공식과 혼합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55%~82%로 동일한 감축률을 나타낸다. 이것은 혼합 공식에 사용된 일정률 감축 계수가 낮은 관세율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 평균 관세율은 433%이다. 고율관세 품목에 공식(스위스 공식1, 캐나다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 많게는 95%의 감축률을 나타낸다. 캐나다 공식과 관세율 상한 25%의

표 5-10. 감축공식별 평균 고율관세의 변화

단위: %

	고율관세 평균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433.3	329.3 (24.0)	173.3 (60.0)	20.0 (95.4)	23.2 (94.6)	77.1 (82.2)	127.7 (70.5)	133.5 (69.2)	77.1 (82.2)
태국	159.8	121.5 (24.0)	63.9 (60.0)	20.0 (87.5)	21.5 (86.5)	60.9 (61.9)	87.9 (45.0)	51.4 (67.8)	60.9 (61.9)
멕시코	173.7	132.0 (24.0)	69.5 (60.0)	20.0 (88.5)	21.7 (87.5)	62.3 (64.1)	91.2 (47.5)	55.6 (68.0)	62.3 (64.1)
중국	121.0	92.0 (24.0)	48.4 (60.0)	20.0 (83.5)	20.7 (82.9)	54.6 (54.9)	75.2 (37.9)	39.8 (67.1)	54.6 (54.9)
미국	204.6	131.0 (36.0)	81.8 (60.0)	20.0 (90.2)	21.8 (89.3)	63.9 (68.7)	95.7 (53.2)	64.9 (68.3)	63.9 (68.7)
캐나다	230.4	147.4 (36.0)	92.2 (60.0)	20.0 (91.3)	22.4 (90.3)	69.0 (70.1)	105.7 (54.1)	72.6 (68.5)	69.0 (70.1)
EU	186.9	119.6 (36.0)	74.8 (60.0)	20.0 (89.3)	21.7 (88.4)	63.1 (66.3)	93.2 (50.1)	59.6 (68.1)	63.1 (66.3)
일본	342.2	219.0 (36.0)	136.9 (60.0)	20.0 (94.2)	22.7 (93.4)	72.5 (78.8)	116.1 (66.1)	106.2 (69.0)	72.5 (78.8)

주: 1. 고율 관세는 100% 이상의 관세로 정의하였음.

2. ()는 감축률을 나타냄.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20%로 낮아진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감축공식인 것이다. 공식에 의한 감축공식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은 60%의 감축률을 나타내는 미국 공식이다. 관세율 상한을 200%로 설정한다고 해도 스위스 공식은 미국 공식에 비해 불리하다. 분석대상 국가들 모두가 고율관세 품목과 관련해서는 공식에 의한 감축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R 농업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다.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사용한 방식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관세로 인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요한 품목 또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 비관세 장벽(수입허가, 수입 쿼터 등)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러한 중요한 품목들은 UR 협상 이후에도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UR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감축공식이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많은 나라들이 수입금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분석 대상국가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를 나타내는 것은 일본의 쌀 1,416%(중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으로 환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로 계산되었다<표 5-11>. 우리나라는 전분류(澱粉類)의 관세율이 887%로 가장 높다. 캐나다와 EU도 4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있다. 미국이 담배에 부과하는 관세는 350%에 달하는 것도 있다. 반면 호주와 칠레는 최고율 관세가 30%에 머물러 매우 낮은 양허관세율을 나타낸다.

높은 관세율은 더 많이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된 공식들을 적용하면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캐나다 공식을 적용하면 20%가 되어 97.7%의 감축률을 나타낸다.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887%의 관세율은 24.3%가 되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허용할 경우인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에서 감축이 이루어진 뒤에 남은 관세율은 90%로 감축률이 90%에 달한다. 미국 공식과 일본 공식은 관세 감축률을 60%에 머무르게 하여 다른 공식보다는 유리하다.

일본의 쌀에 대한 관세율은 캐나다 공식을 적용하면 20%가 되어 99%의 감축률을 나타낸다. 다른 공식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감축률을 보인다. 미국의 최고 관세도 캐나다 공식을 적용할 경우 94%까지 감축된다. 미국에게 최소 감축률을 나타내는 감축방식은 미국 공식으로 350%의 관세가 140%로 낮아진다. 최고 관세율도 30%에 불과한 호주와 칠레는 최대한 감축이 이루어지는 공식을 적용하여도 13%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어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1. 최고관세의 변화

단위: %

		최고 관세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세율	887.4	674.4	355.0	20.0	24.3	89.9	163.2	269.7	89.9
	감축률		24.0	60.0	97.7	97.3	89.9	81.6	69.6	89.9
태국	세율	226	171.8	90.4	20.0	22.5	69.3	106.1	71.3	69.3
	감축률		24.0	60.0	91.2	90.0	69.3	53.1	68.5	69.3
멕시코	세율	254	193.0	101.6	20.0	22.8	71.8	111.9	79.7	71.8
	감축률		24.0	60.0	92.1	91.0	71.8	55.9	68.6	71.8
중국	세율	135.0	102.6	54.0	20.0	21.1	57.4	80.6	44.0	57.4
	감축률		24.0	60.0	85.2	84.4	57.4	40.3	67.4	57.4
칠레	세율	31.5	23.9	12.6	15.8	13.9	24.0	27.2	13.0	23.9
	감축률		24.0	60.0	50.0	55.8	24.0	13.6	58.9	24.0
미국	세율	350	224.0	140.0	20.0	23.3	77.8	127.3	108.5	77.8
	감축률		36.0	60.0	94.3	93.3	77.8	63.6	69.0	77.8
캐나다	세율	465.8	298.1	186.3	20.0	23.7	82.3	139.9	143.2	82.3
	감축률		36.0	60.0	95.7	94.9	82.3	70.0	69.2	82.3
EU	세율	462.7	296.1	185.1	20.0	23.7	82.2	139.6	142.3	82.2
	감축률		36.0	60.0	95.7	94.9	82.2	69.8	69.2	82.2
호주	세율	31.3	20.0	12.5	15.7	13.9	23.8	27.1	12.9	20.0
	감축률		36.0	60.0	50.0	55.6	23.8	13.5	58.8	36.0
일본	세율	1416.6	906.6	566.6	20.0	24.6	93.4	175.3	428.5	93.4
	감축률		36.0	60.0	98.6	98.3	93.4	87.6	69.8	93.4

감축공식별 최고관세율의 변화는 호주와 칠레를 제외한 분석 대상 국가들 모두에게 60% 이상의 감축률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감한 품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축공식으로 볼 수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특히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한 품목이 많은 농산물 수입국들(한국, 일본 등)에게 불리하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

축은 관세화에 의한 시장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DDA 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5.3. 관세격차의 변화

관세격차는 국가 내에서 품목간 또는 품목군 간에 관세율의 차이를 일컫기도 하며 국가 간의 관세율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004년 기준 양허관세의 품목간 관세율 격차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138이다. UR 방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표준편차는 104.9로 축소된다<표 5-12>. 그러나 다른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할 경우 많게는 5.5로 축소된다(스위스 공식1의 경우).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한 경우에도 표준편차는 33.9로 관세격차는 UR 방식에 비해 크게 축소된다. 관세격차 축소에 있어서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2. 감축공식에 따른 평균 양허관세 표준편차의 변화

	표준 편차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138.0	104.9	55.2	6.5	5.5	19.7	33.9	41.5	20.1
태국	23.4	17.8	9.4	4.6	3.3	9.3	13.2	7.1	9.5
멕시코	36.0	27.3	14.4	4.4	3.2	10.9	16.9	10.8	11.2
중국	23.0	17.5	9.2	5.7	3.9	10.4	14.3	7.1	10.7
칠레	8.1	6.1	3.2	4.0	2.9	5.8	6.8	2.4	6.1
미국	29.8	19.0	11.9	5.5	5.1	11.0	15.0	9.5	10.6
캐나다	60.6	38.8	24.2	5.8	6.2	17.9	27.2	18.8	17.9
EU	38.8	24.8	15.5	7.1	6.3	15.0	20.6	12.2	14.9
호주	5.5	3.5	2.2	2.9	3.3	4.7	5.0	3.0	3.5
일본	115.3	73.8	46.1	7.0	6.8	20.3	32.7	35.0	20.4

일본, 캐나다 등 평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한국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칠레와 호주 등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오히려 관세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농산물 관세 표준편차는 5.5이나 스위스 공식2와 3을 적용하면 표준편차가 5.0과 4.7로 UR 방식의 3.5보다 높게 나타난다. 관세율 상한을 낮게 정한 스위스 공식1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관세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 사이의 격차는 캐나다 공식을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13>. 대부분의 경우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관세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율이 낮고 단일관세에 접근하는 관세구조를 보이는 호주와 칠레에 있어서는 관세율 상한을 높게(100% 또는 200% 등) 설정한 공식을 이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관세격차가 컸다. 한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과 최고관세율의 격차는 823.6% 포인트이며 캐나다 공식을 적용하면 이 격차는 7.6% 포인트로 축소된다. 일본의 경우 캐나다 공식을 적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과 최고관세율 사이의 관세격차는 1,375.3% 포인트에서 13.2% 포인트까지 축소될 수 있다.

분석 대상국가들 가운데 관세율 평균이 가장 높은 한국과 가장 낮은 호주의 관세율 차이는 59.8% 포인트이다. 이러한 관세율 격차는 UR 방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면 45.9% 포인트로 낮아진다. 공식에 의해 감축할 경우 이러한 격차는 9.6% 포인트까지 축소된다. 관세율 상한을 낮게 정하는 스위스 공식과 캐나다 공식은 서로 비슷한 정도의 관세격차 해소 효과를 나타냈다. 최고관세율의 국별 차이는 일본과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다(1,385.3% 포인트). UR 방식을 이용하면 양국의 최고 세율 격차는 886.6% 포인트로 축소되고 캐나다

표 5-13. 감축공식에 의한 평균 양허관세와 최고세율 차이의 변화
단위: %

	최고관세 와 평균의 차이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823.6	626.0	329.4	7.6	11.8	65.1	131.2	247.2	65.8
태국	190.6	144.8	76.2	4.7	8.8	44.7	77.3	57.2	45.0
멕시코	211.2	160.5	84.5	3.3	8.2	44.3	79.0	63.4	44.6
중국	97.1	73.8	38.9	3.6	7.2	31.6	50.1	29.3	32.0
칠레	22.6	17.2	9.0	11.3	7.4	15.8	18.7	6.8	17.2
미국	338.9	216.9	135.5	16.4	18.6	70.4	118.8	103.1	71.8
캐나다	444.5	284.5	177.8	16.6	19.2	73.4	128.0	135.0	74.3
EU	440.6	282.0	176.2	12.8	15.8	68.4	123.2	133.1	70.3
호주	27.3	17.5	10.9	13.9	11.0	20.2	23.3	10.1	17.4
일본	1375.3	880.2	550.1	13.2	16.7	78.0	155.0	413.6	79.8

공식을 이용하면 4.4% 포인트까지 축소된다. 일본 공식과 미국 공식은 최고관세율 격차 해소 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4. 쿼터량 초과에 대한 관세

UR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인정함에 따라 수입금지적 고율관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고율관세를 적용할 경우 현재 교역되고 있는 농산물도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율관세의 적용은 현재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역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일정량의 쿼터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국내 소비량의 3%를 최소시장접근 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여기에는 관세상당치가 아닌 낮은 관세(기본관세 또는 실행관세 등)를 부과하여야 한다. MMA는 이행기간 중

5%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국내 소비량의 3%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수입량을 현행시장접근 물량(Current Market Access, CMA)으로 설정하고 낮은 관세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역을 관세할당 또는 관세율쿼터(Tariff Rate Quota, TRQ)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MMA 물량으로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CMA 물량으로 콩, 옥수수 등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TRQ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보통 낮게 설정되어 있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TRQ 품목에 있어서 쿼터량을 초과한(Out Quota)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UR 협상 타결 이전에는 여러 나라들이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중요한 품목에 관세상당치라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TRQ 품목은 각국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들이며 여기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TRQ 품목의 쿼터량 이외의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국가 10개국 가운데 칠레는 TRQ 품목이 없었으며, 중국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외하였다. TRQ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

표 5-14. 국별 TRQ 현황

	품목수	최저세율	최고세율
한국	176	9	887.4
태국	55	36	226
멕시코	68	22.5	254
미국	367	0	350
캐나다	123	0	82.6
EU	188	0	276.8
호주	9	7.5	20
일본	123	16.5	1416.6

주: 자료의 누락으로 미국 4개, EU 1개 품목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한국의 경우 쌀에 대한 14개 품목이 제외되었음.

국으로 367개 품목이 있다<표 5-14>. 다음으로는 EU, 한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TRQ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RQ 품목의 쿼터 물량 이외의 수입에 적용되는 최고 관세율은 각국의 최고세율과 비슷하다. 쿼터량 이외의 물량이 수입되는 TRQ 품목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쿼터량 초과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평균 302.1%로 가장 높다<표 5-15>. 다음은 일본 288.1%, 멕시코 147.9%, 태국 92.5% 등의 순이다. 선진국들의 쿼터량 초과 수입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낮다. 캐나다는 쿼터량 초과 수입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4.2%에 불과하다. 쿼터량 초과 수입에 대한 관세도 양허관세의 경우와 같이 선진국은 낮고 개발도상국은 높은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관세 감축 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는 TRQ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공식과 스위스 공식1이 가장 불리하다. 캐나다 공식과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 302%는 20%으로 감축된다.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UR 방식이 TRQ 품목에 있어

표 5-15. TRQ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 변화

단위: %

	양허 세율	UR 방식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일본 공식	혼합 공식
한국	302.1	229.6	120.8	18.9	20.5	61.3	96.8	94.1	61.1
태국	92.5	70.3	37.0	20.0	19.0	45.5	60.3	31.2	45.5
멕시코	147.9	112.4	59.2	19.9	20.8	56.9	81.2	47.9	56.9
미국	32.9	21.1	13.2	9.9	10.6	19.1	23.2	13.2	16.8
캐나다	4.2	2.7	1.8	1.3	2.9	3.6	3.8	3.2	2.6
EU	55.6	35.6	22.2	15.7	15.0	31.3	39.4	20.1	29.6
호주	25.3	16.2	10.1	12.7	12.4	20.0	22.4	11.1	16.2
일본	288.1	184.4	115.2	19.4	21.2	63.7	99.7	89.9	63.3

서도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공식으로 분석되었다. UR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3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일본의 TRQ 품목 평균 관세율은 21.2%로 낮아진다. 철폐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축되는 것이다.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도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태국과 멕시코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관세율 상한을 25%로 하는 스위스 공식1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 다른 관세 감축 공식은 UR 방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UR 방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호주와 캐나다는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과 혼합 공식 등이 UR 방식보다 오히려 유리하다(국가별 감축공식별 감축폭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5.5. 시사점

WTO/DDA 농업협상에서 관세 감축폭과 감축률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UR 협상에서 인정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함으로써 비롯된 고율관세 문제, 회원국간 및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 보호무역적 측면이 강한 누진관세 체계의 문제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주요 회원국들의 경우 누진관세 체계가 일반적이며, 회원국간 그리고 품목간 관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화에 의한 고율관세 문제는 농산물 수입국은 물론 수출국에 있어서도 나타

나고 있다.

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공식의 경우 이용하는 계수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세 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관세가 감축될 경우 고율관세 문제와 국가 간, 품목간 관세격차 현상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감축공식은 누진관세 체계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관세격차와 고율관세를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그러나 감축공식별로 누진관세 체계를 완화하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반드시 누진관세 체계를 완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율관세, 관세격차 등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문제를 개선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들은 관세체계를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감축공식별로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고율관세 품목이 많은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관세 인하 방식이 과도한 관세 감축을 초래하고 관세 인하에 신축성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방식이다. 품목별 특성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UR 방식과 같이 관세 인하에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 인하 방식에 따라 관세 감축폭과 감축의 신축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관세 인하 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생산자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개요

이 연구에서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국별 관세정책, 관세율구조 분석,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DDA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 ~ 53류 등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종가세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2. 농산물 관세구조의 복잡성

농산물 관세구조는 관세 부과형태, 관세율 분포, 최고세율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형태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투명성이 낮은 종량세, 복합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세 부과형태를 나타낸다.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EU, 캐나다, 일본 등의 관세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와 칠레는 관세 부과형태가 단순하고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멕시코, 중국, 태국 등의 평균 관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일본의 관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중요시하는 농산물이 다르며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의 관세율이 높았다. 한국은 곡물에 대한 관세가 다른 품목에 비해 크게 높았다. 캐나다는 낙농품, 육류 등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담배와 설탕에 대한 보호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류에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수입이 많은 채소, 유지작물, 가공식품의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았다.

농산물의 품목분류 정도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품목분류가 개도국에 비해 복잡하였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 관세행정적 측면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장점이 많다. 특정 품목이 수입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관세회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의 개편은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농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단순한 관세체계는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과세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번 내에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을 가공도와 혼합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관세격차, 고율관세, 누진관세 문제

국별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율의 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60% 포인트에 달한다.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칠레를 포함한 개발

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38%로 선진국 평균 관세율 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세율의 격차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칠레와 호주의 최고 세율은 31%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각각 1,416%와 887%로 국가 간 최고 세율의 격차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평균 관세율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으나 최고 관세율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다.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에서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농산물에도 관세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품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된 HS 코드가 있고 관세율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EU는 같은 쇠고기라도 HS 코드 번호에 따라 최저 43%에서 최고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에 있어서 품목 분류에 의해 관세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농산물로는 전분·이눌린으로 관세격차가 749.4% 포인트나 된다.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 차이도 현저하다. 쇠고기의 관세율은 호주의 0%에서 EU의 150%까지 매우 다양하다. 같은 품목이라도 부위별, 상태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농산물 또는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현저한 농산물은 낙농품, 곡물, 가공식품 등이다.

고율관세의 경우 한국은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119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았다. 주요 고율관세 품목은 낙농품, 곡물류, 두류, 채소류, 인삼 등이다. 한국 다음으로 고율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주로 곡물류와 낙농품, 당류, 조제식료품 등의 농산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의 고율관세 품목은 93개로 호주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누진관세는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선진국들은 누진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캐나다와 호주는 분석대상 품목 전체에서 관세의 누진성이 발견되었다. 품목별로는 육류와 육가공품, 과일류와 과일 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은 반면에, 곡물류와 곡물 조제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곡물과 곡물 조제품에 대해 모두 역관세를 나타내, 많은 국가들에서 곡물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 경향이 뚜렷하다.

4. 관세 감축공식별 감축률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공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관세율 상한을 25%, 100%, 200% 등 세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스위스 공식 1, 2, 3으로 표시하였다. 혼합 공식은 관세율 상한 100%, 일률적인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의 경우 36%, 개발도상국은 24%를 가정하였다. 국가별로 모든 농산물 세번(HS 코드)에 각각의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 감축률을 구하고 그 결과의 평균을 구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

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따라서 스위스 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축방식으로는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매우 높아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방식은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을 포함하여,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 일본 공식 등이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UR 방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 상한 200%의 스위스 공식과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관세율 상한 100%의 스위스 공식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매우 불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이며, 비슷한 나라는 EU, 캐나다, 태국, 중국, 멕시코, 칠레 등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 상한을 100% 정도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나라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 관세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품목(전체의 X%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상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감축공식의 선택은 자국의 관세 감축률 최소화라는 요소 이외에도 수입국의 시장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된 연구결과로 각국의 관세 감축공식 선택도를 일률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현재 진행 중인 WTO/DDA 농업협상 동향을 종합할 때 급진적인 관세 감축공식을 주장할 국가들이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농산물 수입시장을 겨냥하여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체계 개선 효과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진관세와 관련하여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진관세나 역관세나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관세 문제는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관세는 공식에 의한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감축공식별 최고관세율의 변화는 호주와 칠레를 제외한 분석 대상국가들 모두에게 60% 이상의 감축률을 보여 주고 있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감한 품목을 고려할 때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특히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한 품목이 많은 농산물 수입국들(한국, 일본 등)에게 불리하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관세화에 의한 시장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DDA 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공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효과는 TRQ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공식과 스위스 공식1이 가장 불리하다. 캐나다 공식과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 302%는 20%로 감축된다.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UR 방식이 TRQ 품목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공식으로 분석되었다. UR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3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태국과 멕시코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선진국들의 TRQ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은 스위스 공식1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 다른 관세 감축공식은 UR 방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이 UR 방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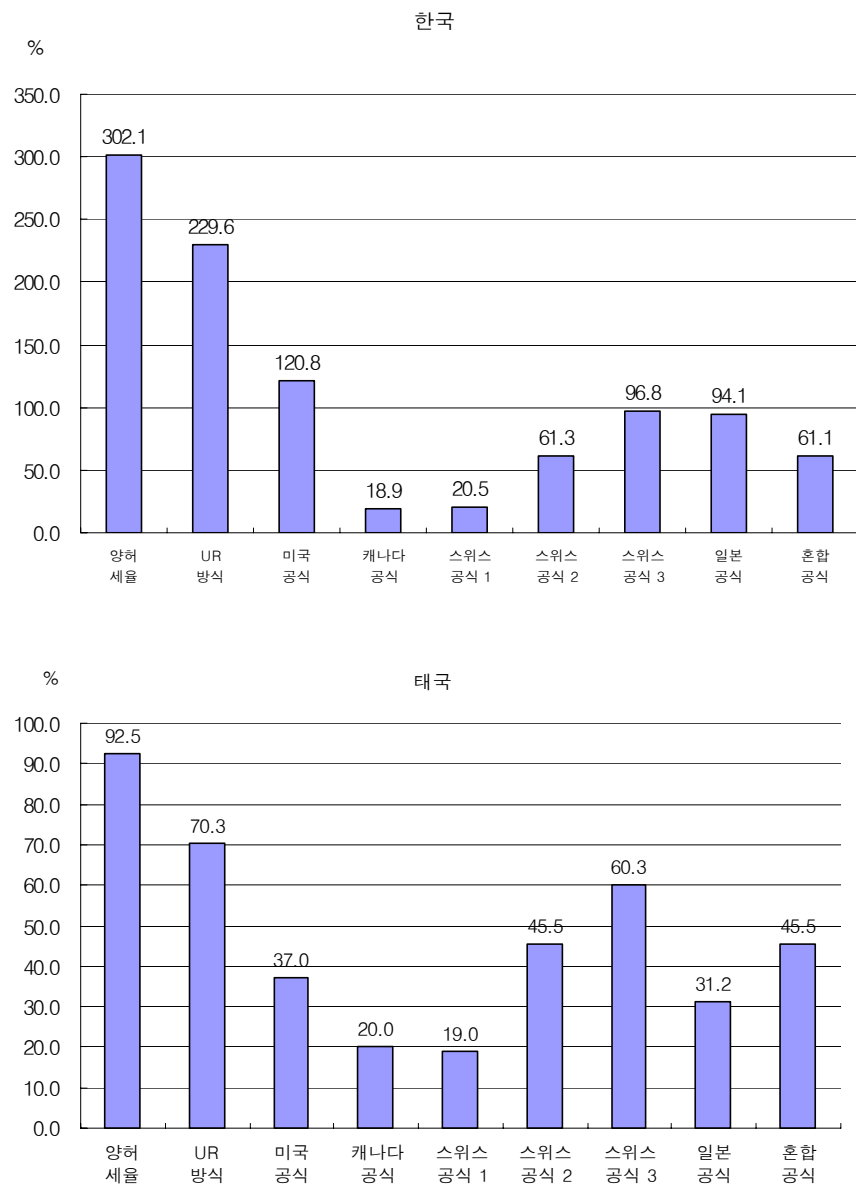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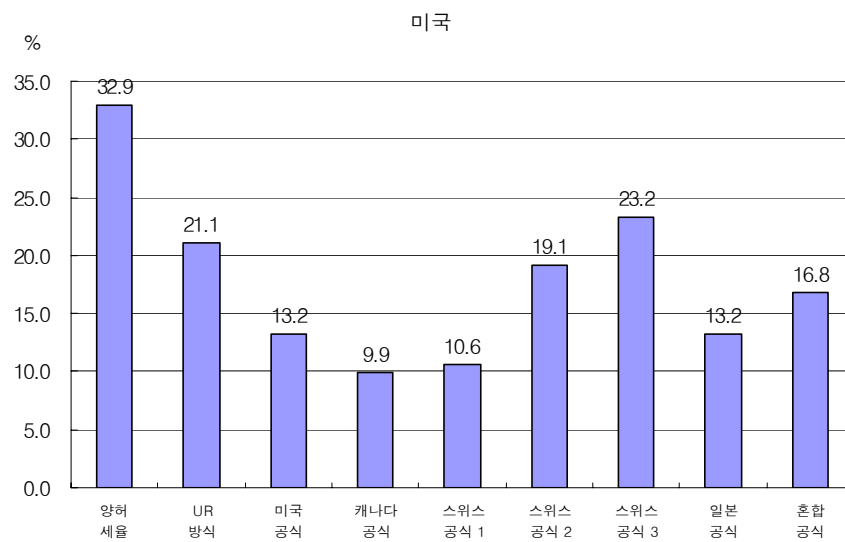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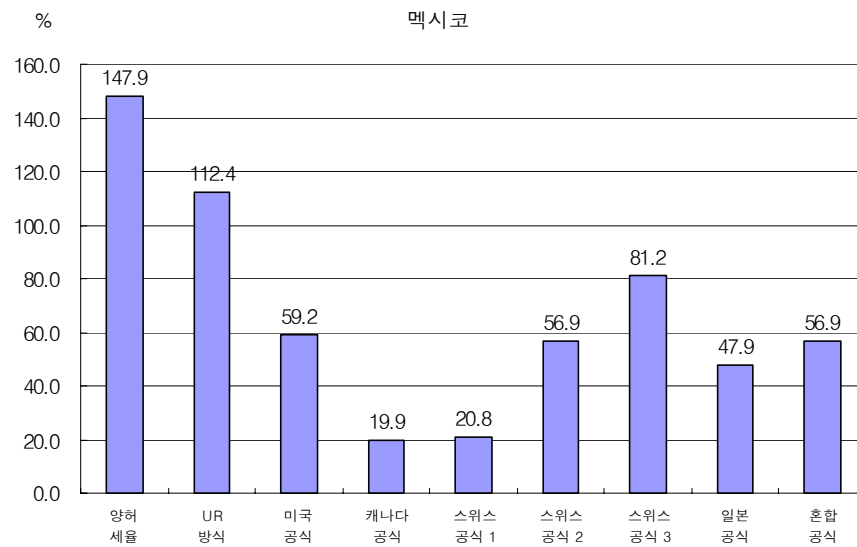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관세의 부과방식이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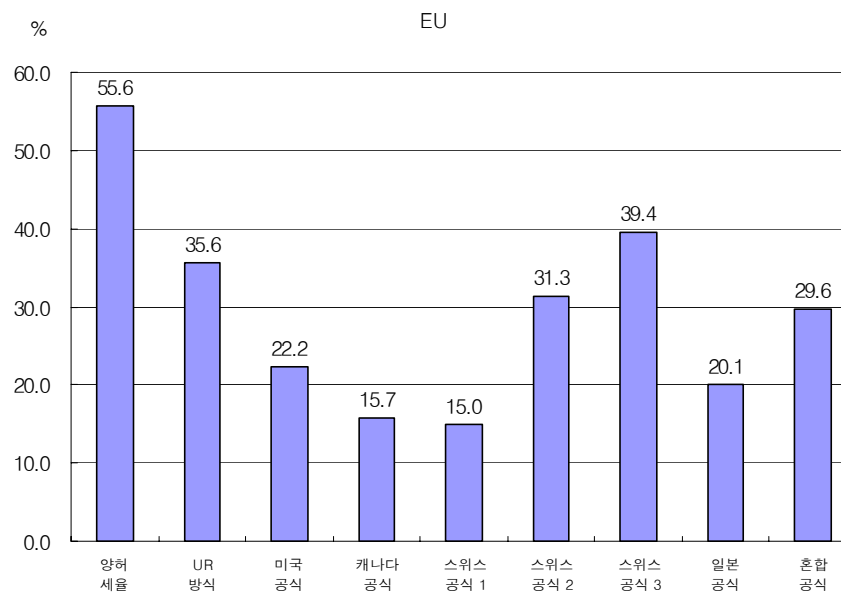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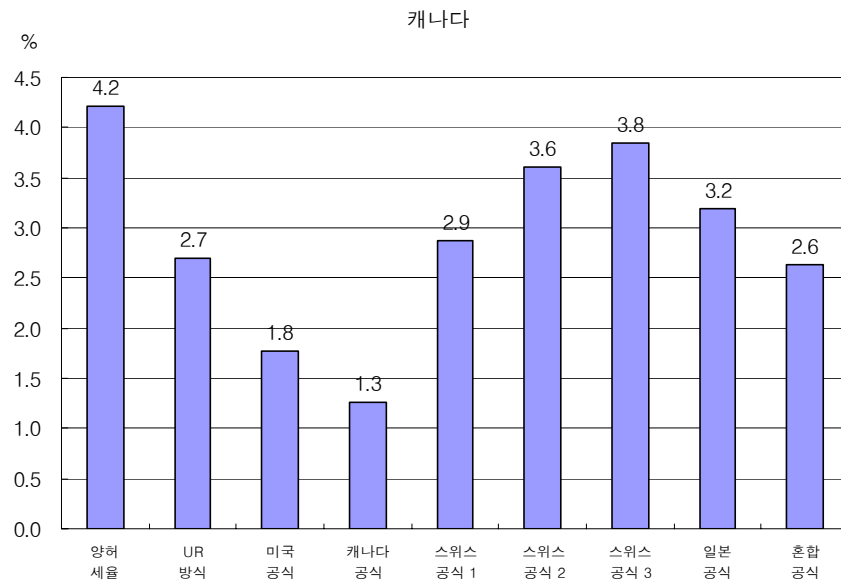
잡하고 세분화된 관세율표를 가지고 있다. 산업보호를 위한 누진관세 제도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예; TRQ 품목 등)의 관세율이 높은 것도 선진국들의 특징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평균 관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으나 관세구조는 단순하다. 겉으로 드러난 관세장벽은 높으나 실질적인 산업보호 효과는 그만큼 크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구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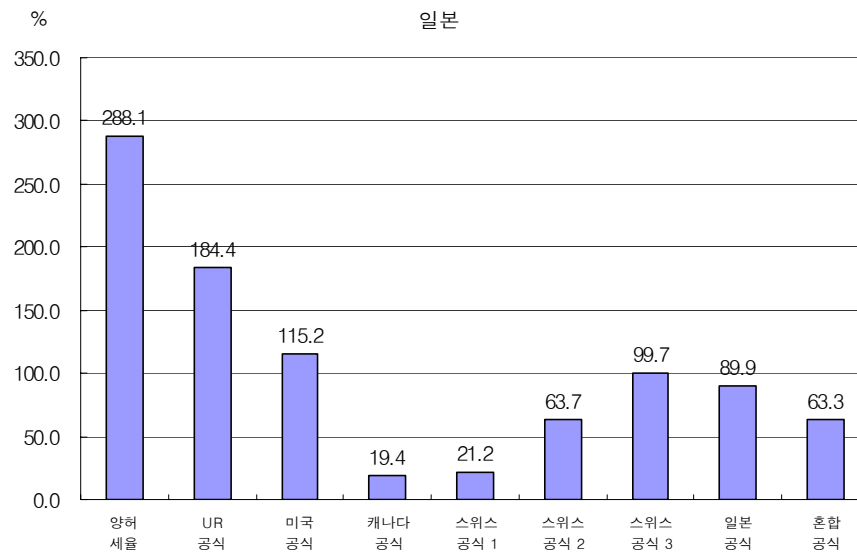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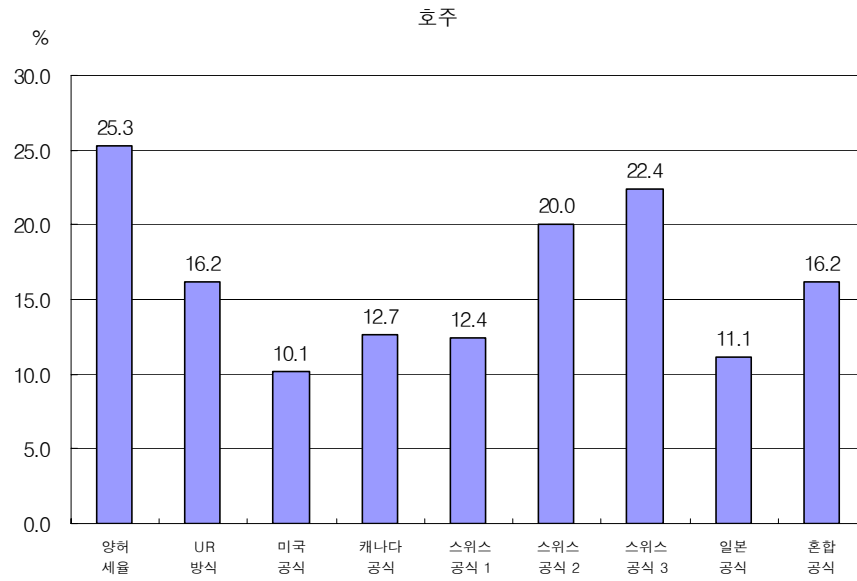
수출국들은 관세체계를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는 국별, 품목별로 다르다. 수출국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가장 불리한 국가이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의 장단점과 국가별 효과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WTO/DDA 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이행계획서 작성, 이에 대한 생산자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부록 1. 관세 감축공식별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 변화









부록 2.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율 변화(한국)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101110000	13.1	10.0	8.6	11.6	12.3	10.0
0101191000	13.1	10.0	8.6	11.6	12.3	10.0
0101199000	13.1	10.0	8.6	11.6	12.3	10.0
0101200000	13.1	10.0	8.6	11.6	12.3	10.0
0102101000	89.1	67.7	19.5	47.1	61.6	47.1
0102102000	89.1	67.7	19.5	47.1	61.6	47.1
0102109000	89.1	67.7	19.5	47.1	61.6	47.1
0102901000	40.0	30.4	15.4	28.6	33.3	28.6
0102902000	40.0	30.4	15.4	28.6	33.3	28.6
0103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391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392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4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42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42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5111000	9.0	6.8	6.6	8.3	8.6	6.8
0105119000	9.0	6.8	6.6	8.3	8.6	6.8
010519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5192000	9.0	6.8	6.6	8.3	8.6	6.8
0105199000	9.0	6.8	6.6	8.3	8.6	6.8
0105911000	9.0	6.8	6.6	8.3	8.6	6.8
0105919000	9.0	6.8	6.6	8.3	8.6	6.8
010599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105992000	9.0	6.8	6.6	8.3	8.6	6.8
0105999000	9.0	6.8	6.6	8.3	8.6	6.8
010600101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2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3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4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50	18.0	13.7	10.5	15.3	16.5	13.7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10600106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7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8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109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201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209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300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401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402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403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409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501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5090	13.1	10.0	8.6	11.6	12.3	10.0
0106006090	11.0	8.4	7.6	9.9	10.4	8.4
01060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11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02012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02013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02021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02022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02023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020311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312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319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3210000	25.0	19.0	12.5	20.0	22.2	19.0
0203220000	25.0	19.0	12.5	20.0	22.2	19.0
0203290000	25.0	19.0	12.5	20.0	22.2	19.0
020410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21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220000	22.5	17.1	11.8	18.4	20.2	17.1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20423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30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41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42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43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501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4502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50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50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6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21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22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29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3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41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49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499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8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69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210000	20.0	15.2	11.1	16.7	18.2	15.2
020722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23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31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739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39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392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739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7411000	20.0	15.2	11.1	16.7	18.2	15.2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20741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742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42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743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743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750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8100000	22.5	17.1	11.8	18.4	20.2	17.1
02082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2089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08909090	18.0	13.7	10.5	15.3	16.5	13.7
0209001000	6.6	5.0	5.2	6.2	6.4	5.0
0209002000	6.6	5.0	5.2	6.2	6.4	5.0
0210110000	25.0	19.0	12.5	20.0	22.2	19.0
0210120000	31.5	23.9	13.9	24.0	27.2	23.9
0210190000	25.0	19.0	12.5	20.0	22.2	19.0
02102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210901010	22.5	17.1	11.8	18.4	20.2	17.1
0210901020	22.5	17.1	11.8	18.4	20.2	17.1
0210901030	22.5	17.1	11.8	18.4	20.2	17.1
0210901090	22.5	17.1	11.8	18.4	20.2	17.1
0210909010	22.5	17.1	11.8	18.4	20.2	17.1
0210909020	22.5	17.1	11.8	18.4	20.2	17.1
0210909090	22.5	17.1	11.8	18.4	20.2	17.1
04011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12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13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2101010	176.0	133.8	21.9	63.8	93.6	63.8
0402101090	176.0	133.8	21.9	63.8	93.6	63.8
0402109000	176.0	133.8	21.9	63.8	93.6	63.8
0402211000	176.0	133.8	21.9	63.8	93.6	63.8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402219000	176.0	133.8	21.9	63.8	93.6	63.8
0402290000	176.0	133.8	21.9	63.8	93.6	63.8
0402911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2919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2991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2999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3101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3109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3901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3902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3903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3909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4101000	49.5	37.6	16.6	33.1	39.7	33.1
0404109000	49.5	37.6	16.6	33.1	39.7	33.1
04049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5001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5009000	89.0	67.6	19.5	47.1	61.6	47.1
0406101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6102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62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63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64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69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4070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70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70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811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819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891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8990000	41.6	31.6	15.6	29.4	34.4	29.4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40899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409000000	243.0	184.7	22.7	70.8	109.7	70.8
04100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04100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04100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0501000000	6.6	5.0	5.2	6.2	6.4	5.0
0502100000	6.6	5.0	5.2	6.2	6.4	5.0
0502901000	6.6	5.0	5.2	6.2	6.4	5.0
0502902000	6.6	5.0	5.2	6.2	6.4	5.0
0502909000	6.6	5.0	5.2	6.2	6.4	5.0
0503001010	6.6	5.0	5.2	6.2	6.4	5.0
0503001090	6.6	5.0	5.2	6.2	6.4	5.0
0503002000	6.6	5.0	5.2	6.2	6.4	5.0
05040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5040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504003000	27.0	20.5	13.0	21.3	23.8	20.5
0505100000	6.6	5.0	5.2	6.2	6.4	5.0
0505901000	6.6	5.0	5.2	6.2	6.4	5.0
0505909000	6.6	5.0	5.2	6.2	6.4	5.0
0506100000	6.6	5.0	5.2	6.2	6.4	5.0
0506901010	6.6	5.0	5.2	6.2	6.4	5.0
0506901020	9.0	6.8	6.6	8.3	8.6	6.8
0506901030	6.6	5.0	5.2	6.2	6.4	5.0
0506901090	6.6	5.0	5.2	6.2	6.4	5.0
0506902000	25.6	19.5	12.6	20.4	22.7	19.5
0506909000	6.6	5.0	5.2	6.2	6.4	5.0
05071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1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1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901110	36.0	27.4	14.8	26.5	30.5	26.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507901190	36.0	27.4	14.8	26.5	30.5	26.5
0507901200	36.0	27.4	14.8	26.5	30.5	26.5
050790201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90203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90204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902050	19.7	15.0	11.0	16.5	17.9	15.0
0507902090	19.7	15.0	11.0	16.5	17.9	15.0
051000100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200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300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400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500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901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902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9030	13.1	10.0	8.6	11.6	12.3	10.0
0510009090	13.1	10.0	8.6	11.6	12.3	10.0
0511991000	13.1	10.0	8.6	11.6	12.3	10.0
0511993000	18.0	13.7	10.5	15.3	16.5	13.7
0511993000	18.0	13.7	10.5	15.3	16.5	13.7
0511994000	18.0	13.7	10.5	15.3	16.5	13.7
0511999010	18.0	13.7	10.5	15.3	16.5	13.7
0511999020	13.1	10.0	8.6	11.6	12.3	10.0
0511999030	13.1	10.0	8.6	11.6	12.3	10.0
0511999040	13.1	10.0	8.6	11.6	12.3	10.0
0511999090	18.0	13.7	10.5	15.3	16.5	13.7
06011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3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4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5000	27.0	20.5	13.0	21.3	23.8	20.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601106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7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8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1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3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4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5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6000	18.0	13.7	10.5	15.3	16.5	13.7
0601207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8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9010	27.0	20.5	13.0	21.3	23.8	20.5
0601209090	27.0	20.5	13.0	21.3	23.8	20.5
0602101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2109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22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20200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20300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204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2205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220600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207010	13.1	10.0	8.6	11.6	12.3	10.0
0602207020	13.1	10.0	8.6	11.6	12.3	10.0
0602207030	13.1	10.0	8.6	11.6	12.3	10.0
0602209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2300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24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60291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1010	27.0	20.5	13.0	21.3	23.8	20.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60299102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103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104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105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106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1090	27.0	20.5	13.0	21.3	23.8	20.5
060299201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202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203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204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205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209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901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9020	13.1	10.0	8.6	11.6	12.3	10.0
0602999030	18.0	13.7	10.5	15.3	16.5	13.7
0602999090	13.1	10.0	8.6	11.6	12.3	10.0
0603101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2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3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4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5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6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7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8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109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39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0604100000	13.1	10.0	8.6	11.6	12.3	10.0
0604911010	13.1	10.0	8.6	11.6	12.3	10.0
0604911090	13.1	10.0	8.6	11.6	12.3	10.0
0604919000	13.1	10.0	8.6	11.6	12.3	10.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604990000	13.1	10.0	8.6	11.6	12.3	10.0
0701100000	304.0	231.0	23.1	75.2	120.6	75.2
0701900000	304.0	231.0	23.1	75.2	120.6	75.2
07020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703101000	135.0	102.6	21.1	57.4	80.6	57.4
07031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3200000	360.0	273.6	23.4	78.3	128.6	78.3
07039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3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4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42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49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49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4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511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70519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70521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70529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706101000	40.5	30.8	15.5	28.8	33.7	28.8
07061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6901000	45.0	34.2	16.1	31.0	36.7	31.0
07069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6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70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8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82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89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9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92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93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7094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9511000	40.5	30.8	15.5	28.8	33.7	28.8
0709512000	40.5	30.8	15.5	28.8	33.7	28.8
0709513000	90.0	68.4	19.6	47.4	62.1	47.4
0709514000	54.0	41.0	17.1	35.1	42.5	35.1
0709519000	40.5	30.8	15.5	28.8	33.7	28.8
070952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9600000	270.0	205.2	22.9	73.0	114.9	73.0
07097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09901000	90.0	68.4	19.6	47.4	62.1	47.4
0709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21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22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29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3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4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07108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8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803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804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805000	90.0	68.4	19.6	47.4	62.1	47.4
07108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09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1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12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13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14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711901000	360.0	273.6	23.4	78.3	128.6	78.3
0711902000	40.5	30.8	15.5	28.8	33.7	28.8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711903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1904000	45.0	34.2	16.1	31.0	36.7	31.0
0711905010	90.0	68.4	19.6	47.4	62.1	47.4
0711905090	270.0	205.2	22.9	73.0	114.9	73.0
0711905090	27.0	20.5	13.0	21.3	23.8	20.5
0711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2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2200000	135.0	102.6	21.1	57.4	80.6	57.4
0712301010	40.5	30.8	15.5	28.8	33.7	28.8
0712301020	40.5	30.8	15.5	28.8	33.7	28.8
0712301030	90.0	68.4	19.6	47.4	62.1	47.4
071230104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301090	40.5	30.8	15.5	28.8	33.7	28.8
07123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2901000	360.0	273.6	23.4	78.3	128.6	78.3
0712902010	90.0	68.4	19.6	47.4	62.1	47.4
071290202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3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4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5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6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7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8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2090	370.0	281.2	23.4	78.7	129.8	78.7
0712902090	370.0	281.2	23.4	78.7	129.8	78.7
0712902090	54.0	41.0	17.1	35.1	42.5	35.1
0712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1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1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2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713311000	607.5	461.7	24.0	85.9	150.5	85.9
0713319000	607.5	461.7	24.0	85.9	150.5	85.9
0713321000	420.8	319.8	23.6	80.8	135.6	80.8
0713329000	420.8	319.8	23.6	80.8	135.6	80.8
0713331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339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39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4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5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39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714101000	887.4	674.4	24.3	89.9	163.2	89.9
0714102010	887.4	674.4	24.3	89.9	163.2	89.9
0714102020	887.4	674.4	24.3	89.9	163.2	89.9
0714102090	887.4	674.4	24.3	89.9	163.2	89.9
0714201000	385.0	292.6	23.5	79.4	131.6	79.4
0714202000	385.0	292.6	23.5	79.4	131.6	79.4
0714209000	385.0	292.6	23.5	79.4	131.6	79.4
07149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0714909000	385.0	292.6	23.5	79.4	131.6	79.4
0801100000	32.8	24.9	14.2	24.7	28.2	24.7
0801200000	32.8	24.9	14.2	24.7	28.2	24.7
0801300000	32.8	24.9	14.2	24.7	28.2	24.7
080211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2120000	21.0	16.0	11.4	17.4	19.0	16.0
080221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802220000	27.0	20.5	13.0	21.3	23.8	20.5
080231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2320000	30.0	22.8	13.6	23.1	26.1	22.8
0802401000	219.4	166.7	22.4	68.7	104.6	68.7
0802402000	219.4	166.7	22.4	68.7	104.6	68.7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8025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2901010	566.8	430.8	23.9	85.0	147.8	85.0
0802901020	566.8	430.8	23.9	85.0	147.8	85.0
0802902010	27.0	20.5	13.0	21.3	23.8	20.5
0802902020	27.0	20.5	13.0	21.3	23.8	20.5
0802909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3000000	90.0	68.4	19.6	47.4	62.1	47.4
0804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4200000	32.8	24.9	14.2	24.7	28.2	24.7
08043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44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4501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4502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4503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5100000	50.0	38.0	16.7	33.3	40.0	33.3
0805201000	144.0	109.4	21.3	59.0	83.7	59.0
0805209000	144.0	109.4	21.3	59.0	83.7	59.0
08053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08054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0805900000	144.0	109.4	21.3	59.0	83.7	59.0
0806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6200000	21.0	16.0	11.4	17.4	19.0	16.0
0807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72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8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8201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8202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9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9200000	24.0	18.2	12.2	19.4	21.4	18.2
08093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809401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09402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2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3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4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901000	67.5	51.3	18.2	40.3	50.5	40.3
0810902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903000	611.5	464.7	24.0	85.9	150.7	85.9
0810904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0905000	67.5	51.3	18.2	40.3	50.5	40.3
0810909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1100000	72.0	54.7	18.6	41.9	52.9	41.9
0811200000	72.0	54.7	18.6	41.9	52.9	41.9
0811900000	72.0	54.7	18.6	41.9	52.9	41.9
0812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2200000	32.8	24.9	14.2	24.7	28.2	24.7
08129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3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32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08133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3401000	90.0	68.4	19.6	47.4	62.1	47.4
0813402000	611.5	464.7	24.0	85.9	150.7	85.9
0813409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35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0814001000	32.8	24.9	14.2	24.7	28.2	24.7
0814002000	32.8	24.9	14.2	24.7	28.2	24.7
0901110000	54.0	41.0	17.1	35.1	42.5	35.1
0901120000	54.0	41.0	17.1	35.1	42.5	35.1
0901210000	29.5	22.4	13.5	22.8	25.7	22.4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901220000	29.5	22.4	13.5	22.8	25.7	22.4
09013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0901400000	29.5	22.4	13.5	22.8	25.7	22.4
0902100000	513.6	390.3	23.8	83.7	143.9	83.7
0902200000	513.6	390.3	23.8	83.7	143.9	83.7
0902300000	60.7	46.1	17.7	37.8	46.6	37.8
0902400000	60.7	46.1	17.7	37.8	46.6	37.8
0903000000	26.2	19.9	12.8	20.8	23.2	19.9
090411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412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4201000	270.0	205.2	22.9	73.0	114.9	73.0
0904202000	270.0	205.2	22.9	73.0	114.9	73.0
0905000000	13.1	10.0	8.6	11.6	12.3	10.0
09061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61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62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62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70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81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82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83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91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92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93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94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095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10100000	377.3	286.7	23.4	79.0	130.7	79.0
09102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103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104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09105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10910000	19.7	15.0	11.0	16.5	17.9	15.0
091099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001100000	9.0	6.8	6.6	8.3	8.6	6.8
1001901000	9.0	6.8	6.6	8.3	8.6	6.8
1001909010	1.8	1.4	1.7	1.8	1.8	1.4
1001909020	1.8	1.4	1.7	1.8	1.8	1.4
1001909030	1.8	1.4	1.7	1.8	1.8	1.4
1001909090	1.8	1.4	1.7	1.8	1.8	1.4
1002000000	108.7	82.6	20.3	52.1	70.4	52.1
1002000000	9.0	6.8	6.6	8.3	8.6	6.8
1003001000	513.0	389.9	23.8	83.7	143.9	83.7
1003009010	324.0	246.2	23.2	76.4	123.7	76.4
1003009020	299.7	227.8	23.1	75.0	120.0	75.0
1003009090	299.7	227.8	23.1	75.0	120.0	75.0
1004000000	554.8	421.6	23.9	84.7	147.0	84.7
1004000000	9.0	6.8	6.6	8.3	8.6	6.8
1005100000	328.0	249.3	23.2	76.6	124.2	76.6
1005901000	328.0	249.3	23.2	76.6	124.2	76.6
1005902000	630.0	478.8	24.0	86.3	151.8	86.3
1005909000	328.0	249.3	23.2	76.6	124.2	76.6
1007000000	779.4	592.3	24.2	88.6	159.2	88.6
1007000000	9.0	6.8	6.6	8.3	8.6	6.8
1008100000	256.1	194.6	22.8	71.9	112.3	71.9
10082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0082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0082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1008300000	13.1	10.0	8.6	11.6	12.3	10.0
1008900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1001000	4.2	3.2	3.6	4.0	4.1	3.2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101002000	13.1	10.0	8.6	11.6	12.3	10.0
1102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11022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1102901000	260.0	197.6	22.8	72.2	113.0	72.2
1102909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3110000	288.2	219.0	23.0	74.2	118.1	74.2
1103120000	554.8	421.6	23.9	84.7	147.0	84.7
1103130000	162.9	123.8	21.7	62.0	89.8	62.0
1103191000	260.0	197.6	22.8	72.2	113.0	72.2
1103199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3210000	288.2	219.0	23.0	74.2	118.1	74.2
1103292000	260.0	197.6	22.8	72.2	113.0	72.2
1103299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4110000	233.0	177.1	22.6	70.0	107.6	70.0
1104120000	554.8	421.6	23.9	84.7	147.0	84.7
1104199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4210000	126.0	95.8	20.9	55.8	77.3	55.8
1104220000	554.8	421.6	23.9	84.7	147.0	84.7
1104230000	167.0	126.9	21.7	62.5	91.0	62.5
1104291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4299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43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1043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1105100000	304.0	231.0	23.1	75.2	120.6	75.2
1105200000	304.0	231.0	23.1	75.2	120.6	75.2
1106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1062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1062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1063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107100000	269.0	204.4	22.9	72.9	114.7	72.9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107201000	269.0	204.4	22.9	72.9	114.7	72.9
11072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108110000	50.9	38.7	16.8	33.7	40.6	33.7
1108120000	226.0	171.8	22.5	69.3	106.1	69.3
1108130000	455.0	345.8	23.7	82.0	138.9	82.0
1108140000	455.0	345.8	23.7	82.0	138.9	82.0
1108191000	241.2	183.3	22.7	70.7	109.3	70.7
1108199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8200000	800.3	608.2	24.2	88.9	160.0	88.9
1109000000	16.4	12.5	9.9	14.1	15.2	12.5
1201000000	487.0	370.1	23.8	83.0	141.8	83.0
1202100000	230.5	175.2	22.6	69.7	107.1	69.7
1202200000	230.5	175.2	22.6	69.7	107.1	69.7
1203000000	6.6	5.0	5.2	6.2	6.4	5.0
1204000000	5.0	3.8	4.2	4.8	4.9	3.8
1205000000	20.0	15.2	11.1	16.7	18.2	15.2
12060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1207100000	6.6	5.0	5.2	6.2	6.4	5.0
1207200000	6.6	5.0	5.2	6.2	6.4	5.0
1207300000	6.6	5.0	5.2	6.2	6.4	5.0
1207400000	630.0	478.8	24.0	86.3	151.8	86.3
1207500000	5.0	3.8	4.2	4.8	4.9	3.8
1207600000	6.6	5.0	5.2	6.2	6.4	5.0
1207910000	6.6	5.0	5.2	6.2	6.4	5.0
1207920000	6.6	5.0	5.2	6.2	6.4	5.0
1207991000	54.0	41.0	17.1	35.1	42.5	35.1
1207999000	36.0	27.4	14.8	26.5	30.5	26.5
1208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2089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209110000	0.0	0.0	0.0	0.0	0.0	0.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209190000	0.0	0.0	0.0	0.0	0.0	0.0
1209210000	0.0	0.0	0.0	0.0	0.0	0.0
1209220000	0.0	0.0	0.0	0.0	0.0	0.0
1209230000	0.0	0.0	0.0	0.0	0.0	0.0
1209240000	0.0	0.0	0.0	0.0	0.0	0.0
1209250000	0.0	0.0	0.0	0.0	0.0	0.0
1209260000	0.0	0.0	0.0	0.0	0.0	0.0
1209291000	0.0	0.0	0.0	0.0	0.0	0.0
1209292000	0.0	0.0	0.0	0.0	0.0	0.0
1209299000	0.0	0.0	0.0	0.0	0.0	0.0
1209300000	0.0	0.0	0.0	0.0	0.0	0.0
1209910000	0.0	0.0	0.0	0.0	0.0	0.0
1209991010	0.0	0.0	0.0	0.0	0.0	0.0
1209991090	0.0	0.0	0.0	0.0	0.0	0.0
1209992000	0.0	0.0	0.0	0.0	0.0	0.0
1209993000	0.0	0.0	0.0	0.0	0.0	0.0
1209994000	0.0	0.0	0.0	0.0	0.0	0.0
1209999000	0.0	0.0	0.0	0.0	0.0	0.0
1210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1210201000	45.0	34.2	16.1	31.0	36.7	31.0
1210202000	32.8	24.9	14.2	24.7	28.2	24.7
1211100000	13.1	10.0	8.6	11.6	12.3	10.0
1211201100	222.8	169.3	22.5	69.0	105.4	69.0
1211201210	222.8	169.3	22.5	69.0	105.4	69.0
1211201220	222.8	169.3	22.5	69.0	105.4	69.0
1211201240	222.8	169.3	22.5	69.0	105.4	69.0
121120131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132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133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2110	18.0	13.7	10.5	15.3	16.5	13.7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211202120	18.0	13.7	10.5	15.3	16.5	13.7
1211202190	18.0	13.7	10.5	15.3	16.5	13.7
121120221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222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229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910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920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20990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2119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200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300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4000	27.0	20.5	13.0	21.3	23.8	20.5
1211905000	27.0	20.5	13.0	21.3	23.8	20.5
121190901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2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3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4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5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6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7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80	13.1	10.0	8.6	11.6	12.3	10.0
1211909090	18.0	13.7	10.5	15.3	16.5	13.7
1212100000	20.0	15.2	11.1	16.7	18.2	15.2
12123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212910000	6.6	5.0	5.2	6.2	6.4	5.0
1212920000	6.6	5.0	5.2	6.2	6.4	5.0
121299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21299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212993000	19.7	15.0	11.0	16.5	17.9	15.0
1212999000	19.7	15.0	11.0	16.5	17.9	15.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2130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214100000	10.0	7.6	7.1	9.1	9.5	7.6
1214901000	100.5	76.4	20.0	50.1	66.9	50.1
1214909000	100.5	76.4	20.0	50.1	66.9	50.1
12149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13011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301109000	13.1	10.0	8.6	11.6	12.3	10.0
1301200000	13.1	10.0	8.6	11.6	12.3	10.0
13019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301909000	13.1	10.0	8.6	11.6	12.3	10.0
130211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12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130000	32.8	24.9	14.2	24.7	28.2	24.7
130214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191110	20.0	15.2	11.1	16.7	18.2	15.2
1302191120	20.0	15.2	11.1	16.7	18.2	15.2
1302191190	20.0	15.2	11.1	16.7	18.2	15.2
130219121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30219122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302191290	754.3	573.3	24.2	88.3	158.1	88.3
1302191900	27.0	20.5	13.0	21.3	23.8	20.5
1302192000	13.1	10.0	8.6	11.6	12.3	10.0
1302193000	16.4	12.5	9.9	14.1	15.2	12.5
130219901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19902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19909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2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32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30239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401101000	9.0	6.8	6.6	8.3	8.6	6.8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401102000	9.0	6.8	6.6	8.3	8.6	6.8
1401109000	9.0	6.8	6.6	8.3	8.6	6.8
14012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401209000	13.1	10.0	8.6	11.6	12.3	10.0
14019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401909000	13.1	10.0	8.6	11.6	12.3	10.0
1402100000	6.6	5.0	5.2	6.2	6.4	5.0
1402910000	6.6	5.0	5.2	6.2	6.4	5.0
1402990000	6.6	5.0	5.2	6.2	6.4	5.0
1403100000	6.6	5.0	5.2	6.2	6.4	5.0
1403900000	6.6	5.0	5.2	6.2	6.4	5.0
1404101000	6.6	5.0	5.2	6.2	6.4	5.0
1404109000	6.6	5.0	5.2	6.2	6.4	5.0
1404200000	6.6	5.0	5.2	6.2	6.4	5.0
1404901000	9.0	6.8	6.6	8.3	8.6	6.8
1404902010	6.6	5.0	5.2	6.2	6.4	5.0
1404902020	6.6	5.0	5.2	6.2	6.4	5.0
1404902090	6.6	5.0	5.2	6.2	6.4	5.0
1404903010	9.0	6.8	6.6	8.3	8.6	6.8
1404903020	9.0	6.8	6.6	8.3	8.6	6.8
1404903090	6.6	5.0	5.2	6.2	6.4	5.0
1404909000	6.6	5.0	5.2	6.2	6.4	5.0
1501001010	27.0	20.5	13.0	21.3	23.8	20.5
1501001090	27.0	20.5	13.0	21.3	23.8	20.5
1501002010	6.6	5.0	5.2	6.2	6.4	5.0
1501002090	6.6	5.0	5.2	6.2	6.4	5.0
1502001010	18.0	13.7	10.5	15.3	16.5	13.7
1502001090	18.0	13.7	10.5	15.3	16.5	13.7
15020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03001000	6.6	5.0	5.2	6.2	6.4	5.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503002000	6.6	5.0	5.2	6.2	6.4	5.0
1503003000	6.6	5.0	5.2	6.2	6.4	5.0
1503004000	6.6	5.0	5.2	6.2	6.4	5.0
1503009000	6.6	5.0	5.2	6.2	6.4	5.0
1505100000	6.6	5.0	5.2	6.2	6.4	5.0
1505901000	6.6	5.0	5.2	6.2	6.4	5.0
1505909000	6.6	5.0	5.2	6.2	6.4	5.0
15060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060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07100000	5.4	4.1	4.4	5.1	5.3	4.1
1507901000	5.4	4.1	4.4	5.1	5.3	4.1
1507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08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089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08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09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099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00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1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19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1902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19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211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12112000	22.5	17.1	11.8	18.4	20.2	17.1
1512191010	18.0	13.7	10.5	15.3	16.5	13.7
1512191020	22.5	17.1	11.8	18.4	20.2	17.1
1512199010	36.0	27.4	14.8	26.5	30.5	26.5
1512199020	22.5	17.1	11.8	18.4	20.2	17.1
1512210000	5.4	4.1	4.4	5.1	5.3	4.1
1512291000	5.4	4.1	4.4	5.1	5.3	4.1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51229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311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3191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319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3211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321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513291010	27.0	20.5	13.0	21.3	23.8	20.5
1513291020	16.4	12.5	9.9	14.1	15.2	12.5
1513299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4101000	36.0	27.4	14.8	26.5	30.5	26.5
1514102000	30.0	22.8	13.6	23.1	26.1	22.8
1514901010	36.0	27.4	14.8	26.5	30.5	26.5
1514901020	30.0	22.8	13.6	23.1	26.1	22.8
1514909000	36.0	27.4	14.8	26.5	30.5	26.5
1515110000	10.0	7.6	7.1	9.1	9.5	7.6
1515190000	10.0	7.6	7.1	9.1	9.5	7.6
1515210000	22.5	17.1	11.8	18.4	20.2	17.1
1515290000	22.5	17.1	11.8	18.4	20.2	17.1
1515300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54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515500000	630.0	478.8	24.0	86.3	151.8	86.3
1515600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5901000	36.0	27.4	14.8	26.5	30.5	26.5
1515909010	22.5	17.1	11.8	18.4	20.2	17.1
1515909020	16.4	12.5	9.9	14.1	15.2	12.5
1515909090	22.5	17.1	11.8	18.4	20.2	17.1
1516101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61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6201010	36.0	27.4	14.8	26.5	30.5	26.5
1516201020	36.0	27.4	14.8	26.5	30.5	26.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516201030	36.0	27.4	14.8	26.5	30.5	26.5
1516201040	36.0	27.4	14.8	26.5	30.5	26.5
1516201050	36.0	27.4	14.8	26.5	30.5	26.5
1516202010	16.4	12.5	9.9	14.1	15.2	12.5
1516202020	16.4	12.5	9.9	14.1	15.2	12.5
1516202030	22.5	17.1	11.8	18.4	20.2	17.1
1516202040	16.4	12.5	9.9	14.1	15.2	12.5
1516202050	22.5	17.1	11.8	18.4	20.2	17.1
1516202090	22.5	17.1	11.8	18.4	20.2	17.1
15171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5179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5179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5179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518001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8002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80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519110000	13.1	10.0	8.6	11.6	12.3	10.0
1519120000	13.1	10.0	8.6	11.6	12.3	10.0
1519130000	13.1	10.0	8.6	11.6	12.3	10.0
1519191000	13.1	10.0	8.6	11.6	12.3	10.0
1519192000	13.1	10.0	8.6	11.6	12.3	10.0
1519199000	13.1	10.0	8.6	11.6	12.3	10.0
15192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19202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19203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19204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192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1520100000	13.1	10.0	8.6	11.6	12.3	10.0
15209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520909000	13.1	10.0	8.6	11.6	12.3	10.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521101000	31.5	23.9	13.9	24.0	27.2	23.9
1521102000	16.4	12.5	9.9	14.1	15.2	12.5
1521103000	16.4	12.5	9.9	14.1	15.2	12.5
15211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521902000	16.4	12.5	9.9	14.1	15.2	12.5
15219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522001010	16.4	12.5	9.9	14.1	15.2	12.5
1522001090	16.4	12.5	9.9	14.1	15.2	12.5
15220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6010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601009000	31.5	23.9	13.9	24.0	27.2	23.9
1602100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201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209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311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319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391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399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411000	54.0	41.0	17.1	35.1	42.5	35.1
160241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602421000	54.0	41.0	17.1	35.1	42.5	35.1
160242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602491000	54.0	41.0	17.1	35.1	42.5	35.1
160249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602501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509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901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2909000	72.0	54.7	18.6	41.9	52.9	41.9
1603001000	31.5	23.9	13.9	24.0	27.2	23.9
1603002000	31.5	23.9	13.9	24.0	27.2	23.9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70111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701112000	18.0	13.7	10.5	15.3	16.5	13.7
1701121000	18.0	13.7	10.5	15.3	16.5	13.7
1701122000	18.0	13.7	10.5	15.3	16.5	13.7
1701910000	85.1	64.7	19.3	46.0	59.7	46.0
1701990000	85.1	64.7	19.3	46.0	59.7	46.0
1702101000	49.5	37.6	16.6	33.1	39.7	33.1
1702102000	20.0	15.2	11.1	16.7	18.2	15.2
17022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2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3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3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4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4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5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6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6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901000	243.0	184.7	22.7	70.8	109.7	70.8
17029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903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29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3101000	9.0	6.8	6.6	8.3	8.6	6.8
17031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703901000	9.0	6.8	6.6	8.3	8.6	6.8
1703909000	16.4	12.5	9.9	14.1	15.2	12.5
17041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49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704902010	19.7	15.0	11.0	16.5	17.9	15.0
1704902020	19.7	15.0	11.0	16.5	17.9	15.0
1704902090	19.7	15.0	11.0	16.5	17.9	15.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공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7049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1001000	13.1	10.0	8.6	11.6	12.3	10.0
18010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20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20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31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32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40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50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61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6201000	26.2	19.9	12.8	20.8	23.2	19.9
1806209010	19.7	15.0	11.0	16.5	17.9	15.0
1806209090	19.7	15.0	11.0	16.5	17.9	15.0
1806311000	26.2	19.9	12.8	20.8	23.2	19.9
180631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6321000	26.2	19.9	12.8	20.8	23.2	19.9
1806329000	19.7	15.0	11.0	16.5	17.9	15.0
1806901000	26.2	19.9	12.8	20.8	23.2	19.9
1806909010	27.0	20.5	13.0	21.3	23.8	20.5
1806909090	27.0	20.5	13.0	21.3	23.8	20.5
1901101010	36.0	27.4	14.8	26.5	30.5	26.5
1901101090	54.0	41.0	17.1	35.1	42.5	35.1
19011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1109000	20.0	15.2	11.1	16.7	18.2	15.2
1901202000	40.5	30.8	15.5	28.8	33.7	28.8
1901901000	32.8	24.9	14.2	24.7	28.2	24.7
1901902000	36.0	27.4	14.8	26.5	30.5	26.5
1901909010	54.0	41.0	17.1	35.1	42.5	35.1
1901909092	27.0	20.5	13.0	21.3	23.8	20.5
1902111000	54.0	41.0	17.1	35.1	42.5	35.1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902112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119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191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192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199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2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30101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30109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3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24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3001000	27.0	20.5	13.0	21.3	23.8	20.5
1903009000	27.0	20.5	13.0	21.3	23.8	20.5
1904101000	5.4	4.1	4.4	5.1	5.3	4.1
1904102000	5.4	4.1	4.4	5.1	5.3	4.1
1904103000	5.4	4.1	4.4	5.1	5.3	4.1
1904109000	5.4	4.1	4.4	5.1	5.3	4.1
19049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19049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905100000	27.0	20.5	13.0	21.3	23.8	20.5
19052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3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3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4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90101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90102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90103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901040	19.7	15.0	11.0	16.5	17.9	15.0
1905901050	27.0	20.5	13.0	21.3	23.8	20.5
1905901090	27.0	20.5	13.0	21.3	23.8	20.5
1905909010	19.7	15.0	11.0	16.5	17.9	15.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1905909020	27.0	20.5	13.0	21.3	23.8	20.5
1905909090	27.0	20.5	13.0	21.3	23.8	20.5
20011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20012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1901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1909010	30.0	22.8	13.6	23.1	26.1	22.8
2001909020	36.0	27.4	14.8	26.5	30.5	26.5
2001909030	30.0	22.8	13.6	23.1	26.1	22.8
2001909040	54.0	41.0	17.1	35.1	42.5	35.1
2001909050	30.0	22.8	13.6	23.1	26.1	22.8
2001909060	36.0	27.4	14.8	26.5	30.5	26.5
2001909090	36.0	27.4	14.8	26.5	30.5	26.5
2002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2901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2909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3101000	47.2	35.9	16.3	32.1	38.2	32.1
2003102000	47.2	35.9	16.3	32.1	38.2	32.1
2003103000	47.2	35.9	16.3	32.1	38.2	32.1
2003109000	47.2	35.9	16.3	32.1	38.2	32.1
20032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004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20049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4909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1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51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0052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5200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300000	22.9	17.4	12.0	18.6	20.5	17.4
2005400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511000	22.9	17.4	12.0	18.6	20.5	17.4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005512000	22.9	17.4	12.0	18.6	20.5	17.4
2005519000	22.9	17.4	12.0	18.6	20.5	17.4
2005591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592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599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600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5700000	22.9	17.4	12.0	18.6	20.5	17.4
2005800000	15.0	11.4	9.4	13.0	14.0	11.4
2005901000	22.9	17.4	12.0	18.6	20.5	17.4
2005902000	47.2	35.9	16.3	32.1	38.2	32.1
2005909000	22.9	17.4	12.0	18.6	20.5	17.4
2006001000	67.5	51.3	18.2	40.3	50.5	40.3
2006002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6003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6004000	32.8	24.9	14.2	24.7	28.2	24.7
2006009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71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7911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7919000	31.5	23.9	13.9	24.0	27.2	23.9
2007991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7999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11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8119000	63.9	48.6	18.0	39.0	48.4	39.0
2008191000	90.0	68.4	19.6	47.4	62.1	47.4
2008199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2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3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4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5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6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0087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87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8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1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2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8921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22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29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91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92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93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8999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911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11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19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19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2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0093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3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3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4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5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6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9700000	45.0	34.2	16.1	31.0	36.7	31.0
200980101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80102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80109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8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90101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901020	54.0	41.0	17.1	35.1	42.5	35.1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00990103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90109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9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0099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11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11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1109000	40.0	30.4	15.4	28.6	33.3	28.6
21012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1200000	40.0	30.4	15.4	28.6	33.3	28.6
2101301000	40.5	30.8	15.5	28.8	33.7	28.8
2101309000	40.5	30.8	15.5	28.8	33.7	28.8
21021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1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103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104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109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201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202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2203010	22.9	17.4	12.0	18.6	20.5	17.4
2102203090	30.0	22.8	13.6	23.1	26.1	22.8
2102204010	22.9	17.4	12.0	18.6	20.5	17.4
2102204090	30.0	22.8	13.6	23.1	26.1	22.8
2102209000	13.1	10.0	8.6	11.6	12.3	10.0
2102300000	19.7	15.0	11.0	16.5	17.9	15.0
21031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2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2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3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3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1010	54.0	41.0	17.1	35.1	42.5	35.1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10390102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103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109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901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902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903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9040	54.0	41.0	17.1	35.1	42.5	35.1
2103909090	54.0	41.0	17.1	35.1	42.5	35.1
2104101000	18.0	13.7	10.5	15.3	16.5	13.7
2104103000	18.0	13.7	10.5	15.3	16.5	13.7
21041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2104200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5001010	54.0	41.0	17.1	35.1	42.5	35.1
2105001090	22.9	17.4	12.0	18.6	20.5	17.4
2105009010	54.0	41.0	17.1	35.1	42.5	35.1
2105009090	31.5	23.9	13.9	24.0	27.2	23.9
21061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1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1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1010	36.0	27.4	14.8	26.5	30.5	26.5
2106901020	45.0	34.2	16.1	31.0	36.7	31.0
2106901090	45.0	34.2	16.1	31.0	36.7	31.0
21069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3011	22.9	17.4	12.0	18.6	20.5	17.4
2106903019	22.9	17.4	12.0	18.6	20.5	17.4
2106903021	754.3	573.3	24.2	88.3	158.1	88.3
2106903029	754.3	573.3	24.2	88.3	158.1	88.3
210690901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2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30	54.0	41.0	17.1	35.1	42.5	35.1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10690904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5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6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7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90	54.0	41.0	17.1	35.1	42.5	35.1
2106909090	54.0	41.0	17.1	35.1	42.5	35.1
2201100000	13.1	10.0	8.6	11.6	12.3	10.0
2201901000	13.1	10.0	8.6	11.6	12.3	10.0
2201909000	13.1	10.0	8.6	11.6	12.3	10.0
2202101000	26.2	19.9	12.8	20.8	23.2	19.9
2202109000	26.2	19.9	12.8	20.8	23.2	19.9
2202901000	26.2	19.9	12.8	20.8	23.2	19.9
2202902000	9.0	6.8	6.6	8.3	8.6	6.8
2202909000	26.2	19.9	12.8	20.8	23.2	19.9
22030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1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211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212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219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291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292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299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43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51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59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101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102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109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201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2020	30.0	22.8	13.6	23.1	26.1	22.8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20600203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209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9010	30.0	22.8	13.6	23.1	26.1	22.8
2206009090	30.0	22.8	13.6	23.1	26.1	22.8
2207101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7109000	270.0	205.2	22.9	73.0	114.9	73.0
2207109000	90.0	68.4	19.6	47.4	62.1	47.4
2207200000	8.0	6.1	6.1	7.4	7.7	6.1
22081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201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209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301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302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303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309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4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500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1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201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202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209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3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4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6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8909000	30.0	22.8	13.6	23.1	26.1	22.8
2209001000	8.0	6.1	6.1	7.4	7.7	6.1
2209009000	8.0	6.1	6.1	7.4	7.7	6.1
2301101000	9.0	6.8	6.6	8.3	8.6	6.8
2301102000	6.6	5.0	5.2	6.2	6.4	5.0
2302100000	6.6	5.0	5.2	6.2	6.4	5.0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302200000	6.6	5.0	5.2	6.2	6.4	5.0
2302300000	6.6	5.0	5.2	6.2	6.4	5.0
2302400000	5.0	3.8	4.2	4.8	4.9	3.8
2302500000	6.6	5.0	5.2	6.2	6.4	5.0
2303100000	0.0	0.0	0.0	0.0	0.0	0.0
2303200000	6.6	5.0	5.2	6.2	6.4	5.0
2303300000	6.6	5.0	5.2	6.2	6.4	5.0
2304000000	1.8	1.4	1.7	1.8	1.8	1.4
2305000000	6.6	5.0	5.2	6.2	6.4	5.0
2306100000	6.6	5.0	5.2	6.2	6.4	5.0
2306200000	6.6	5.0	5.2	6.2	6.4	5.0
2306300000	6.6	5.0	5.2	6.2	6.4	5.0
2306500000	5.0	3.8	4.2	4.8	4.9	3.8
2306600000	5.0	3.8	4.2	4.8	4.9	3.8
2306901000	63.0	47.9	17.9	38.7	47.9	38.7
2306902000	9.0	6.8	6.6	8.3	8.6	6.8
2306909000	6.6	5.0	5.2	6.2	6.4	5.0
2307000000	6.6	5.0	5.2	6.2	6.4	5.0
2308101000	90.0	68.4	19.6	47.4	62.1	47.4
2308102000	13.1	10.0	8.6	11.6	12.3	10.0
2308900000	46.4	35.3	16.2	31.7	37.7	31.7
23089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1010	4.2	3.2	3.6	4.0	4.1	3.2
2309901020	4.2	3.2	3.6	4.0	4.1	3.2
230990103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1040	4.2	3.2	3.6	4.0	4.1	3.2
2309901090	71.0	54.0	18.5	41.5	52.4	41.5
230990109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2010	50.6	38.5	16.7	33.6	40.4	33.6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309902020	50.6	38.5	16.7	33.6	40.4	33.6
2309902090	50.6	38.5	16.7	33.6	40.4	33.6
230990209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301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302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303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3090	18.0	13.7	10.5	15.3	16.5	13.7
2309909000	50.6	38.5	16.7	33.6	40.4	33.6
24011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1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103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1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2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2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203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2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301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302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1309000	54.0	41.0	17.1	35.1	42.5	35.1
2402101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2102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2103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2201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2209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2900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3101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3109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3911000	32.8	24.9	14.2	24.7	28.2	24.7
2403919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3991000	65.5	49.8	18.1	39.6	49.3	39.6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2403992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3993000	65.5	49.8	18.1	39.6	49.3	39.6
2403999000	65.5	49.8	18.1	39.6	49.3	39.6
2905440000	22.5	17.1	11.8	18.4	20.2	17.1
330111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12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13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14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19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1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2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3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4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5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6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91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92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93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94000	13.0	9.9	8.6	11.5	12.2	9.9
3301299000	13.0	9.9	8.6	11.5	12.2	9.9
3301300000	13.0	9.9	8.6	11.5	12.2	9.9
3301901000	13.0	9.9	8.6	11.5	12.2	9.9
3301902000	13.0	9.9	8.6	11.5	12.2	9.9
3301903000	16.0	12.2	9.8	13.8	14.8	12.2
3501100000	22.5	17.1	11.8	18.4	20.2	17.1
3502100000	13.0	9.9	8.6	11.5	12.2	9.9
3505101000	13.0	9.9	8.6	11.5	12.2	9.9
3505102000	18.0	13.7	10.5	15.3	16.5	13.7
3505103000	385.7	293.1	23.5	79.4	131.7	79.4
3505104000	385.7	293.1	23.5	79.4	131.7	79.4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3505105000	385.7	293.1	23.5	79.4	131.7	79.4
3505109000	385.7	293.1	23.5	79.4	131.7	79.4
3505201000	201.2	152.9	22.2	66.8	100.3	66.8
3505202000	201.2	152.9	22.2	66.8	100.3	66.8
3505209000	201.2	152.9	22.2	66.8	100.3	66.8
3809100000	18.0	13.7	10.5	15.3	16.5	13.7
3823600000	13.0	9.9	8.6	11.5	12.2	9.9
4101100000	5.0	3.8	4.2	4.8	4.9	3.8
4101211010	5.0	3.8	4.2	4.8	4.9	3.8
4101211020	5.0	3.8	4.2	4.8	4.9	3.8
4101211030	5.0	3.8	4.2	4.8	4.9	3.8
4101211040	5.0	3.8	4.2	4.8	4.9	3.8
4101211090	5.0	3.8	4.2	4.8	4.9	3.8
4101212010	5.0	3.8	4.2	4.8	4.9	3.8
4101212020	5.0	3.8	4.2	4.8	4.9	3.8
4101212030	5.0	3.8	4.2	4.8	4.9	3.8
4101212040	5.0	3.8	4.2	4.8	4.9	3.8
4101212090	5.0	3.8	4.2	4.8	4.9	3.8
4101220000	5.0	3.8	4.2	4.8	4.9	3.8
4101220000	5.0	3.8	4.2	4.8	4.9	3.8
4101290000	5.0	3.8	4.2	4.8	4.9	3.8
4101290000	5.0	3.8	4.2	4.8	4.9	3.8
4101301010	5.0	3.8	4.2	4.8	4.9	3.8
4101301020	5.0	3.8	4.2	4.8	4.9	3.8
4101301030	5.0	3.8	4.2	4.8	4.9	3.8
4101301040	5.0	3.8	4.2	4.8	4.9	3.8
4101301050	5.0	3.8	4.2	4.8	4.9	3.8
4101301090	5.0	3.8	4.2	4.8	4.9	3.8
4101302010	5.0	3.8	4.2	4.8	4.9	3.8
4101302020	5.0	3.8	4.2	4.8	4.9	3.8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4101302030	5.0	3.8	4.2	4.8	4.9	3.8
4101302040	5.0	3.8	4.2	4.8	4.9	3.8
4101302050	5.0	3.8	4.2	4.8	4.9	3.8
4101302090	5.0	3.8	4.2	4.8	4.9	3.8
4101400000	5.0	3.8	4.2	4.8	4.9	3.8
4102100000	5.0	3.8	4.2	4.8	4.9	3.8
4102210000	5.0	3.8	4.2	4.8	4.9	3.8
4102290000	5.0	3.8	4.2	4.8	4.9	3.8
4103100000	5.0	3.8	4.2	4.8	4.9	3.8
4103201000	5.0	3.8	4.2	4.8	4.9	3.8
4103202000	5.0	3.8	4.2	4.8	4.9	3.8
4103203000	5.0	3.8	4.2	4.8	4.9	3.8
4103209000	5.0	3.8	4.2	4.8	4.9	3.8
4103901000	9.0	6.8	6.6	8.3	8.6	6.8
4103902000	9.0	6.8	6.6	8.3	8.6	6.8
4103903000	5.0	3.8	4.2	4.8	4.9	3.8
4103909000	5.0	3.8	4.2	4.8	4.9	3.8
43011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43012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43013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4301400000	5.0	3.8	4.2	4.8	4.9	3.8
4301500000	5.0	3.8	4.2	4.8	4.9	3.8
4301600000	36.0	27.4	14.8	26.5	30.5	26.5
4301700000	5.0	3.8	4.2	4.8	4.9	3.8
4301801000	5.0	3.8	4.2	4.8	4.9	3.8
4301802000	5.0	3.8	4.2	4.8	4.9	3.8
4301803000	5.0	3.8	4.2	4.8	4.9	3.8
4301804000	5.0	3.8	4.2	4.8	4.9	3.8
4301809000	5.0	3.8	4.2	4.8	4.9	3.8
4301900000	5.0	3.8	4.2	4.8	4.9	3.8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5001000000	51.0	38.8	16.8	33.8	40.6	33.8
5002001010	45.0	34.2	16.1	31.0	36.7	31.0
5002001020	51.7	39.3	16.9	34.1	41.1	34.1
5002001030	51.7	39.3	16.9	34.1	41.1	34.1
5002001040	51.7	39.3	16.9	34.1	41.1	34.1
5002001050	51.7	39.3	16.9	34.1	41.1	34.1
5002002000	18.0	13.7	10.5	15.3	16.5	13.7
5002009000	18.0	13.7	10.5	15.3	16.5	13.7
5003101000	9.0	6.8	6.6	8.3	8.6	6.8
5003102000	9.0	6.8	6.6	8.3	8.6	6.8
5003103000	9.0	6.8	6.6	8.3	8.6	6.8
5003104000	9.0	6.8	6.6	8.3	8.6	6.8
5003109000	9.0	6.8	6.6	8.3	8.6	6.8
5003901000	9.0	6.8	6.6	8.3	8.6	6.8
5003902000	9.0	6.8	6.6	8.3	8.6	6.8
5003909000	9.0	6.8	6.6	8.3	8.6	6.8
5101110000	2.0	1.5	1.9	2.0	2.0	1.5
5101190000	2.0	1.5	1.9	2.0	2.0	1.5
5101210000	2.0	1.5	1.9	2.0	2.0	1.5
5101290000	2.0	1.5	1.9	2.0	2.0	1.5
5101300000	2.0	1.5	1.9	2.0	2.0	1.5
5102101000	2.0	1.5	1.9	2.0	2.0	1.5
5102102000	2.0	1.5	1.9	2.0	2.0	1.5
5102103000	2.0	1.5	1.9	2.0	2.0	1.5
5102109000	2.0	1.5	1.9	2.0	2.0	1.5
5102200000	2.0	1.5	1.9	2.0	2.0	1.5
5103100000	2.0	1.5	1.9	2.0	2.0	1.5
5103200000	2.0	1.5	1.9	2.0	2.0	1.5
5103300000	2.0	1.5	1.9	2.0	2.0	1.5
5201001000	2.0	1.5	1.9	2.0	2.0	1.5

HS-Code	2004년 양허세율	UR 방식	스위스 공식 1	스위스 공식 2	스위스 공식 3	혼합 공식
5201009010	2.0	1.5	1.9	2.0	2.0	1.5
5201009020	2.0	1.5	1.9	2.0	2.0	1.5
5201009030	2.0	1.5	1.9	2.0	2.0	1.5
5201009040	2.0	1.5	1.9	2.0	2.0	1.5
5202100000	2.0	1.5	1.9	2.0	2.0	1.5
5202910000	2.0	1.5	1.9	2.0	2.0	1.5
5202990000	2.0	1.5	1.9	2.0	2.0	1.5
5203000000	2.0	1.5	1.9	2.0	2.0	1.5
5301100000	2.0	1.5	1.9	2.0	2.0	1.5
5301210000	2.0	1.5	1.9	2.0	2.0	1.5
5301290000	2.0	1.5	1.9	2.0	2.0	1.5
5301301000	2.0	1.5	1.9	2.0	2.0	1.5
5301302000	2.0	1.5	1.9	2.0	2.0	1.5
5302100000	2.0	1.5	1.9	2.0	2.0	1.5
5302901000	2.0	1.5	1.9	2.0	2.0	1.5
5302902010	2.0	1.5	1.9	2.0	2.0	1.5
5302902020	2.0	1.5	1.9	2.0	2.0	1.5

ABSTRACT

How Tariff Reduction Methods Affect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and Agricultural Tariff Structure in Major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by tariff reduction methods for 10 major countries. Six different tariff reduction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effects on the changes in tariff structure and tariff reduction rates. Tariff reduction rates from the method applied in the Uruguay Round are compared with outcomes from the other methods suggested in WTO/DDA negotiations. The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25% gives rise to the deepest cut. However, this formula brings shallow cut of tariffs compared with an Uruguay Round formula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S., Australia and Chile. The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100% makes eight out of ten countries better off. The Swiss formula will be disastrous only for Korea and Japan.

Tariff reduction with the Swiss formula affects tariff structure. Tariff escalation, diversity and peak can be mitigated by applying the Swiss formula in a tariff reduction. However, tariff reduction with the Swiss formula not always reduces tariff escalation problem compared with the Uruguay Round method. Tariff peak tends to be very lowered by the formula cut. The highest tariff rate of 887% in Korea is reduced to 24.3%(reduction rate of 97%) when the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25% is applied.

Tariff reduction effects vary with cut methods by product and country. Formula cut methods are not always good for food

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Korea and Japan will suffer the most from the formula cut method and need to persuade food 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ot to accept formula cut methods. The effects of formula cut need to be examined more thoroughly to persuade food 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Possibility is still high for food export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o accept formula tariff cut in DDA agriculture negotiations.

Korea needs to prepare the Country Schedule in advance to evaluate the potential outcome of the tariff cut by different tariff cut methods and to capture various voices from producers, consumer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Korea also needs to revise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by specifying tariff items. Tariff imposing forms need to be diversified including various forms of tariff other than ad valorem such as selective, specific and compound tariffs. If Korea want to keep its transparent tariff system, Korea should request other WTO member countries to raise their transparency in tariff systems.

Researcher: Sei-Kyun Choi, Song-Soo Lim, Myong-Keun Eor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참 고 문 헌

- 관세청. 2000.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 농림부. 2000. 『농림산물 품목분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9. 『주요국의 농수산물 수입제도』.
- 대한상공회의소. 1997. 『대외무역법』.
- 박상태. 1996. 『관세정책 요론: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 송유철, 박지현. 1999.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 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정호, 홍성훈, 이재호. 1993.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연구보고서 93-02. 한국개발연구원.
- 임정빈. 2000. “차기 WTO 농산물 관세 인하협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1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 천상덕, 이진우 등. 1990. 『2000년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11. 산업연구원.
- 최낙균, 신현수. 1993.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58. 산업연구원.
- 최세균, 어명근 등.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어명근.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분석.” 『농촌경제』 2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1.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 감축 효과.” 『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관세연구소. 1999. 『HS 종합편람 관세율표』.

- Australi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Canada. 2000. 1. Customs Tariff.
- Chin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Carter, Colin A. and S. Rozelle. 2002. "Will China's Agricultural Trade Reflect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F. Gale (ed.)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USDA/ERS Agricultural Information Bulletin No. 775. Washington DC.
- Choi, S.K. et al. 1998. "Effective Protection Rates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1(2). Korea Rural Economic Development.
- EU. 1999. 12. *Common Customs Tariff*.
- FAO. 200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 Japan.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OECD. 1999. *Post-Uruguay Round Tariff Regimes: Achievements and Outlook*. Paris.
- U.S.A. 2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http://lanic.utexas.edu/~sela/AA2K1/ENG/docs/Globalization/SPCLXXVIIdi2/spclxxviidi2-9.htm>

연구보고 R448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2. 12.

발 행 2002.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P@Chollian.Net

ISBN 89-89225-37-X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